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정무위원회 ·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 결산분석시리즈 III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예산분석관  
한지은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김보은 예산분석관  
오지은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행정실무원  
심의영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Ⅲ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 정무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2. 8.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용자 등 정부지원 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연구개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총 969조원, 부채총액은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4조원, 41.8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350개의 전체 공공기관 결산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내용과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공공기관의 ESG채권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현황,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 강화, 법령 및 지침 위반, 정책 및 제도상의 개선과제 등의 문제를 다루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정책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공공기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 정무위원회

### [ 금융위원회 ]

1.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5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한 출자 필요 .. 11

### [ 국무조정실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기관의 대외 활동 기준 개선 필요 ..... 23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유급 안식년 제도 관련 공통 기준 마련 필요 .. 30
3. 국토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 44
4.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개선 필요 ..... 47

## 교육위원회

### [ 교육부 ]

1. 사학연금공단 회관건립 사업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로 인한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집행 부적절 ..... 57
2.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 61
3.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67



4. 서울대학교병원의 집행부진 사업 관리 및 인재원의 효율적 운영 필요 ..... 72

4-1.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및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 73

4-2.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실적개선 방안 모색 필요 ..... 8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제도 운영의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 89

2.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의 위험관리 및 2단계 사업 준비 내실화 필요 ... 98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사업의 추진방안 구체화 및 관계기관 협의 필요 ..... 107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사업 지연 부적정 ..... 115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 122

## 행정안전위원회

### [ 인사혁신처 ]

1.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대부 장기연체자 등 관리 철저 필요 ..... 131

2.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지원사업의 연례적인 계획액 과다계상 지양 필요 ..... 13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

1.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온라인몰 추가 입점 업체 선정 방식 개선 필요 ··· 149
2.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의 선제적인 홍보 전략 수립 필요 ······ 157
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 164
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 167
5.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체계 개선 필요 ··· 171

### [ 문화재청 ]

1. 한국문화재단의 위촉(전문)직 선발 지침 미준수 부적정 ··················· 18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

1. 한국마사회 계약 체결시 인지세 부담 전가 시정 필요 ······················· 195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과도한 매출액 비중 개선 필요 ··················· 199
3. 한국마사회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급비율 과다로 인한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 203
4. 한국농어촌공사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부담 전가 시정 필요 ··· 207
5.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11



- 6.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단가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등 ..... 217
  - 6-1. 공공임대용 내역사업 및 교환분합 내역사업의 목표 달성을 저조 개선 필요 ..... 219
  - 6-2. 임차임대용 사업 실적 부진 및 높은 중도해지 비율 개선 필요 ..... 226
-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230
  - 7-1. 수입의 감소 및 지출의 확대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 개선 필요 ..... 232
  - 7-2. 재고자산 매각대 수입의 연례적 과다 계상 시정 필요 ..... 239
  - 7-3.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 243
-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의 실적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등 · 247
-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254
-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하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의  
용자조건 완화 필요 등 ..... 263
-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 기준 개선 필요 ..... 268

**[ 해양수산부 ]**

- 1. 부산항만공사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 관리강화 필요 ..... 273
- 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 부담 비율 개선 필요 ... 285

**[ 농촌진흥청 ]**

-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온실가스 관련 사업 수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91
-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 부적절 ..... 296
-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 300



# CONTENTS

## **[ 산림청 ]**

- 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지침을 위반한 성과급 지급 시정 필요 ..... 307
- 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휴직관련 내부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 310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가.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사업<sup>1)</sup>은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 매입 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에서 해당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sup>2)</su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1회계연도에는 397억 5,000만원의 계획 금액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02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9%)되어, 195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팩토링금융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팩토링금융	39,750	39,750	39,750	20,240	0	19,510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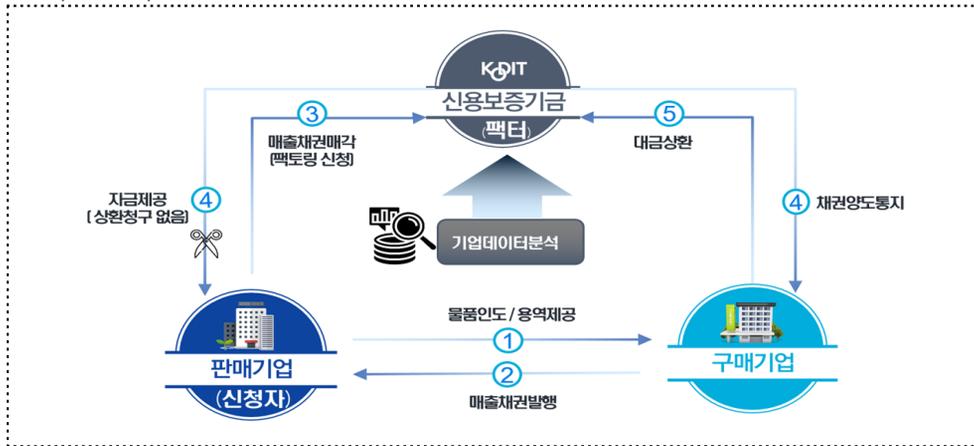
팩토링금융 사업의 세부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을 인수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해당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데, 만약 구매기업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판매기업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즉, 구매기업 지급불능 시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채무조정, 분할상환, 소송진행 등 채권 회수활동을 수행하며, 회수 불가능시에는 해당 손실을 신용보증기금의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이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4

2) 팩토링(Factoring)은 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는 대상에 따라서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과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구분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은 판매자가 해당 매출채권 등을 팩토링회사에 매각 한 뒤, 구매자가 매출채권 만기까지 구입 대금을 팩토링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팩토링회사가 판매자에게 미납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경우에는 회수불능 위험을 팩토링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팩토링금융 사업 세부 집행 절차]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와 같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기업의 결제지연 및 연쇄부도 등 신용거래위험을 방지하여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3)</sup>

2021년의 397억 5,000만원의 계획금액은 아래와 같이 1회 매입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일반적인 매출채권 만기 90일을 고려하여 연간 4회전 할 것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에 매출채권 인수 소요 비용 등의 수수료(연간 2.5%)를 감안하여 397억 5,000만원을 계획한 것이다.

[2021회계연도 팩토링금융 사업 계획금액 세부 편성 근거]

<p>■ 매출채권 매입: 39,750백만원</p> <p>총 매입액 400억원 기준: {100억원(1회 매입액) × 4회전 (평균 만기 90일 기준)} - (100억원 × 2.5%(연할인율))</p>
--

3) 즉, ①구매기업이 변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판매기업에 별도의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 도산의 부담이 해소되며, ②우량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여, 판매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③매출채권 담보 차입이 아닌 매출채권을 완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판매기업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사업의 2021년의 집행률은 50.9% 수준으로, 2022년 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도 유사한 팩토링금융 사업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의 각 월별 매출채권 인수실적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3월 5,800만원을 시작으로, 9월에 64억 9,300만원 까지 인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총 202억 4,000만원의 매출채권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연간 계획금액 397억 5,000만원의 50.9%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 월별 인수실적(2021)]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연간 계획 (b)	비율 (a/b)
월별 인수실적	0	0	58	78	0	927	1,321	2,733	6,493	1,606	2,957	4,067	-	-
인수실적 (누계)	0	0	58	136	136	1,063	2,384	5,117	11,610	13,216	16,173	20,240	39,750	50.9
판매기업수	0	0	1	2	2	6	9	18	41	42	44	44	-	-
구매기업수	0	0	1	1	6	6	8	16	29	35	47	47	-	-

주: 구매기업 수는 각 시점별 현재 약정 유효한 구매기업 기준이며, 그 외 항목은 누적기준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2년에는 6월 15일까지 234억 7,300만원의 매출채권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2022년 팩토링금융 사업 계획 금액 596억 2,500만원의 39.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21년과 비교 시에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 월별 인수실적(2022)]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15. (a)	연간 계획(b)	비율 (a/b)
월별 인수실적	4,629	3,701	5,069	2,760	4,813	2,501	-	-
인수실적(누계)	4,629	8,330	13,399	16,159	20,972	23,473	59,625	39.4
판매기업수	12	22	27	28	36	40	-	-
구매기업수	47	47	46	48	47	48	-	-

주: 구매기업 수는 각 시점별 현재 약정 유효한 구매기업 기준이며, 그 외 항목은 누적기준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이와 같은 팩토링금융 인수실적 확대는 인수실적 부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최초에는 팩토링 대상(구매기업 기준)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중견기업 위주로 영업하던 것에서 2021년 4월에는 외감 법인 이상(중견·중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도 4월에는 소기업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할인율도 금융권 평균 수준의 할인율에서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고, 구매기업에게는 보증료 차감, 판매기업에는 할인율 추가 인하 등의 우대조치 실시,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도 구매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팩토링 결제 방식을 편입하는 등 유인책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사업 인수실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구 분		개선 주요내용	
2021 년도	영업대상 확대 및 상품성 제고 [4월]	기존	◦ (구매기업) 사업 초기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중견기업 위주 영업
		개선	◦ (구매기업) 외감 법인 이상(상장법인 및 외감 중견·중기업)으로 확대
	상품성 강화 [6월]	기존	◦ 금융권 평균 수준의 할인율 제공 - 기본할인율 중 자본비용: 국고채5년을 적용
		개선	◦ 금융권 최저 수준의 할인율 제공 - 기본할인율 중 자본비용: CD유통수익률(91일)로 변경

구 분		개선 주요내용	
	유인책 제공 및 상품성 제고 [7월]	기존	◦ 신보 팩토링 신규 이용을 위한 우대조치 無
		개선	◦ 팩토링 확산을 위한 한시적 특례조치 제공 - (구매기업) 보증료 차감 / (판매기업) 할인율 추가 인하 등
	영업력 강화 [7월]	기존	◦ 전담조직 대구 본점 내 배치
		개선	◦ 전담조직 서울 배치, 전국 영업점 활용 영업활동 전개
2022 년도	구매기업 대상확대 [4월]	기존	◦ (구매기업) 상장법인 및 외감 중견·중기업
		개선	◦ (구매기업) 상장법인 및 외감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상품 안정성 향상 [4월]	신설	◦ 고위험 업종 도입 - 구매기업이 속한 업종이 사고율이 높거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팩토링 인수한도 제한
	유인책 제공 [1월]	신설	◦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팩토링 결제 방식 편입 - 구매기업이 신보 팩토링 이용 시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이용실적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 최대 10점 취득 가능

자료: 신용보증기금

그런데, 2022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사업과 동일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공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의 공급 대상]

구 분	공급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인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 중견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2022년 4월부터 일반 중소기업으로 대상 한정)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3월 말 사업공고 개시로, 6월 15일까지 2022년 계획금액 375억원의 24.1%에 해당하는 90억 3,700만원의 팩토링금융을 공급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 6월 현재 팩토링금융 이용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공모 신청 접수중으로, 현재까지 인수실적은 없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사업의 인수실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이 각 기금 계획에서 본래 계획했던 규모 만큼 팩토링금융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 월별 인수실적(2022)]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15 (a)	연간 계획 (b)	비율 (a/b)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공급실적	0	0	0	3,369	5,818	9,037	37,500	24.1
	판매기업수	0	0	0	14	38	47	-	-
	구매기업수	0	0	0	10	21	29	-	-
기술보증 기금	공급실적	0	0	0	0	0	0	40,000	0.0
	판매기업수	0	0	0	0	0	0	-	-
	구매기업수	0	0	0	0	0	0	-	-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도의 집행률이 50.9% 수준이었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유사한 팩토링금융 사업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한 출자 필요

### 가.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sup>1)</sup>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동산담보물을 적시에 환가 처분하는 것을 보장하여 동산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에는 1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액 출자 완료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	11,900	11,900	11,900	11,9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021회계연도 119억원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동산담보 대출 부실채권 매입금액 94억원과 관리 및 운영비용 25억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 예산액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내용
부실채권 매입비용	9,400	• 은행권의 동산담보 부실채권 매입신청 시 부실채권을 40% 수준으로 매입(304억원)하며, 2020년 매입비용 절감액(△70억원) 및 부실채권 회수액(△140억원)으로 일부 충당
관리 및 운영비용	2,500	• 매입한 동산담보물 관리비용(18억원) 및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비용(20억원) 지출이 예상되며, 2020년 운영비용 절감액(△13억원)으로 일부 충당
합계	11,900	-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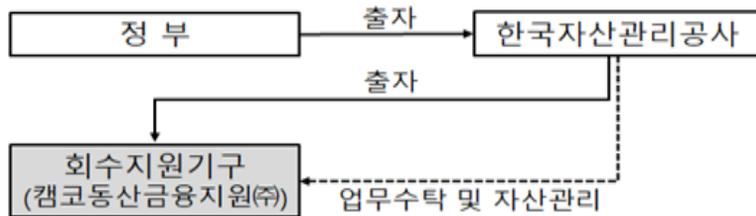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432-301

동산담보 대출은 부동산 외에 재고자산, 기계설비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sup>2)</sup> 우리나라는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권에 2012년 8월 경 동산담보 대출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동산담보물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회수 단계의 불확실성이 높고, 사적 매각시장 부족 등으로 회수 예상 가격 산출이 어려움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는 동산담보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sup>3)</sup>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 출자 예산을 바탕으로 2020년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별도의 SPC<sup>4)</sup>로 설립하였으며, 동산담보 대출 부실 발생 시, 해당 회수지원기구를 통해서 해당 부실채권 및 동산담보물 등을 매입함으로써 동산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지원기구 운영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와 같이 ① 금융회사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동산담보대출 실행 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캠코동산금융지원(주))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② 동산담보대출 부실 발생 시에 금융회사가 매입약정에 따라 캠코동산금융지원(주)에 부실채권 등의 매입을 요청한다. 그리고, ③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사전에 정한 매입약정률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며, ④ 캠코

2) 동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2016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산 구성은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현금, 투자자산 등) 37%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한다. 따라서 동산담보는 부동산과 인적담보 등을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서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에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발표”, 보도자료, 2018.5.21.)

3) 금융위원회,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발표”, 보도자료, 2018.5.21.

4) Special Purpose Company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동산금융지원(주)는 매입한 자산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 집행 세부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을 위해 2020년 3월에 별도 SPC인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캠코동산금융지원(주))를 설립하였다. 캠코동산금융지원(주)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0~2021년간의 정부예산 519억원<sup>5)</sup>은 캠코동산금융지원(주)의 납입자본금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2020년 24억 3,400만원, 2021년 17억 9,500만원의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2021년 말 현재 자본 총액은 476억 5,9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캠코동산금융지원(주))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자산	38,836	48,826
부채	1,270	1,167
자본	37,566	<b>47,659</b>
납입자본금	40,000	51,888
이월결손금	△2,434	△4,229
당기순이익	△2,434	△1,795

자료: 캠코동산금융지원(주)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5) 2020년 정부예산 400억원과 2021년 정부예산 119억원이다.

## 나. 분석의견

2020년부터 실시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말 까지 부실채권 등의 누적 매입 실적이 계획 대비 13.4%에 불과한 바, 향후에는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출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을 위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2020년 400억원, 2021년 119억원의 2020~2021년간 총 519억원의 예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액 출자 완료하여 정부 예산의 집행 실적은 100%로 산정되고 있다.⑥ 이 중 444억원은 동산담보 관련 부실채권 및 동산담보물 등의 매입비용이며, 36억원은 위탁 경비용역비, 창고보관료, 재무·법률 자문료 등을 포함한 동산담보물 관리비용이다. 또한, 39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020~2021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예산 519억원의 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96억 6,700만원으로, 2020~2021년간의 총 예산 대비 실적행률이 18.6%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2020~2021년간 집행된 금액 중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39억원의 출자예산 중 28억 200만

⑥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등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잔액(IP 포함)은 2018년 말 2,276억원에서 2022년 3월 말에는 3조 9,90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 지원사업은 IP(Intellectual Property)의 동산담보대출과 관련이 있다.

[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 (2012~2022.3.)]

(단위: 억원)

구 분	동산담보대출		계
	IP외	IP (Intellectual Property)	
'12년말	2,959	-	2,959
'13년말	5,793	-	5,793
'14년말	5,540	-	5,540
'15년말	4,461	-	4,461
'16년말	3,144	-	3,144
'17년말	2,276	-	<b>2,276</b>
'18년말	4,204	3,151	7,355
'19년말	9,680	6,259	15,939
'20년말	16,805	13,784	30,589
'21년말	19,674	19,315	38,989
'22.3말	19,493	20,411	<b>39,904</b>

주: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국책은행 3개 기준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이 사용되어 집행률이 71.8%를 나타낸 반면, 부실채권 및 동산담보물 등의 동산담보 관련 매입비용 예산의 집행률은 13.4%, 동산담보물 관리비용의 집행률은 25.9%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2020~2021)]

(백만원, %)

구 분	2020 (A)			2021 (B)			합 계 (A+B)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c)	결산 (d)	집행률 (d/c)	예산 (e=a+c)	결산 (f=b+d)	집행률 (f/e)
동산담보 관련 매입비용 (부실채권 및 동산담보물 등)	35,000	1,955	5.6	9,400	3,977	42.3	44,400	5,932	<b>13.4</b>
동산담보물 관리비용	1,800	818	45.4	1,800	115	6.4	3,600	933	<b>25.9</b>
인건비 등 운영비용	3,200	1,281	40.0	700	1,521	217.3	3,900	2,802	71.8
합계	40,000	4,054	10.1	11,900	5,613	47.2	51,900	9,667	<b>18.6</b>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캠프동산금융지원(주) 설립 이후 2022년 6월 현재까지 회수지원기구의 부실채권 및 동산담보물 등 월별 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6월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1건(19억 5,500만원)<sup>7)</sup>이 유일하다. 또한, 2021년에는 부실채권 매입 실적은 없으며, 동산담보물 직접매입의 경우 2021년에 Sales & Leaseback 방식<sup>8)</sup>을 적용하면서부터 2022년 6월 이후 동산담보물 4건(39억 7,700만원)<sup>9)</sup>을 매입하였다. 이에 2020~2021년간 총 매입금액은 59억 3,200만원으로, 전체 동산담보 관련 매입을 위한 출자 예산 444억원 대비 1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 부실채권 등 매입실적(19억 5,500만원)이 관련 예산 350억원의 5.6%에 불과하였음에도 2021년에 동산담보물 등의 매입과 관련한 94억원을 포함한 11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전체 출자예산의 실질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개 업체(차주)에 대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80개의 동산담보물을 포함하여 매입하였다.

8)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이 캠프동산금융지원(주)에 동산담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해당 동산을 캠프동산금융지원(주)로부터 재 임대하는 구조이다.

9) 대구은행 등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4개 업체(차주)로부터 76개의 동산담보물을 매입하였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설립 후 월별 동산담보 관련 매입 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부실채권 매입		직접매입(S&LB)		합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20년	'20.3월(설립)	-	-	-	-	0	-
	'20.4월	-	-	-	-	0	-
	'20.5월	-	-	-	-	0	-
	'20.6월	1,955	1	-	-	1,955	1
	'20.7월	-	-	-	-	0	-
	'20.8월	-	-	-	-	0	-
	'20.9월	-	-	-	-	0	-
	'20.10월	-	-	-	-	0	-
	'20.11월	-	-	-	-	0	-
	'20.12월	-	-	-	-	0	-
	소계	1,955	1	-	-	1,955	1
2021년	'21.1월	-	-	-	-	0	-
	'21.2월	-	-	-	-	0	-
	'21.3월	-	-	-	-	0	-
	'21.4월	-	-	-	-	0	-
	'21.5월	-	-	-	-	0	-
	'21.6월	-	-	282	1	282	1
	'21.7월	-	-	1,534	2	1,534	2
	'21.8월	-	-	-	-	0	-
	'21.9월	-	-	-	-	0	-
	'21.10월	-	-	-	-	0	-
	'21.11월	-	-	2,161	1	2,161	1
	'21.12월	-	-	-	-	0	-
소계	0	0	3,977	4	3,977	4	
합 계	1,955	1	3,977	4	5,932	5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와 같은 동산담보 관련 부실채권 및 담보물 매입 실적의 부진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제도 시행 등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비율 감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제도<sup>10)</sup>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등에 따른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2022년 6월 현재 2022년 9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유 등에 따라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sup>11)</sup>) 비율은 2019년 3월 1.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는 2019년 3월 대비 0.53%p하락한 0.52%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 발생 비율 감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대출 부실채권 매입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

(단위: %, %p)

2019				2020				2021				2022	차이 (b-a)
3월 (a)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b)	
1.05	0.97	1.00	0.89	0.93	0.83	0.80	0.76	0.75	0.65	0.60	0.57	0.52	△0.53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보도자료, 2021.3.18., 2022.6.2.

② 동산담보물 매각 활성화를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은 동산담보 대출로 인해 발생한 관련 부실채권 외에 동산담보물의 직접 매입도 수행하고 있다. 즉, 동산담보 대출 부실 발생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지원기구가 은행 등의 채권자로부터 동산담보물을 직접 매입하여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활동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산을 보다 안정적인 담보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금융위원회, “4월 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0.3.31.

11) 은행 대출채권은 자산전선성에 따라 연체 등을 고려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정이하 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sup>12)</sup>에 따르면, 동산담보물 매각 방법이 경매의 방법으로 한정 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여 민원 또는 분쟁이 우려되는 까닭에, 담보목적물의 매각(사적(私的)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는 이와 같은 사적실행 요건 구체화를 포함한 동산의 담보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2020년 정부의 관련 예산 편성 시에도 2019년 연내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정부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사적실행 요건 구체화를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2020년 5월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sup>13)</sup>

이후 별도의 정부 입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6월 현재 정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한 후에, 정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다.

---

1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登記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2020년 3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주요 내용 중 ‘담보권 설정자 범위 확대’의 내용은 2020년 10월, 「동산·채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4))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 완료되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안 주요 내용]

구분	관련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여부
사적실행 요건 구체화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로 사적실행 요건 불명확	“정당한 이유”를 4개 항목으로 구체화	×
담보권 설정자 범위 확대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한 자	○
담보권 존속 기한 폐지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담보권 존속기간 5년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
일괄담보제	신 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개별 종류만 담보설정 가능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포함한 담보설정 가능	×
처벌 조항 신설	신 설	처벌 조항 없음	담보물 훼손 또는 무단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물의 직접 매입을 위해 2021년부터 동산담보를 제공한 기업이 재 임대하는 Sales & Leaseback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의 정부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한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와 같이 사적 매각 시장을 육성하는 인프라·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바, 정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담보안정성 강화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여 회수가치를 제고

- ①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sup>①</sup>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 매각기관에 집중<sup>②</sup>
- ※ ①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을 담보 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
- ②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 ②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한국자산관리공사**, 기계거래소)
- ※ ①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 ②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 ※ (플랫폼) 기계거래소·캠코·신보증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 (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자금 지원
- ③ 경매방식을 개선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한국자산관리공사, 기계거래소)

자료: 금융위원회,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보도자료, 2018.5.21.

정부의 출자사업은 보조금, 출연금 등의 예산과 비교하여 기관에 한 번 출자된 후에는 해당 사업에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을 포함한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적정 규모의 출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 가.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회 소관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의 고유 미션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대외 활동을 일정한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연구회 소관 기관의 장은 ①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sup>1)</sup>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②각 기관은 대외활동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대외활동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회의 표준지침에서는 소속 직원의 출강(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1회 4시간 이내, 학기당 1과목, 기관장의 사전승인, 겸임교수의 승인(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기관장 사전승인), 근로시간 내 출강시간 제한(4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표준지침에 따르면 ‘대외활동’이라 함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외에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출강’이라 함은 국내의 대학,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활동(출강) 관리 기준]

유형	관리	사례금사후신고 (청탁금지법 적용)	근로시간
출강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강대학 공문접수→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 기관장 사전승인</li> <li>겸임교수에 대한 승인은 →인사위원회 심의 기관장 사전승인</li> </ul>	○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시간 중 출강 시 근로시간 최대 4시간까지 인정</li> <li>근로시간 중 출강이 4시간 이내일 경우 실제 출강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li> </ul>

자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2020, 19면 발췌.

나. 분석의견

**연구회 및 소관 기관의 대외활동 기준은 온라인 강의(실시간, 녹화)의 증가 등 대외활동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관리 기준에 대한 해석도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표준지침과 각 기관별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형태의 대외 활동(출강)이 많아지면서, 사전녹화 강의 등에 있어 주 1회 4시간 이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해당 제한이 근로시간 내의 강의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준의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준지침 및 연구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대외활동 및 출강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소속 직원의 출강을 허락하면서 21년 1학기에 2건의 과목을 허용하였으며, 사전 녹화 강의<sup>2)</sup>로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에 강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기당 1과목 이상, 1주당 4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였다(다음 표 사례1).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의 다른 출강 허용 사례를 보면,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 1주당 4시간 55분(약 5시간), 1학기에 2과목의 강의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한편

2) 사전 녹화 강의의 경우 이미 촬영 완료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출강시간과 '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신고할 때 기재하는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례에서 녹화에 투입된 시간은 다소 다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은 대학출강의 경우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재경 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주간에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다음 표 사례2 참조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강의 시간을 허용하였는데(주당 8.5시간), 해당 강의는 사전 녹화 강의이다(다음 표 사례3).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경우 동일한 직원에 대하여 21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겹치는 기간에 2개의 과목을 허용하여 주었는데, 두 강의 모두 온라인 실시간 강의였다(다음 표 사례4).

[2021년도 대외활동(출강) 허용 참고 사례]

(단위: 시간, 과목, 천원)

기관명	출강시간	출강기간	주당 시간	총 시간	학기당 과목	온라인 여부	사례금
한국행정연구원 (사례1)	목요일 14:00~17:00	21.3.4. ~6.10.	3	50	2	○ (녹화)	10,108
	금요일 14:00~17:00	21.3.5. ~6.11.	3	50			
한국행정연구원 (사례2)	월요일 18:00~22:55	21.3.8. ~6.14.	4.95	98	2	×	3,240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사례3)	화요일 09:00~16:00	21.5.11 ~6.18.	8.5	51	1	○ (녹화)	4,656
	금요일 20:00~22:30						
	월요일 13:30~15:00 수요일 13:30~15:00	21.9.1. ~12.13.	3	21	1	○ (녹화 +실시간)	
국토 연구원 (사례4)	화요일 16:00~19:00	21.3.1. ~6.15.	3	42	1 (일부 기간 2과목)	○ (실시간)	13,800
	토요일 09:00~12:00	21.5.29 ~8.14.	3	30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

3) 이에 대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은 사례1과 2의 경우, 임용 전부터 이미 강의를 수행해 온 점, 원내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직원대외활동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2학기 출강을 제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례2의 경우 주간이 아닌 야간강의인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의 경우 예시로서 제시된 것으로, 반드시 현행 지침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사례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주간/야간 강의인지, 온라인 강의(실시간 또는 사전 녹화)인지 등 강의의 특성에 따라 실제 출강시간과는 별개로 소관 업무 또는 기관의 미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연구회의 표준지침이나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지침」, 국토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 적용기준」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없어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sup>4)</sup>.

기관별 대외활동 출강 지침을 살펴보면, 온라인 실시간·사전녹화 강의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운영하는 기관은 없고, 출강 제한 규정(주 4시간 또는 3시간)과 강좌 제한 규정(1학기 1과목), 근무시간 중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주간 강의 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출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휴일 또는 주말 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강좌 제한 규정이나 근무시간 중의 강의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았고, 상당수 기관이 사례금과 관련된 제한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기관별 대외활동(출강) 지침 현황]

기관명	지침명	출강시간 제한규정	미승인 시 징계규정	강좌 제한 규정	근무시간 중 제한규정	사례금 제한규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직원대외활동규칙	주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직원대외활동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국토연구원	직원대외활동 적용기준	주간강의 시 휴가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산업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4)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규칙」에서 사이버 강의는 대학출강으로 적용하되 재경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직원대외활동지침」에는 야간강의, 사이버강의를 포함하여 한 학기에 1강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관명	지침명	출강시간 제한규정	미승인 시 징계규정	강좌 제한 규정	근무시간 중 제한규정	사례금 제한규정
에너지경제 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 규칙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직원대외활동요령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통일 연구원	직원대외활동규칙	주 1회 4시간	○	1학기1과목	주1회 4시간	○
한국개발 연구원	직원대외활동요강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교육 개발원	직원 출강 시행 지침	주 4시간	○	1인 1과목, 휴일 포함, 주야 불문	주 1회 4시간, 이동시간포함	×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규칙	주 1회 4시간	○	연간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교통 연구원	대학(원)수강 및 출강규칙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노동 연구원	임직원대외 활동규칙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직원 대학원 수강 및 출강 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법제 연구원	직원대외활동규칙	주 3시간	○	1학기1과목	집중근로시간 (화:목10:00-16: 00) 내 출강금지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복무규정	주1회	○	1학기1과목	출강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직원대외활동 기준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규칙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시행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있음 (주 1회 4시간)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직원대외활동지침	주 1회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한국행정 연구원	직원대외활동규칙	주당 4시간	○	×	주 4시간	×

기관명	지침명	출강시간 제한규정	미승인시 징계규정	강좌 제한 규정	근로시간 중 제한규정	사례금 제한규정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외부출강 및 대학(원)수강 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1회 4시간	×
한국환경 연구원	직원원의 겸직활동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건축공간 연구원	직원대외활동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KDI 대학원	교원 대외활동 세부운영 지침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육아정책 연구소	직원대외활동규칙	주 4시간	○	1학기1과목	주 1회 4시간	×

주.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은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하는 경우 60만원의 상한을 두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봉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강의 시간의 경우 강의 시간의 제한이 없거나, 사전 녹화 강의, 근로시간 외(휴일, 평일이 아닌 경우)는 1주당 4시간 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표준지침상 1주당 4시간 출강의 제한이 근로시간 내 또는 평일의 경우만 포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문언상 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반대로, 사전 녹화 강의나 온라인 강의, 그리고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출강의 경우 강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러한 유형의 강의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시간으로 강의가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 녹화 강의는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이 여가 시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도 있으므로 온라인 실시간 강의나 대면 강의에 비하여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외의 출강은 근로시간 내 출강에 비하여 자율성을 허용해 줄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과 판단 기준이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사전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실제 동영상(강의)이 업로드되어 학생들이 수강 가능한 시간(강의 시간)과 강의를 녹화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하여 별도의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실시간 온라인 강의, 사전 녹화 강의, 그리고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혼합적인 형태 등 기존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연구회의 표준지침이나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출강, 사전 녹화 강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sup>1)</sup>.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sup>2)</sup>의 지원을 위하여 2021년 407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403억 5,700만원이 출연금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교부되었으며 4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기관 외에 26개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두고 지원·육성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0,794	40,794	-	-	40,794	40,357	-	43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나. 분석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기관 중 유급 안식년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안식년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통된 세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급 안식년이란, 연구에 전념할 기간이 필요하거나 연구를 위한 재충전 또는 자율적인 연구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기관에서 연구원에게 부여하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휴직 또는 휴가를 의미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에서는 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국무조정실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2) 코드: 일반회계 1531-301

체로 연구연가, 자율연구, 연구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역량 유지를 위해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지만,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연구자 개인이 자율연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에서 우수연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급 안식년 제도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sup>.

현재 유급 안식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에 대해 규율하면서 ‘유급 안식년 휴직’의 경우 연구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sup>4)</sup>.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도 유급 안식년을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서는 기관장은 모든 직원(휴직자, 휴직자 대체인력, 안식년 등 모두 포함)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외활동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3조제2항에서 연구연가자에 대한 카드 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유급 안식년에 대하여는 일부 개괄적인 내용 외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표준지침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감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유급 안식년(연구연수) 제도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 연구를 통한 개인 및 기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안식년 인원은 전체 연구인력 대비 5.6% 정도 수준으로서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③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사원 등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2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결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방안에서는 연구연가(유급 안식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연봉 및 수당과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기관의 유급 안식년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관별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유급 안식년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기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직에 대해서만 안식년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직 외에 유급 안식년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유급 안식년 제도 운영 현황]

기관명	명칭	근거규정	대상자	기간	보수지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연가	「연구연가지침」	연구직	1년 이내	보수월액100%
국토연구원	교육훈련	「직원교육훈련규칙」	연구직	1년 이내	보수월액100% (중식보조비 제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년	「인사관리규정」 제37조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최대 1년	기본연봉 100%, 성과연봉 75%
산업연구원	연구연수	「연수운영규칙」	연구직	최대 1년	보수월액 100%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율연구	「자율연구 시행규칙」	연구직	6개월 이상 1년	연봉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연가	「인사관리규정」제31조 및 「연구연가요령」	연구직	최대 1년	기본연봉 및 가족수당 지급
통일연구원	연구연가	연구연가운용규칙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직	6개월 최대1년	보수월액 100% (교통보조비 제외)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파견	「인사관리규정」 제51조 학술파견, 「학술파견 시행규칙」	연구직	최대 1년	'18년 이전 기본연봉 지급 / '19년 이후 보수 전액 지급

5) 해당 개선방안에서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연가(안식년)는 현재 기관 자율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연가 대상 및 기간, 의무복무기간, 급여 지급 규모, 능률성과급 지급 여부, 기타수당 지급 종류 등이 기관마다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관 특성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연구연가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타당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능률성과급, 기타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표준의 제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명	명칭	근거규정	대상자	기간	보수지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연가	복무규정 제30조의2 (연구연가), 연구연가 세부 시행 지침	연구직	최대 1년	보수월액 100%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연가	연구연가시행규칙	연구직	1년 이내	보수월액 100%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연가	연구연가시행규칙	연구직	최대 1년	상근직원의 보수 기준에 준하여 적용, 중간평가등급 기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년	연구년·방문연수지침	부연구위원 이상	1년 이내	보수월액 100% (차량·중식보조비 제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연가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연구직	1년	보수월액 10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년	「직원교육연수규칙」 제5장	연구직	최대 1년	보수 월액 100%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연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책임급연구직	1년 이내	보수월액 100% (중식비 미지급)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연가	「교육연수규정」 제6조 내지 제13조의 2	연구직	6개월 또는 1년	기본연봉 및 기타수당 지급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연구연가	「연구연가운영규칙」	연구직	1년 이내	연봉계약금액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연가	「인사규정」제19조의2 「연구연가시행규칙」	연구직	최대 1년	보수월액 100%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연가	「인사규정 및 연구 연가규칙」	연구직	최대 1년	보수월액 100%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연가	「연구연가규칙」 및 「인사규정」제35조	연구직	최대 1년	보수 전액 지급 (교통보조비 제외)
한국환경연구원	자율연구	「자율연구시행규칙」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직	1년 이내	보수월액100%
건축공간연구원	국내·외 연구연수	직원교육훈련규칙	연구직	최대 1년	보수월액100%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년	「학술파견시행규칙」	연구직 (교원)	최대 1년	보수월액 100%

기관명	명칭	근거규정	대상자	기간	보수지급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연가	-복무규칙 제35조의 2(연구연가) -연구연가 시행세칙	연구직	6개월 또는 1년	보수월액 100%

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유급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유급 안식년 제도는 존재하나 2017~2021년 기간 동안 실제 안식년을 실시한 실적이 없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또한, 유급 안식년 제도와 관련한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급 안식년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 근속연수, 이미 안식년을 실시한 직원에 대한 재선발 가능성(횡수의 제한), 재선발의 제한요건 등에 있어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근속연수는 기관별로 통상 3년 또는 6년이었으며, 재선발 등 횡수 제한이 별도로 없거나, 재선발 제한 기간에 대한 요건도 기관별로 편차가 있었다.

[유급 안식년 자격요건 등 세부 현황]

기관명	최소근속연수	횡수제한	재선발 제한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년	제한없음	- 직전 연구연가 기간이 6개월 이하: 3년 이상 - 직전 연구연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 6년 이상
국토연구원	3년	재직기간 중 최대 활용한도 14개월	- 6개월 이상 교육훈련자: 교육훈련 종료 후 3년 이상 - 6개월 미만 교육훈련자: 교육훈련 종료 후 2년 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년	제한없음	- 안식년 6개월 이내: 3년 - 안식년 1년 이내: 6년
산업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에너지경제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통일연구원	3년	제한없음	6년
한국개발연구원	5년	제한없음	5년
한국교육개발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년	제한없음	6년

기관명	최소근속연수	횟수제한	재선발 제한기간
한국교통연구원	5년(연구위원 직급채용) 또는 8년 (부연구위원 직급채용)	제한없음	- 연구연가 누적기간 1년 미만인 자로서 6 개월 시행자: 1년 의무복무 종료 후 2년 - 연구연가 누적기간 1년 이상인 자: 2년 의무복무 종료 후 7년 - 6개월을 초과한 국외파견 또는 업무연수 시행자: 복귀 후 5년
한국노동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법제연구원	3년	3회	제한 없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행정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한국환경연구원	6년	제한없음	6년
건축공간연구원	3년	제한없음	제한없음(단, 실무상 3년 운영)
KDI국제정책대학원	5년	제한없음	5년
육아정책연구소	6년	제한없음	6년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유급 안식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미결과제에 참여하는 상태에서 유급 안식년 실시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중 미결 과제가 남아 있는 연구자가 유급 안식년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 2017~2021년까지 5년간 유급 안식년 현황 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포함 7개 기관에서 과제 수행 기간 중 유급 안식년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과제 참여 중 유급 안식년 실시 현황]

(단위: 건)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	-	-	1
통일연구원	-	3	1	-	1	5
한국교통연구원	-	-	-	1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4	1	7	11	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1	-	-	-	3
한국환경연구원	7	2	11	5	3	28
건축공간연구원	1	-	1	-	-	2

주: 미결과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2021년 총 11개의 미결과제에서 5명의 연구자가 유급 안식년에 들어갔다. 연구자별로 1~3개 가량의 미결과제를 수행 중에 유급 안식년에 들어간 것으로, 11개 과제의 예산은 총 10억 8,500만원 수준이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급 안식년을 실시한 인원은 총 6명이므로, 6명 중 5명이 미결과제가 있는 상태에서 유급 안식년을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특히, 각 기관별 조사 결과 과제에 참여한지 1~2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안식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급 안식년의 경우 통상 1년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6개월 전에는 실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sup>7)</sup>.

6)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 사례의 경우 급증한 연구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급 안식년을 들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7) 이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은, 6개월 이하의 연구연가자를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미결과제 참여자가 안식년 중에도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최근 5년간 미결과제 참여자의 안식년 실시 사례 5건 모두 안식년 기간뿐 아니라 안식년 종료 후 과제 마감 시점까지 연구에 지속 참여한 건이라는 입장이다.

[과제 실시 후 1~2개월 내 안식년 실시 현황(2017~2021)]

기관명	연도	과제기간	구분	안식년 실시기간
통일연구원	2018	2018.1.1.~ 2018.10.31.	공동연구	2018.2.1.~ 2018.7.31.
	2018	2018.1.1.~ 2018.12.31.	공동연구	2018.2.1.~ 2018.7.31.
	2018	2018.1.1.~ 2018.12.31.	공동연구	2018.3.1.~ 2018.8.31.
한국교통연구원	2020	2020.4.1.~ 2021.12.31.	연구책임	2020.5.1.~ 2021.4.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01.26.~ 2018.08.23	공동참여	2018.3.1.~ 2019.2.28.
	2018	2018.01.01.~ 2018.12.31	공동참여	2018.3.1.~ 2019.2.28.
	2018	2018.01.01.~ 2018.12.31	공동참여	2018.3.1.~ 2019.2.28.
	2020	2020.01.01.~ 2020.12.31	공동참여	2020.3.1.~ 2021.2.28.
	2021	2021.01.01.~ 2021.12.31	공동참여	2021.2.26.~ 2022.2.25.
	2021	2021.01.08.~ 2021.03.31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1.01.~ 2021.12.31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2.01.~ 2021.12.10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1.01.~ 2021.12.31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2.01.~ 2021.05.15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1.01.~ 2021.12.31	공동참여	2021.3.1.~ 2022.2.28.
	2021	2021.01.01.~ 2021.12.31	공동참여	2021.3.1.~ 2022.2.28.
건축공간연구원	2019	2018.12.11.~ 2019.3.10.	공동참여	2019.1.1.~ 2019.12.31.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유급 안식년은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노동을 위한 휴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제를 참여하는 상태에서 유급 안식년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기관은 미결과제를 수행하는 상태로 안식년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면, 일부 기관은 미결과제를 수행하면서 안식년을 실시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등 기관별로 지침과 규정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학술파견’이라는 명칭으로 안식년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술파견시행규칙」에서 미완과제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연구연가시행규칙」에서 연구연가 대상자의 선발 시 자격기준으로 ‘미결 과제가 없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 26개 중 총 19개 기관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미결과제에 참여하면서 안식년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②유급 안식년에서의 성과 등급 책정 방식 등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지급되는 연봉구성 항목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해당 직군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연 급여액으로서 전년도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정부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편성·집행한다. 성과연봉은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7.10.30.)에 따라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성과연봉과 달리, 능률성과급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한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외에 초과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하고, 인건비와는 다른 항목이다<sup>8)</sup>.

능률성과급은 실제지급인원 월보수(기본연봉+성과연봉) 합계액(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잔여재원은 차년도 기타수입으로 인식하여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

8)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이나 기본연봉의 계약액에서 제외된다.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소관 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은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제243차 이사회, '17. 10. 30.)에 따라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결산 승인 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능률성과급 지급 시, 전년도 업적평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하에 집행하며,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은 기관별로 별도의 업무(업적)평가를 토대로 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유급 안식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총 95명의 연구자가 유급 안식년을 실시하였으며, 총 62억 9,100만원의 금액(기본연봉+성과연봉+능률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021년도 유급 안식년 연구자에게 2022년도에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능률성과급의 경우 통상 전년도 수탁과제 등의 실적에 따라 각 기관별 평가를 거쳐 당해연도에 지급된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능률성과급 지급규정」에서 해외취학 연수자, 해외파견 근무자에게는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능률성과급 지급지침」에서 연구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비근무일만큼 일할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도 유급 안식년 연구자에게 지급된 금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인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기타	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138,986	65,474	(미지급)	3,102	207,562
국토연구원	6	68,680	29,390	(미지급)	-	98,07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미지급)	-	-
산업연구원	5	-	368,621	(미지급)	22,320	390,941
에너지경제연구원	4	103,268	52,145	(미지급)	-	155,4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127,941	(미지급)	(미지급)	720	128,661
통일연구원	4	173,736	75,723	(미지급)	15,140	264,599
한국개발연구원	3	137,760	140,592	(미지급)	-	278,352
한국교육개발원	4	242,998	117,032	(미지급)	-	360,0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	664,413	192,983	(미지급)	-	857,396
한국교통연구원	5	92,084	39,930	(미지급)	642	132,656

기관명	인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기타	계
한국노동연구원	3	193,900	83,100	(미지급)	-	277,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50,663	14,970	(미지급)	-	65,633
한국법제연구원	3	153,060	64,788	(미지급)	1,920	219,7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349,347	152,233	(미지급)	2,780	504,36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91,764	(미지급)	(미지급)	240	92,0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	54,316	(미지급)	(미지급)	42,695 (체재비 월 \$3,000)	97,0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	427,330	140,990	(미지급)	0	568,3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138,631	61,814	(미지급)	4,200	204,6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	-	-
한국행정연구원	3	170,484	73,560	(미지급)	1,200	245,24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	148,929	36,674	(미지급)	2,640	188,243
한국환경연구원	8	499,234	164,974	(미지급)	6,236	670,444
건축공간연구원	1	64,638	22,270	(미지급)	2,240	89,148
KDI 국제정책 대학원	1	31,873	35,670	3,592	1,185	72,320
육아정책연구소	2	93,924	28,933	(미지급)	480	123,337
합계	95	4,217,959	1,961,866	3,592	107,740	6,291,157

주1. 2021년 각 기관별 유급 안식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2021년도 유급 안식년 실시 중 지급한 금액을, 능률성과급은 2021년도 유급 안식년 연구자에게 2022년도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을 의미함

주2. 기타 항목에는 대체로 가족수당, 체재비 등이 포함됨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다음으로, 능률성과급의 지급 외에도 기본적인 보수에 포함되는 성과연봉의 경우, 안식년을 포함하여 안식년 후 차기 연도의 성과 측정 방식에서도 각 기관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기본연봉 외에 성과연봉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②안식년 기간 동안에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안식년 차기 연도에는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③안식년 기간 동안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차기 연도에는 안식년 시행 직전 3개 연도의 성과연봉액 평균 75% 또는 동일 직급에서의 평균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측정방식을 가진 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등이다.

[유급 안식년 이후 성과연봉 기관별 성과 측정 방식]

기관명	성과연봉 (등급)책정 방식	
	안식년 당해연도	안식년 차기 연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중간등급으로 등급부여 (단, 8개월 이상 근무 시 타직원과 동일 평가)	타 직원과 동일한 평가 (단, 8개월 미만 근무 시 중간등급 으로 등급부여)
국토연구원	안식년 시행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책정 (단, 6개월 미만 근무 시 중간등급 으로 등급 부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안식년 시행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안식년 시행 직전 3개연도 성과연 봉액 평균의 75%로 책정
산업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에너지 경제연구원	안식년 시행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안식년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성과연봉 미지급	연구원가(안식년) 복귀 후 일반직원 과 동일한 기준으로 등급 부여
통일연구원	성과연봉(30%)에 전년도 업무평가 결과 반영(가감(±15%))	안식년 6개월 이하시: 업무평가결 과 대로 반영 안식년 6개월 초과시: 전년도 업무평 가결과에서 한단계 하향 반영
한국개발 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반영	동일직급 평균점수 부여
한국교육 개발원	전년도 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책정	중간등급을 기준으로 책정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100% 반영	중간 등급(B등급)에 준하여 성과연 봉 부여
한국 교통연구원	(안식년 시작 시부터) 중간 등급으 로 부여	중간 등급으로 부여
한국노동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휴직연도: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등 · 복직연도: 휴직 전후 실적 합산 등	계속근무자와 동일
한국법제 연구원	전년도 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성과연봉 미지급 (기본연봉 및 기타수당만 지급)	안식년 이전 연도 등급(평가 결과) 적용

기관명	성과연봉 (등급)책정 방식	
	안식년 당해연도	안식년 차기 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지급	해당분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최근 3년간 평균등급, 산출이 곤란한 경우 중간등급 반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년도 종합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행정연구원	전년도 성과·역량평가 반영	연구연가 직전의 성과·역량평가 3년 평균점수 적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한국환경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건축공간연구원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KDI 국제정책 대학원	전년도 업적평가점수 (교육+연구+봉사) 100% 반영	전년도 업적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연봉 책정(단, 교육업적이 없는 경우, 전임교원 평균점수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전년도 근무평가 100% 반영	중간 등급으로 등급 부여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능률성과급의 경우 기본 보수로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성과급으로 부여되는 금전이나, 기관별로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차이가 있다. 성과연봉의 경우도 안식년 기간 동안 연구자에게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안식년 이후의 차기 연도에서의 성과 책정에서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급 안식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통된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작성하여 소관 기관에 배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결산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유급 안식년에서 지급가능한 연봉 및 수당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로 들고 있으며, 능률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개선방안의 경우 표준

지침으로 제정되지는 아니하였다.

정리하면, 현재 유급 안식년 제도는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자율적인 연구 촉진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자격요건, 미결과제의 수행 상태에서의 안식년 실시에 대한 요건, 성과연봉 또는 능률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한 요건 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편차를 축소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지침에 유급 안식년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총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가지로 규정하고, 동법 제80조제3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정직’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sup>.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사유 및 정도, 절차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5조는 기타공공기관도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공무원의 징계 관련 등 지침을 참고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정직처분의 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기관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타공공기관도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복무관리를 실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021년 국토연구원의 경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97만원을,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2021년 4월에서 6월에 걸친 기간 동안 1,20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현황]

(단위: 원)

기관	정직기간	당초 보수월액	총 지급금액
국토연구원	1개월	3,093,787	971,385
한국법제연구원	2개월	7,202,000	12,003,310

주.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정직기간이 4.15.~6.14.로 3개월에 걸쳐 있었으므로 3개월분의 총 보수액에서 2개월분의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을 총 지급금액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sup>2)</sup>,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 기간 중에도 3분의 1의 보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2) 국토연구원의 경우 「인사관리규정」(2022.4.4. 개정) 제36조제3항,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인사관리규정」(2021.12.29. 개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간 비교]

구분	관계 규정	정직 중 보수 지급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미지급
국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3항	보수의 3분의 1
한국법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3항제1호	보수의 3분의 1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보수가 되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두 기관 모두 정직은 중징계의 일종으로 보아 경징계에 비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인 경우에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은 향후 정직처분 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인사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동 기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sup>1)</sup>에 따라 2021년 출연금 226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집행액은 220억 1,100만원, 불용액은 6억 5,7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22,668	22,668	-	-	22,668	22,011		65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나. 분석의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지침에 맞추어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란, 국가정책수립 기여 및 구성원들의 사기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한 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9-3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지침에서는 퇴직자의 정년 이후 활용 관련 제도를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로 통합하고, 퇴직자 선발 시 ①정년퇴직 전 1년 이내의 자로서 정년퇴직일 기준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일 것, ②정규직 재직기간 전체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발된 퇴직자는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맺게 된다. 보수는 퇴직 2년 전 연봉의 60% 이내를 상한으로 하고, 고정보수가 아닌 과제 참여 인건비, 자문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표준지침에 따른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기준]

구분	내용
선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li> <li>①정년퇴직 전 1년 이내의 자로서 정년퇴직일 기준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li> <li>②정규직 재직기간 전체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li> <li>- 상기 조건 외에는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조건 부가 가능</li> </ul>
선발규모	- 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연구실적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 가능
선정절차	- 선발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 기관 내부 관계자, 원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추천 →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자 심의 → 최종선발
활용방법	- 최대 5년 활용,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재계약, 자문 또는 과제참여 등으로 전문성 활용
보수지급	- 퇴직 2년 전 연봉 60% 이내에서 과제참여 인건비, 자문수당 등으로 지급
기관자율	동 표준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자료: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기관 26개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현황

을 살펴보면, 2021년 총 18개 기관에서 91명의 퇴직자를 활용하였고, 2021년 약 40억 3,000만원이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번	기관명	인원	21년 총 지급액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24,053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223,521
3	국토연구원	6	330,713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270,948
5	산업연구원	8	325,776
6	에너지경제연구원	12	633,719
7	통일연구원	3	87,740
8	한국개발연구원	9	463,574
9	한국교육개발원	2	76,920
10	한국노동연구원	3	57,78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212,940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69,295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129,000
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7	242,212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15,000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505,254
17	한국행정연구원	1	46,839
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38,737
19	한국환경연구원	4	276,565
합계		91	4,030,594

주. 표에서 제외된 기관은 21년도 퇴직자 전문성 제도 실적 없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그런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정년 퇴직직원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명예위원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정년 후 직원을 활용하기 위한 ‘명예위원’을 명예연구원, 명예전문원, 명예행정원, 명예업무원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임용기준을 ①정년퇴직 전 1년 이내의 자로서 직능연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 ②정년퇴직자로서 직능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인 임용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운영지침에 따른 퇴직자 전문성 활용 임용기준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으로 세부요건인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운영지침에 따른 명예위원 임용요건]

구분	내용	
제5조 제1항	제5조(임용기준) ①명예위원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년퇴직 전 1년 이내의 자로서 직능연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 2. 정년퇴직자로서 직능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5조 제2항	- 아래 요건 중 각 호의 하나 이상 충족할 것	
	명예연구원	가. 박사학위소지자 나. 기술사자격 취득 후 교육훈련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다. 직업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연구사업 수행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라. 연구위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전문원	가. 정보처리기사 및 정사서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웹마스터 능력을 보유한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다.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한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라. 언론 홍보 관련 분야 또는 민간자격 등 법정위임사업 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마. 선임 전문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행정원	가. 전공분야, 자격 등에서 해당분야 근무 가능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나.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관련 행정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다. 선임 행정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라.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업무원	가. 전공분야, 자격 등에서 해당분야 근무 가능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나. 선임 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료: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성

그런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운영지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 중 “정규직 재직기간 전체 근무성적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대신 “정년퇴직자로서 직능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제시하고 있고, 운영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지,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1년 7명의 퇴직자를 선발하여 전문성 활용 제도로 운영하였는데, 이 중 재직연수가 10년에 미치지 아니한 직원을 선발하였고, 2,644만 9,572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재직연수가 15년에 미달하고, 선임 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퇴직자 전문성 활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표준지침과 동 기관의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현황]

(단위: 원)

퇴직자	활용기간	재직연수	보수지급내역
A	2021-01-01~2021-12-31	24년 1개월 0일	15,107,544
B	2021-01-01~2021-12-31	24년 2개월 7일	15,781,500
C	2021-01-01~2021-12-31	21년 6개월 0일	47,826,466
D	2021-01-01~2021-12-31	17년 9개월 17일	44,403,670
E	2021-01-01~2021-12-31	23년 2개월 0일	45,384,602
F	2021-01-01~2021-12-31	16년 1개월 25일	47,259,240
G	2021-01-01~2021-12-31	8년 5개월 0일	26,449,572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표준지침을 정하고 소관 기관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표준지침에서는 재직 15년 이상일 것과 우수한 근무성적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외에는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sup>2)</sup>, 표준지침

2) 따라서 표준지침에 따르면 재직연수(15년)와 우수한 근무성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부가적으로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까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선발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에서는 단순히 자격요건이나 선발규모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의 운영 시 각 기관에서는 공정성·투명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①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일 것, ②정년퇴직 전 10년간 연구실적평가 및 근무평정 결과 상위 70% 이상일 것,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연구원에 대한 공적을 고려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향후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와 관련한 기관 지침을 표준지침에 맞추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동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3)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교육위원회







교육부



## 사학연금공단 회관건립 사업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로 인한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집행 부적절

### 가. 현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sup>1)</sup>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 장애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회관건립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39억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4,4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26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공단의 회관건립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회관건립	3,907	3,907	-	3,907	144	2,690	1,073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나. 분석의견

회관건립 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편성된 단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로 인하여 예산의 약 70%가 이월되는 등 다년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준공일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교육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2014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들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회관 건립 사업은 공단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계속하여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을 정부 예산이 아닌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1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완료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 준공 후 2022년부터 40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사학연금 직원 보육시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4	9	8	5	5
만 1세	6	4	9	8	5
만 2세	4	6	4	9	8
만 3세	6	4	6	4	9
만 4세	3	6	4	6	4
만 5세	6	3	6	4	6
만 6세	3	6	3	6	4
합계	32	38	40	42	4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년도 계획액 편성 당시 사업집행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1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되고, 2022년 1월부터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실시설계 공고 이전부터 사업집행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21년 5월에야 비로소 설계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초 준공 시점이었던 2021년 12월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회관건립 사업의 당초 계획 및 변경 계획]

구분	2021.01	2021.03	2021.04	2021.05	2021.10	2021.12	2022.1 ~10
당초 계획	설계 공고 및 선정	실시설계					
		시공사 공고 및 선정		착공	시공 및 준공		개원
변경 계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설계공모 공고		설계사 선정	실시설계	시공사 공고 및 선정	시공 및 준공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1년에 완료예정이었던 동 사업은 계획액인 39억 700만원 중 1억 4,4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상황이며 계획액의 약 70%인 26억 9,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하여 당초 동 사업을 일반건축공사로 보고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공건축사업으로 확인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2)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가 추가되었고,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 당시 설계비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이므로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에 해당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시행령3)에 따른 공공건축사업에 해당한다. 즉, 당초 사업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동 사업이 공공건축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나 설계공모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공단의 회관건립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비목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계
금액	55	83	377.3	3,066.7	325	3,90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3.7%의 집행률 및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사전 검토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업 집행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액 편성시 사업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한국장학재단<sup>1)</sup>은 학자금 대출 사업과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 사업 등을 수행·관리하고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부 소관의 공공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출연받아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사업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sup>2)</sup>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후, 의무상환기까지는 국가가 이자비용을 대납하다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의무상환을 개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 개요]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 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22년부터 일반 대학원생 지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22년부터)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22년부터 성적 기준 폐지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한지는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 1) 교육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2) 2021년까지는 지원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반 대학원 재학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22년부터)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 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 (’21년 2학기 기준 연 1.70%)	· 고정금리 (’21년 2학기 기준 연 1.70%)	
대출조건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 원: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 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 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 수수료 없음)	

자료: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48만 4,958명에 대하여 총 1조 1,1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규모는 총 34만 3,770명에 대하여 총 7,953억원을 지원하였다.

[2021 회계연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획(A)	실적(B)
지원인원	484,958	343,770
지원금액	1,111,700	795,300

자료: 한국장학재단

### 나. 분석의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이율이 산정되므로 의무상환기가 도래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가능한 낮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학부생: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제도로, 대출을 받은 자들이 취업한 후 일정 소득 이상<sup>3)</sup>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상환이 개시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책정되어 있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환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한 이후 각종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상품 가입자들의 상환부담이 다소 가중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현황]

변경 월	2020.03	2020.05	2021.08	2021.11	2022.01	2022.04	2022.05
기준금리(%)	0.75	0.50	0.75	1.00	1.25	1.50	1.75

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향후 경제상황과 세계 각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대상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졸업 후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등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sup>4)</sup>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sup>5)</sup>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 때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sup>6)</sup>에 따라 매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정부가 보증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한도는 1조 5,000 억원이었으며, 한국장학재단은 이 중 1조 1,8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채권 연도별 발행한도 및 발행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발행한도(보증상한)	22,000	19,000	16,000	17,000	15,000
발행실적	15,600	14,000	12,400	11,900	11,800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무보증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보증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에 대하여 정부 예산으로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대납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이차보전,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대한 낮게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532	191,532	-	191,532	172,284	-	19,248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114,112	114,112	-	114,112	98,213	-	15,899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2,614	2,614	-	2,614	2,129	-	485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5,149	5,149	-	5,149	5,149	-	-

자료: 한국장학재단

따라서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도의 취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대납이자·이차보전 및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를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 현황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sup>1)</sup>의 세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액은 3,668억 1,200만원으로,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된 2억 5,700만원을 제외한 3,665억 5,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4,569	4,019,569	-	4,019,569	4,019,569	-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66,812	366,812	△257	366,555	366,555	-	-

자료: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양질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자금 지원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C<sup>+</sup> 이상인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교내 근로의 경우 시급 9,160원, 교외 근로의 경우 시급 11,150원<sup>2)</sup>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이 다문화·탈북 학생에게 언어교육, 기초학습지도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멘토링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 경우 시급 12,500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시급 15,000원<sup>3)</sup>을 지원한다.

한지는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2) 2022년 기준

## 나. 분석의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 지원 1구간 및 2구간의 수혜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수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은 전체 수혜자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0.4%에 불과한 상황이다. 학자금 지원 2구간에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그 비율은 13.2%로, 2017년 대비 그 비율이 50% 감소하였다. 또한, 학자금 지원 1구간 비율 역시 2021년의 경우 29.4%로 전년 대비 그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7~2019년에 30%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대학생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2구간 수혜자 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2구간	전체
2017	지원인원	14,988	37,127	30,994	121,916
	비율	12.3	30.5	25.4	100
2018	지원인원	14,339	37,754	18,382	122,298
	비율	11.7	30.9	15.0	100
2019	지원인원	13,567	36,029	17,278	119,650
	비율	11.3	30.1	14.4	100
2020	지원인원	11,979	31,957	15,576	110,620
	비율	10.8	28.9	14.1	100
2021	지원인원	12,358	34,822	15,683	118,374
	비율	10.4	29.4	13.2	100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2년 기준

반면, 학자금 지원 6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수혜자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장학금 수혜자 대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수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8%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7구간 수혜자 비율은 2021년 3.6%로 최근 5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은 2021년에 6.7%로, 이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대학생 근로장학금 6~8구간 수혜자 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6구간	7구간	8구간	전체
2017	지원인원	3,994	2,777	3,243	121,916
	비율	3.3	2.3	2.7	100
2018	지원인원	5,357	5,179	6,272	122,298
	비율	4.4	4.2	5.1	100
2019	지원인원	7,811	3,590	6,651	119,650
	비율	6.5	3.0	5.6	100
2020	지원인원	8,295	3,777	6,908	110,620
	비율	7.5	3.4	6.2	100
2021	지원인원	9,515	4,267	7,978	118,374
	비율	8.0	3.6	6.7	100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근로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교 자체의 선발기준에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 자격요건(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C<sup>o</sup>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가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는 장학생 우선선발 요건에 해당하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본 자격요건과 같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별 예산의 배분기준 역시 이러한 저소득층 수혜자 비율의 감소 추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별 예산 배정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 수(55%), 예산 집행률(35%), 학기별 운영결과보고 준수 여부(10%), 교외근로비율 유지(5%, 가점)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배분점수의 55%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의 경우 4구간 이하의 근로장학금 '선발' 학생 수가 아닌 '신청'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비율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별 예산 배정 기준]

구분	배점 비율	비고
저소득층 학생 수	55%	4구간 이하 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수
예산 집행률	35%	-
학기별 운영결과보고 준수 여부	10%	-
교외근로비율 유지	5%, 가점	-
합계	100%	-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처럼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자금 지원 1구간 및 2구간의 수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과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1구간, 2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경우 교내 근로장학금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시급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교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경우 그 시급은 9,160원이며, 교외에서 근로활동을 할 경우 그 시급은 11,15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 역시 시급 9,160원으로 이러한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 사업으로, 대학생의 근로활동에 대한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원의 효과를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실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1년에 동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 근로장학생을 포기한 인원은 약 10.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는 동 사업의 지원 효과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급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집행부진 사업 관리 및 인재원의 효율적 운영 필요

서울대학교병원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부지원수입 1조 4,287억원, 기타사업수입 996억원, 기타 3,319억원 등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6,185억원, 경상운영비 7,101억원, 사업비 1,207억원, 기타 4,109억원 등을 합한 1조 8,603억원 규모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정부지원수입	1,103,124	1,151,492	1,263,914	1,237,951	1,428,784
	기타사업수입	41,297	44,319	42,964	53,555	99,664
	차입금	0	0	27,000	0	0
	기타	75,142	32,631	73,010	153,069	331,923
지출	인건비	453,088	471,615	506,780	571,945	618,546
	경상운영비	553,532	577,067	645,722	638,928	710,117
	사업비	82,437	37,263	100,070	81,110	120,734
	차입상환금	2,852	1,321	0	0	0
	기타	127,654	141,176	154,316	152,592	410,974
수입·지출합계		1,219,563	1,228,442	1,406,888	1,444,575	1,860,371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 4-1.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및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 가. 현황

국립대병원 지원사업<sup>1)</sup>은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병원경영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소관 사업이다.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이하, 고객주차장 보강사업)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이하,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관련 2021년 예산이 각각 27억 2,600만원 및 2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각각 7억 7천만원 및 15억 1,300만원이다. 두 사업 모두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8%대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1 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정부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국립대병원 지원 : 서울대학교병원	78,894	52,842	0	0	0	0	0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2,726	2,726	770	3,496	300	3,195	8.6
(분당)복합진료 지원동 건립	2,330	2,330	1,513	3,843	325	3,518	8.5

자료: 교육부

1) 코드: 일반회계 2743-301

## 나. 분석의견

서울대학교병원의 일부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절차(내부 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고객주차장 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지하 고객주차장을 보강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원내의 각종 진료지원시설을 재배치하여 병원 용적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은 진료시설 대비 부족한 교수연구실 및 진료지원 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력 유치 및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서울대학교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409억 7,800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31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고객주차장 보강사업 및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개요]

구분	서울대학교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사업기간	2019~2022년	2019~2023년
사업비 (출연 25%, 자체 75%)	총사업비: 409억 7,800만원 (정부출연금 67억 2,200만원, 자체예산 342억 600만원)	총사업비: 316억 1,300만원 (정부출연금 68억 2,900만원, 자체예산 247억 8,400만원)
사업규모	19,504㎡(지하4층~지상1층)	12,496㎡(지상 1~12층)
사업 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노후화로 잇단 안전사고 문제 및 구조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지하 고객주차장을 재구축 → 각종 안전사고 및 붕괴 등의 사고 위험 사전 예방</li> <li>② 원내의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진료지원 시설을 이전·통합 배치 → 현재 용적률 포화 상태 극복</li> </ul>	진료시설 대비 부족한 교수연구실 및 기숙시설, 진료지원 시설을 확충 → 안정적인 연구 및 공공의료사업 기반 마련, 우수 인력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료: 교육부

먼저 고객주차장 보강사업의 2019~2021년 예산 편성 산출근거 및 집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고객주차장 보강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착수하였으나, 2020년 공사 착공 계획과는 달리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가 2021년까지 지연되었다. 이에 2020년 3.0%, 2021년 8.6%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고객주차장 보강사업 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2019~2021)]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산출근거	본예산	산출근거	본예산	산출근거	본예산
본예산 (A)	기본설계비	230	공사비	1,066	공사비	2,702
			감리비	19	감리비	19
			부대비	5	부대비	5
			<b>소계</b>	<b>1,090</b>	<b>소계</b>	<b>2,726</b>
전년도 이월액(B)	-	0	-	0	-	770
집행액(C)	기본설계비 계약금	230	기본설계비 중도금 및 잔금	320	실시설계비	300
집행률 C/(A+B)	100.0		3.0		8.6	

주: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로 이루어짐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동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진설계기준, 환경영향 평가 조례 개정(2019년)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0년 기본설계 과정에서 동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270억원→409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바 있다.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구분	상세내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9.3.1.)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일반형	2.3m × 5.0m	2.5m × 5.0m	점유면적 8.7% 증가
	확장형	2.5m × 5.1m	2.6m × 5.2m	점유면적 6.3% 증가
	법령 상 주차 1면당 요구되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법 개정 전과 동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차장 연면적이 증가될 필요 발생 → 총사업비가 46억 9,600백만원 증가함			
「건축구조기준」 개정 (2019.3.14.)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개정됨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의무반영, 소방시설 및 설비 내진 면진설계의 의무화로 인해 총사업비 20억 7,200만원 증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2019.5.3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총사업비 10억 3,200만원 증가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별 에너지 예측시스템 도입 의무 추가 - 전기차 충전설비: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 충전시설 설치 의무 추가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그런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2020년 6월 경), 관련 부처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실시설계 미착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에 공사비가 편성<sup>2)</sup>되었다. 더욱이 2020년에 편성되었던 공사비 10억원의 이월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2021년 예산안에 공사비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병원은 2020년 10월~2021년 2월(4개월) 동안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를 거친 후 202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11개월 소요)함에 따라 동 사업의 2021년 공사 착수 계획은 집행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본 사업 관련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결과(2020.7.13.) 이전에는 대규모 사업비 증액을 예상할 수 없음에 따라 2021년 내 착공 및 공사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검토 결과 통보 이후에는 이를 반영한 총사업비 및 2021년 정부출연금 조정을 시행하여야 하나, 계속사업의 한도 내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8월 차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객주차장 보강사업 진행내역(2020~2022.5) 및 이후 계획]

일자	일정
2019.10~2020.10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2020.2~3	<b>조달청</b> 의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0.5~7	<b>조달청</b> 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시 사업비 변경 결정됨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지하 주차장 1층 공사를 추가하게 됨 (총사업비 27,089백만원 → 40,978백만원)
2020.8~9	사업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b>내부</b> 협의
2020.10	사업계획 변경 관련 <b>교육부</b> 협의
2020.12	사업계획 변경 관련 <b>교육부</b> 및 <b>기획재정부</b> 협의
2021.1	<b>교육부</b> 총사업비 변경 심의 완료
2021.2	<b>기획재정부</b> 총사업비 변경 심의 완료
2021.2~12	실시설계
2021.12	<b>조달청</b> 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2.3	교육부에 실시설계 결과보고
2022.5	교육부 총사업비 조정 요청 후 대기 중
2022.6(예정)	총사업비 조정 - 교육부 심의
2022.7(예정)	총사업비 조정 - 기획재정부 최종 확정
2022년 하반기(예정)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선급집행

주: 동 자료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다음으로,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의 2019~2021년 예산 편성 산출근거 및 집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앞선 사업과 동일하게 2020년에 공사 착공 계획과는 달리 설계 절차가 2021년까지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0년 16.5%, 2021년 8.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2019~2021)]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산출근거	본예산	산출근거	본예산	산출근거	본예산
본예산 (A)	설계비	358	공사비	1,672	공사비	2,151
	감리비	9	감리비	135	감리비	175
	부대비	3	부대비	4	부대비	4
	소계	370	<b>소계</b>	1,811	<b>소계</b>	2,330
전년도 이월액(B)	-	0	-	0	-	1,513
집행액(C)	기본설계비 계약금	370	기본설계비 중도금 및 잔금	298	실시설계비	325
집행률 C/(A+B)	100.0		16.5		8.5	

주: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로 이루어짐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동 사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정원 증원으로 인한 면적 증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사업계획 변경]

구분	상세내역				
	[정원 증원]				
2019년 정원 증원에 따른 기숙사 및 교수실 면적 추가 반영	구분	당초	변경요청	증감	비고
	교수실	54석	87석	33석	2019년 교수직 정원 증원(52명)
	기숙사	348명	410명	62명	2019년 간호직 정원 증원(41명) 신규전공의 증원(21명)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증가: 8개월 (24개월 → 32개월)</li> <li>사업기간 증가: 1년('19년 ~ '22년 → '19년 ~ '23년)</li> </ul>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2020년 1월 성남시로부터 기숙사 허가 불허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 컨설팅 감사 증인 상황이었으며, 2020년부터 15억 1,300

백만원(공사비 등)이 이월되어 왔음에도 2021년 예산안에 공사비 2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다.

[(분당)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진행내역(2020~2022.5) 및 이후 계획]

일자	일정
2019.4~2020.1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
2020.1~5	성남시 기숙사 허가 불허의견 접수 및 관련 컨설팅 감사
2020.3~6	<b>교육부</b> 총사업비 변경 심의 완료
2020.6~8	<b>기획재정부</b> 총사업비 변경 심의 완료
2021.4~2021.6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조정(31,613백만원→32,330백만원)
2021.10	실시설계 결과보고 및 총사업비 조정(32,330백만원→31,998백만원)
2021.10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 요청
2021.12	조달청의 예산부족 통보
2022.2	교육부와 총사업비 협의조정 진행
2022.5	총사업비 조정 완료(31,998백만원→36,689백만원)
2022.5	시공업체 입찰 진행 중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온 고객주차장 보강사업과 분당서울대학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은 2022년 현재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사업의 실집행률이 60%미만임에 따라 지연사업으로 지정하고 병원의 2022년 신규 사업 예산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동 사업의 2022년 및 2023년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부 및 서울대학교병원은 향후 예산안 편성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출연금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협의 후 이월금액부터 순차 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부출연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4-2.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실적개선 방안 모색 필요

### 가. 현 황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직원의 휴양공간 제공 등을 위해 경상북도 문경에 인재원을 개원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총 사업비는 269억원이며, 이 중 32%인 86억원의 출연금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았고, 자체자금 183억원(68%)을 활용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건립사업 개요]

구분	상세내역
사업기간	2010~2014년
사업규모	연면적 13,223㎡ (지상 7층, 지하 1층), 객실수 101개
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1길 77
사업내용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교육 인프라 구축
총사업비	269억원 (구)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금 86억원(32%), 자체자금 183억원(68%)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인재원 관련 건물, 토지, 구축물 등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2021년 말 기준 232억 7,200만원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관련 재무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명	취득가액(A)	감가상각누계액(B)	장부가액(A-B)
토지	3,168	0	3,168
건물	24,149	4,304	19,845
건물부속설비	156	35	121
기계장치	307	189	118
전산장비	7	0	7
일반비품	31	18	13
합계	27,818	4,546	23,272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 나. 분석의견

### 서울대학교병원은 인재원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연도별 강의실 및 객실 이용률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재원 설립 직후(2015~2016년) 내부교육, 외부 임대 및 가족휴양 목적으로 이용한 강의실 및 객실의 전체 가동률은 20%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며, 2018년 강의실 가동률이 30%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25.8%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집합 및 숙식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강의실 가동률 8.1%, 객실 가동률 7.6%, 2021년 강의실 가동률 0%, 객실 가동률 0.8%로 감소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연도별 강의실 및 객실 이용률 현황(2015~2021)]

(단위: 일, 명, %)

연도	시설	교육 가능 일수	교육 일수	수용 가능 인원 (A)	이용인원				내부 교육 가동률 (B/A)	전체 가동률 (C/A)
					내부 교육 (B)	외부 임대	가족 휴양	소계 (C)		
2015	강의실	249	92	56,772	8,186	3,424	0	11,610	14.4	<b>20.5</b>
	객실			46,460	4,560	3,317	866	8,743	9.8	<b>18.8</b>
2016	강의실	247	105	56,316	7,746	3,455	0	11,201	13.8	<b>19.9</b>
	객실			45,310	5,014	1,769	622	7,405	11.1	<b>16.3</b>
2017	강의실	245	159	55,860	6,892	7,313	0	14,205	12.3	<b>25.4</b>
	객실			45,080	5,117	5,692	866	11,675	11.6	<b>25.9</b>
2018	강의실	246	154	56,088	7,521	9,389	0	16,910	13.4	<b>30.1</b>
	객실			44,850	5,288	5,860	809	11,957	11.8	<b>26.6</b>
2019	강의실	248	150	56,544	8,231	6,400	0	14,631	14.5	<b>25.8</b>
	객실			45,540	7,411	4,079	747	12,237	16.2	<b>26.8</b>
2020	강의실	40	11	9,120	215	528	0	743	2.3	<b>8.1</b>
	객실			7,360	215	275	68	558	2.9	<b>7.6</b>
2021	강의실	0	0	0	0	0	0	0	0.0	<b>0.0</b>
	객실			45,540	0	0	384	384	0.0	<b>0.8</b>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코로나19의 영향 이전에도, 설립(201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5~2021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이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연례적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어려워진 2020년에는 인력이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유형자산을 줄이는 등 고정비용 삭감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인해 △13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연도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5~2021)]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매출(A)	462	543	637	718	695	44	54	3,153
인재원 관련비용(B)	<b>1,806</b>	<b>1,825</b>	<b>1,913</b>	<b>1,785</b>	<b>2,071</b>	<b>1,350</b>	<b>899</b>	<b>11,649</b>
고정비	1,406	1,460	1,504	1,611	1,790	1,150	722	9,707
감가상각비	<b>821</b>	<b>821</b>	<b>821</b>	<b>889</b>	<b>1,075</b>	<b>686</b>	<b>683</b>	<b>5,796</b>
인건비	<b>560</b>	<b>626</b>	<b>672</b>	<b>714</b>	<b>772</b>	<b>446</b>	<b>14</b>	<b>3,804</b>
기타고정비	25	13	11	8	7	18	25	107
변동비	400	365	409	174	282	200	177	1,942
영업손익(A-B)	△1,344	△1,282	△1,276	△1,067	△1,376	△1,306	△845	△8,496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2015~2021년 간 서울대학교병원 현원 대비 인재원 이용률을 다음과 같이 산출해보았는데 휴양목적용 객실 이용률은 평균 10%를 넘지 않고 있다.<sup>3)</sup>

향후 인재원 운영 시 객실의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판매단가 결정 및 유형자산 투자 계획 시 영업손익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서울대학교병원은 특정 기간(여름, 겨울)에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2021년 기준 4개 호텔)을 별도로 계약하고 숙박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현원 대비 이용인원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원(A)	7,907	8,572	9,037	9,487	10,939	12,470	12,890
휴양목적용 객실 이용인원(B)	866	622	866	809	747	68	0
이용률(A/B)	(11.0)	(7.9)	(11.0)	(10.2)	(9.4)	(0.9)	(0.0)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로 두 달간(2020.3~4) 일시 운영된 바 있다. 2022년 2~5월에는 대구시와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으며, 동 수익을 포함한 2022년 1~4월 영업손실은 3천 2백만원 발생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손익(2022)]

(단위: 백만원)

구분	2022.1~4
매출(A)	281
인재원 관련비용(B)	313
고정비	237
변동비	76
손익(A-B)	△32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2015~2019년 동안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서 △1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2022년 6월부터 단체교육 및 합숙교육 관련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용률이 회복될 경우에도 영업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인재원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인재원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손익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연구개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3조제1항), 직접비<sup>1)</sup>와 간접비<sup>2)</sup>로 나누어 구성하되,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제2항).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2는 간접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인력지원비’ 항목에서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연구개발에서의 간접비로 재원이 마련되는 금전으로 우수 성과를 달성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2개 출연연구기관은 총 5,811명에 219억 9,545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분석 기관의 약칭]

약칭	기관명	약칭	기관명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연	한국식품연구원
GTC	녹색기술센터	김치연	세계김치연구소
기초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자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생명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계연	한국기계연구원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생기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	한국전기연구원
국보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화학연	한국화학연구원
건설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연	안전성평가연구소
철도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	한국재료연구원
표준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핵융합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주. 통상 사용되는 약칭을 채택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아님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 1)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합계		기관명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KIST	356	1,607,729	식품연	201	145,403
GTC	20	21,550	김치연	39	54,656
기초연	85	197,122	지자연	249	631,375
생명연	281	676,000	기계연	189	888,000
KISTI	169	677,532	항우연	1,048	3,200,000
생기연	176	1,015,156	에너지연	258	1,057,213
ETRI	364	4,473,929	전기연	299	1,537,126
국보연	116	400,000	화학연	198	1,618,515
건설연	832	950,000	안전연	330	932,447
철도연	273	275,990	재료연	77	499,759
표준연	159	818,000	핵융합연	92	317,954

주. 생기연, ETRI의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금액 산정 시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연구지원 인력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

## 나. 분석의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각 연구기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하위등급자에게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수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초과달성분이나 비용절감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을 재원으로 하는 '능률성과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능률성과급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소관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평가 및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문연, 한의학연, 원자력연의 3개 기관을 제외한 22개 출연연구기관이 총 5,811명에 219억 9545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ETRI(약 44억 7,400만원), 항우연(32억원) 순이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에서 직접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도 참여연구자나 연구지원인력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sup>. 그런데 현행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최하위등급에 대하여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2021년 각 기관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핵융합연의 경우 총 5개 등급(S~D)의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최하위 등급인 8명에 대하여 총 1,4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생명연의 경우 총 6개 등급(S~E)으로 운영하면서 최하위 등급자(E등급)에 대하여도 70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김치연의 경우 총 5개 등급의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최하위 등급자에 대하여 48만원을 지급하였다<sup>4)</sup>.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2021.2., 108·123면.

4) 이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0년 11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권고하였고,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최하등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25개 소관 출연연구기관 중 5개 기관은 노사협의 문제로 현재 개선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KIST	12	89	7	113	619	5	156	608	4	74	292	4	1	-	-
GTC	-	-	-	2	3	1	16	19	1	2	0.25	0.13	-	-	-
기초연	5	15	3	22	61	3	21	47	2	33	74	2	4	-	-
KISTI	8	14	6	2	119	5	119	421	4	6	24	4	4	-	-
ETRI	3	563	8	179	2917	16	153	993	6	1	-	-	-	-	-
국보연	6	112	2	11	7	7	3	174	5	10	40	4	1	-	-
건설연	7	124	2	146	227	2	429	474	1	136	125	1	4	-	-
철도연	8	19	1	61	90	1	136	115	1	51	52	1	7	-	-
표준연	12	113	9	16	142	9	39	323	8	80	240	3	12	-	-
식품연	9	12	1	21	24	1	14	102	1	2	7	0	9	-	-
김치연	2	3	2	7	11	2	2	35	1	5	6	1	1	-	-
지자연	6	42	7	32	154	5	7	259	3	131	177	1	4	-	-
기계연	34	206	6	19	108	6	131	554	4	4	20	5	1	-	-
항우연	47	228	5	714	2272	3	246	700	3	3	-	-	3	-	-
에너지연	13	63	5	69	293	4	121	490	4	4	21	5	12	-	-
전기연	33	189	6	59	454	8	177	748	4	30	146	5	-	-	-
화학연	2	238	11	33	293	9	139	1,077	8	3	11	4	1	-	-
안전연	104	371	4	132	376	3	89	185	2	5	-	-	-	-	-
재료연	4	5	6	22	164	7	46	281	6	5	30	6	-	-	-
핵융합연	5	8	5	18	7	4	3	110	3	17	4	2	8	14	2

기관명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인원	금액	1인당
생명연	3	12	4	69	161	2	113	213	2	86	266	3	9	23	3	1	1	1	-	-	-
생기연	1	8	8	11	71	6	68	410	6	65	365	6	26	141	5	4	20	5	1	-	-

주1. 생명연과 생기연은 평가등급이 각각 6등급, 7등급이므로 별도의 표로 제시하였으며, 그 외 기관은 모두 5등급 체계를 운영 중임

주2. '1인당'은 1인당 성과급 지급금액을 의미함

주3. 표의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 정확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김치연의 경우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D등급에 48만원을 지급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

둘째, 등급체계 중 최하위등급에 대하여는 거의 등급이 배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최하위등급에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전수조사 결과, 총 5개 등급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 22개 기관 중 20개이며, 총 5,354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최하위등급을 받은 인원은 149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하고, S등급은 9.7%, A등급과 B등급은 합하여 75.2%이다.

[2021년 등급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분포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S	A	B	C	D
인원	521	1,698	2,326	660	149
지급금액	2,604	8,475	7,715	1,497	14
비중	9.7	31.7	43.5	12.3	2.8

주1. 등급체계가 5등급인 기관만 포함

2. 비중은 전체 성과급 수령 인원 대비 해당 등급에서의 인원 수를 의미함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KIST의 경우 5개 등급(S~D)을 운영하면서 S등급의 경우 12명에 8,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최하위등급인 D등급에는 1명만 배정하였고, C등급에는 74명을 배정하여 총 2억 9,200만원을 지급하였다. GTC의 경우 5개 등급을 운영하면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에는 아무도 배정하지 않았고, C등급에만 2명을 정하여 25만원을 지급하였다. ETRI는 D등급에 0명, C등급에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원 S, A, B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기연, 안전연, 재료연 역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 아무도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는 구별되는 ‘능률성과급’의 경우,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비율이 전체 대상 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이러한 지침이 없어 최저 등급에 0명을 배정하거나 상위 등급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 기관별로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이나 등급별 분포,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미지급 등과 관련된 규정은 기관에 따라 없거나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규정 현황]

기관명	규정	차등지급의 원칙 규정	최고/최저 등급별 인원 비율 규정	최저등급자 미지급 규정
KIST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GTC	KIST 규정 준용	있음	없음	있음
기초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있음
생명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있음	있음
KISTI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있음	없음	있음
생기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요령」	있음	없음	없음
ETRI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있음
국보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있음
건설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철도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표준연	「장려금지급요령」	있음	없음	있음
식품연	「수탁연구사업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지침」	있음	없음	있음
김치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없음
지자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있음
기계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항우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기준」	있음	없음	있음
에너지연	「간접비 편성 및 관리 지침」	있음	없음	있음
전기연	「연구수당 등 지급 기준」	있음	없음	있음
화학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천문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한의학연	「인센티브 지급규정」	있음	없음	없음
안전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있음
원자력연	없음	-	-	-
재료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지침」	있음	없음	있음
핵융합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기준」	있음	없음	없음

주1. 해당 조항의 유무는 관련 규정(지침)에 명시된 경우만을 표기하였으며, “원장의 방침에 따른다” 또는 “매년 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된 경우는 정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외 하였음.

주2. 기관에 따라 연구인력과 지원인력 모두에 대해 성과평가를 적용하는 기관도 있고, 지원인력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적용하는 기관도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자료 및 각 기관별 규정(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예를 들어 KIST의 경우 “지급대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평가결과 최저등급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의 비율을 최소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관에서 연도별 지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있다. GTC의 경우 KIST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다. 이처럼 차등지급의 원칙과 최저등급자의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최고 또는 최저 등급의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기관이 많으며, 유사한 사례로 기초연, KISTI, 건설연, 철도연<sup>5)</sup>, ETRI<sup>6)</sup>, 표준연, 생기연, 항우연, 에너지연, 전기연, 화학연을 들 수 있다.

생기연의 경우 차등지급의 원칙은 명시하고 있으나 등급별 인원 비율이나 최저 등급자에 대한 미지급의 내용은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에서는 매년 세 부적인 지급기준 및 방법을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등급별 인원 비율과 최저등급자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김치연, 한의학연, 핵융합연이 있다.

생명연의 경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대상은 해당연도에 재직한 우수 연구인력 및 우수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평가 결과가 최하 등급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고/최저 등급에 따른 인원 비율도 「성과평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sup>7)</sup>.

기계연과 재료연, 전기연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하여 상세하게 관련 지침을 정하고 있다. 세 기관은 총 지급규모<sup>8)</sup>, 등급의 수, 등급 간 지급율과 차등폭<sup>9)</sup>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등급에 따른 성과평가는 연구 지원인력에 대해서만

5) 철도연은 성과장려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3등급~5등급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6) ETRI는 차등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최저등급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인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등급별 인원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7) (생명연 성과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급	S	A	B	C	D	E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차등폭	+30%	+20%	+5%	0%	-5%	-15%

주. ‘S’등급은 ‘A’등급 인원비율에 포함하여 배정함

8) 기계연은 우수 연구인력의 지급규모는 연구성과와 관련있는 연구부문 개인 및 단체(팀) 포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우수 지원인력의 경우 개인은 아래 산식에 따라, 단체는 포상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하고, 연구인력은 연구원 포상기준에 따르도록 하거나 별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별 규정을 확인하면, “최저등급자에게는 미지급”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구원에 기여한 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할 경우 두 규정 간의 효력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최저등급자에게는 미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즉, 최저등급자에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규정 간의 효력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식품연을 들 수 있는데, 식품연은 우수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원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2조제2항)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위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등급 구간 평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저등급자에 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사하게 에너지연 역시 “기관운영계획 달성을 위하여 직무수행성과 및 조직성과에 기여한 자”(제7조제3항제2호) 등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3항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과과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평가를 거쳐 차등지급하여야 한다는 대전제는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의 적용 대상은 연구인력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최저등급자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는 규정은 많으나 별도의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평가 등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지급 대상·규모·방식을 명시하는 기관과 전적으로 위임하는 기관이 있는 등 기관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 규정이 상이하게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text{총 지급규모} = [(\text{기본사업 연구수당 정규직 연구인력 1인당 평균지급액} \times \text{정규직 지원인력 수}) + (\text{기본사업 연구수당 비정규직 연구인력 1인당 평균지급액} \times \text{비정규직 지원인력 수})]$$

9) 여기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는 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등급간 20%p씩 차등을 둔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지급되는 재원 중 간접비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취지상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자율성 역시 이러한 제도적 취지의 범위 내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등급자에 대한 미지급, 합리적인 성과 등급 운영 및 성과 부여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sup>1)</sup> 사업이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대형기초연구시설 구축, 기능지구 지원 및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등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 현액은 본예산 1,824억 7,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5억 8,400만원을 합한 2,220억 6,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523억 9,700만원이며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602억 1,400만원, 불용액은 94억 4,9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182,477	182,477	39,584	-	222,061	152,398	60,214	9,44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21년도 결산상 동 세부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기능지구 지원’,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과학벨트 기획·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이하 “RAON”이라 한다)의 건설·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중 중이온가속기 관련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이고, 총 사업비는 1조 5,183억원이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일반회계 1640-300

[2021회계연도 RAON 관련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182,477	182,477	39,584	-	222,061	152,398	60,214	9,449
중이온 가속기 장치 구축	79,662	79,662	-	-	79,662	79,662	-	-

주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주2.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된 내역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2억 600만 원임

주3. 해당 결산 현황은 부처 결산 기준으로, 실제 사업시행주체 기준으로는 이월 및 예산현액 등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중이온 가속기 장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연내 빔 인출 목표 외에도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수행 및 고에너지 구간 2단계 구축 사업 준비 등 중·장기 목표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상의 위험관리 및 합리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 계획 확정 전에 체계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RAON 사업은 200MeV/u 빔에너지, 400kW 빔을 출력 가능한 대형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ISOL과 IF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희귀동위원소 가속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sup>2)</sup>.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지 952,066㎡(약 29만평), 연면적 116,298㎡(약 3.5만평)에 2011년부터 가속기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해 오고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RAON의 시설

2) 2011년 2월에 완성된 초전도 중이온가속기의 개념설계보고서에서는 순수 한국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 온라인 동위원소분리 (Isotope Separation On-Line: ISOL)와 비행파쇄 분리 (In-flight Fragmentation: IF)방식을 결합한 독창적인 희귀동위원소 발생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국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험장치의 독창성과 설계를 검증받았다고 한다. (김재홍·손형주·조용범, “초전도 중이온가속기 진공시스템의 최신 기술동향”, 한국진공학회, 진공이야기 2017-3, 2017, 4면.)

건설비 및 장치구축비가 각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 내역사업의 경우 21년도 본예산은 796억 6,200만원이나, 20년도에 이월된 금액 921억 3,900만원이 있으므로 동 내역사업의 21년도 예산 현액은 1,718억원이며, 22년 6월말 기준으로 913억원이 실집행된 상태이다.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RAON은 중이온 빔을 생성하여 가속하는 주요 장치인 가속장치, 가속장치 구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기반 장치, 가속된 중이온 빔을 표적에 충돌시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RI 생성장치, 희귀동위원소를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치별 기능 및 주요 구성]

핵심장치	기능	주요 구성
가속장치	중이온 빔 생성 및 가속	입사기, 초전도선형가속기(SCL2,3) - 입사기: ECR, LEBT, RFQ, MEBT - SCL2: SSR1 23개, SSR2 25개(확장구간 2개 포함) - SCL3: QWR 22개, HWR 34개(HWRA 15개 [확장구간 2개 포함], HWR2 19개)
기반장치	가속장치 구동의 필수 기반시설	제어시스템, 극저온시스템, 유틸리티 등
RI 생성장치	가속된 중이온 빔을 표적에 충돌시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 및 분리	ISOL시스템, IF시스템, 원형가속기(Cyclotron) - Cyclotron: 이온원, 본체, 빔 전송라인, 빔 제어 시스템 - ISOL: 표적 및 이온시스템, 빔 분리 시스템, 제어 시스템 - IF: 표적시스템, 빔 덤프시스템, 입자판별검출기, 빔분리시스템
실험장치	희귀동위원소 추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KOBRA, LAMPS, MMS, NDPS 등 7개 실험장치/시설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사업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019.6., 43면.

그런데 RAON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계획에 비하여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순연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초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11~2017년, 장치구축비는 4,604억원이었으나, 2013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2011~2019년), 2014년에는 국제비즈니스 벨트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 사업비는 1조 4,445억원(장비구축비 4,602억원, 건설비 6,243억원, 부지매입비 3,6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9년 RAON 구축에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3차 변경하여 사업기간은 2011~2021년으로 연장되었고,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장치구축비도 426억원 증액된 5,028억원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RAON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예정했던 2021년까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5월 기본계획의 4차 변경이 이루어졌다.

2021년의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방향의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었다. 21년 5월

발표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세부이행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 목표였던 RAON의 구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일단 기술이 확보된 저에너지 구간을 중심으로 장치를 우선 구축하고, 빔인출과 시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고에너지 가속구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2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선행 R&D’라는 프로세스를 두어 고에너지가속장치의 초도양산품 가공·조립·후처리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선행 R&D 이후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2단계에 진입하여 본제품 양산을 시작하고 SCL2<sup>3)</sup> 초전도가속모듈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SCL2 장치 구축 목표와 선행 R&D의 관계]

장치 구분	목 표		
	1단계 (~'21)	선행 R&D ('22~'23)	2단계 (4년 소요)
SCL2	가속관/모듈: 시제품 완료('21.11) [본제품 타입결정: SCL21('21.8) SCL22('21.12)]	초도양산품 완료 (~'23.12)	본제품 구축
	SCL2용 RF시스템(LLRF, SSPA 각 6기) 일부 제작 완료('22.12)	[HWR 채택 시 '24.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세부이행계획」, 2021.5.

이와 같은 사업변경은 고에너지 구간의 가속장치까지는 한번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 사업의 우선 목표가 1단계 사업의 완성(저에너지 구간 구축 및 빔인출)로 제한되고 궁극적인 RAON의 완성은 2단계 사업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 RAON 설계 당시 가벼운 양성자를 가속하여 무거운 우라늄 등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다량의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ISOL 방식과 무거운 중이온을 반대로 가벼운 표적에 충돌시켜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IF 방식을 달성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를 지향하

3) SCL이란 초전도선행가속기(Superconducting Linac)을 말하며, SCL3는 저에너지 가속구간, SCL2는 고에너지 가속구간에 속한다. SCL2는 고에너지 가속장치로서 저에너지 가속장치(SCL3)에서 가속된 빔을 받아서 고에너지로 가속시킨다. SCL2는 초전도가속관, 커플러, 튜너, 저온용기, 집속장치, RF, 진공, 빔진단 등의 구성장치로 구성되며 RAON은 SSR(Single Spoke Resonator) 가속관 타입을 적용하여 개발 중에 있다.

였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 구간의 완공이 필수이다.

[RAON 구축 관련 기본계획 변경 경과]

구 분		기본계획 (‘12.1)	1차 변경 (‘13.9)	2차 변경 (‘15.4)	3차 변경 (‘19.5)	4차 변경 (‘21.5)
주 요 내 용	사업 범위	장치구축 사업	장치구축 사업	장치구축 사업 및 시설건설 사업	장치구축사업 및 시설건설사업 <sup>1)</sup>	장치구축사업 및 시설건설사업 <sup>2)</sup>
	사업 일정	’11~ ’17년	’11~ ’19년	’11~ ’21년	’11~’21년	1단계: ’11~’21년 (일부장치 22년) 선행R&D: ’22~’23년 2단계: 착수 시점 으로부터 4년
	사업 예산	4,604 억원	4,604 억원 <sup>3)</sup>	14,445 억원	14,443억원 (시설건설 E/S 등 반영시 14,875억원) (*장치구축 5,028억원, 시설건설 6,276억원, 부지매입 3,571억원)	1단계: 15,183억원 선행R&D: 86억원 2단계: 1,327억원

주1. SCL1 제외 등 시설건설 및 장치구축 일부 조정

주2. 장치구축 단계구분-1단계, 선행R&D, 2단계

주3. 1차변경 시점까지의 4,604억원에는 건설비와 부지매입비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2차 변경 시점의 1조 4,445억원에는 장치구축비 4,602억원, 시설건설 6,243억원, 부지매입 3,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4차 변경 시점의 1조 5,183억원에는 장치구축비 5,228억원, 시설건설비 6,384억원, 부지매입비 3,57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 사업비 1,327억원은 적정성 재검토 추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한편, 21년의 대규모 사업변경 이후 빔 시운전관련 주요장치(SCL3, 극저온플랜트)의 기술적·외부환경 요인으로 구축일정이 지연되었다<sup>4)</sup>. 그에 따라 당초 빔 시운전은 21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추진일정이 변경되어 최초 빔인출이 22년 10월, 저에너지 구간(SCL3)에 대한 빔 시운전은 23년 3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4) 저에너지가속장치는 ’21.12월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극저온플랜트는 시운전 및 현장인계인수 검사 추진 중에 있다.

[RAON 1단계 구축사업 장치별 완료 일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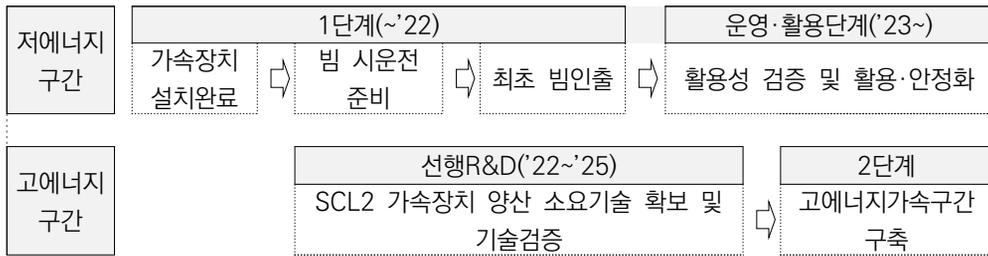
구분	장치	구축목표	1단계 완료일정	설치 현황	비 고
가속장치	입사기 [ECR 이온원]	28GHz 성능검증	'21.12	완료	◦ 시운전 완료
		14.5GHz 설치완료	'20.10	완료	◦ 시운전 완료
	SCL3	설치완료/ 빔인출	설치완료 '21.12 최초 빔인출 '22.10	완료	◦ 빔시운전 준비 중
기반장치	극저온 시스템	13kW 구축/ 시운전완료	플랜트 시운전 '22.5 HDS 시운전 '22.12	완료	◦ 시운전 진행 중
		4.2kW 구축/ 시운전완료	플랜트 시운전 '22.5 HDS 시운전 '22.9	완료	◦ 시운전 진행 중
	중앙 제어	구축/ 시운전완료	'21.9	완료	◦ 빔시운전 준비 중
RI 생성장치	Cyclotron	구축/ 시운전완료	'22.7	완료	◦ 시운전 진행 중
	ISOL	안정빔 활용 시운전완료	'21.12	완료	◦ 시운전 진행 중
	IF	구축/ 시운전완료	설치완료 '22.12	진행 중	◦ 코로나로 선재 등 재 료입고 지연, '22년 완료 예정 <sup>1)</sup>
실험장치	KoBRA	구축/ 시운전완료	'21.11	완료	◦ 시운전 완료
	NDPS	구축/ 시운전완료	'22.12	진행 중	-
	MMS	구축/ 시운전완료	'21.12	완료	◦ 시운전 완료
	CLS	구축/ 시운전완료	'22.12	진행 중	-
	LAMPS	구축/ 시운전완료	'22.7	진행 중	-
	μSR	구축/ 시운전완료	'22.12	진행 중	-
	BIS	구축/ 시운전완료	'22.3	완료	-

주1) IF의 경우 장치 시운전은 '23.12 완료예정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이와 같이 RAON 구축 사업은 대규모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투입과 다수 업체와의 협업, R&D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단계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선행 R&D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86억원, 사업기간 22~23년, 2022년 예산안은 4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현재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검토 결과 1단계 사업에서의 빔 인출에 인력이 분산되고 있는 점, 기존 국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장치에 핵심 공정설비(후처리, 조립)를 사업단 내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총 4년(22~25년)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비도 증액(126억원)하려는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22년도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추진 방향 변경(안)]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선행 R&D의 본질적인 목적이 기존 RAON 구축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과 사업기간의 변경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구상과 계획은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로 선행 R&D 완료일이 미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의 착수 시점도 함께 연기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향후 적정성 검토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사업에서 사업기간 또는 예산액의 변경, 설정 목표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행 R&D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 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정보공개와 의사소통 채널의 활용을 통하여 여러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 관리를 향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실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예산액, 인력을 확보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sup>1)</sup>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관운영비 및 주요사업비 등 연구운영비를 지원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39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39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변동은 없으며, 예산현액 중 기관운영비는 407억 8,400만원, 시설사업비는 106억 8,600만원, 주요사업비는 524억 7,3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연구운영 비 지원	103,943	103,943	-	-	103,943	103,914	-	2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품사' 사업은 신규 3D/4D 물리탐사선의 정박을 위하여 기존 탐해 2호 부두(포항 구항)에 계류장을 확장하고 항로 선회장을 준설하려는 사업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교부받은 출연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41-402

금 중 시설비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은 22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1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4,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실집행률 49.7%), 2022년 예산은 69억 6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2,274	2,274	-	-	2,274	1,130	1,144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사업은 해상 교통 혼잡, 선박 교통상 안전성 문제, 준설토 처리 등 예상되는 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물리탐사선은 심해 및 한계 유가스전 등 해저 자원 조사 및 해양 단층 탐사 등 해양 연구에 활용되는 탐사선으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3D 탐사가 가능한 석유물리탐사선을 3척 이상 보유하여 해저 광물 탐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탐사선은 ‘탐해 2호’ 단 1척에 불과하다. 탐해 2호의 경우 2,085톤 규모로 3D 탐사가 가능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제한적이며 1996년 건조되어 설비가 노후화된 측면이 있다<sup>2)</sup>.

이에 탐해 2호를 대체하고 첨단 인프라를 탑재한 물리탐사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른바 ‘탐해 3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3D/4D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7.10., 76면.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해양탐사역량 제고를 위한 3D 물리탐사선 건조를 검토하였고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신규 물리탐사선 건조와 관련한 사업은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물리탐사선의 건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sup>3)</sup>’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총 사업비는 국비 1,810억원이다. 한편 신규 물리탐사선의 운용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교부 받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출연금 중 시설사업비로 ‘탐사선 운영’(21년 예산 18억 9,600만원)과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 공사’(21년 예산 22억 7,400만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물리탐사선 관련 사업 현황]

구분	물리탐사선 건조	물리탐사선 계류장
사업명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신규 물리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사업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사업비	1,810억원	178억원
사업기간	’18~’24년	’21~’24년
21년 예산	447억 5,500만원	22억 7,400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 공사’ 사업은 새로운 물리탐사선의 정박을 위하여 기존의 ‘탐해 2호’ 부두인 포항 구항의 계류장을 확장하고, 항로 선회장을 준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탐해 2호는 2천톤 수준의 탐사선이었으나 신규 물리탐사선은 6천톤 규모로 건조될 것이므로, 기존 탐사선 부두에는 신규 물리탐사선의 접안이 어려워 계류장의 확장 및 준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804-304

[물리탐사선 간 비교]

구분	탐해2호	3D/4D 신규물리탐사선
톤수(GRT)	2,085톤	6,497톤
선체 길이	64.4m	92.0m
선폭	15.0m	21.0m
만재흘수(선저센서 포함)	5.5m	7.3m
건조비용	270억원	1,868억원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및 준설 공사’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사측 수역 일원(포항 구항)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총 사업비는 출연금 178억원이다.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22억 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다소 길게 소요되어 초기 사업 계획에 비하여 5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21년 11억 4,4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었다<sup>4)</sup>.

4) 이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사발주시 소요되는 조달청 검토기간 축소와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이월금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정했던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계획 및 변경 계획안 간 비교]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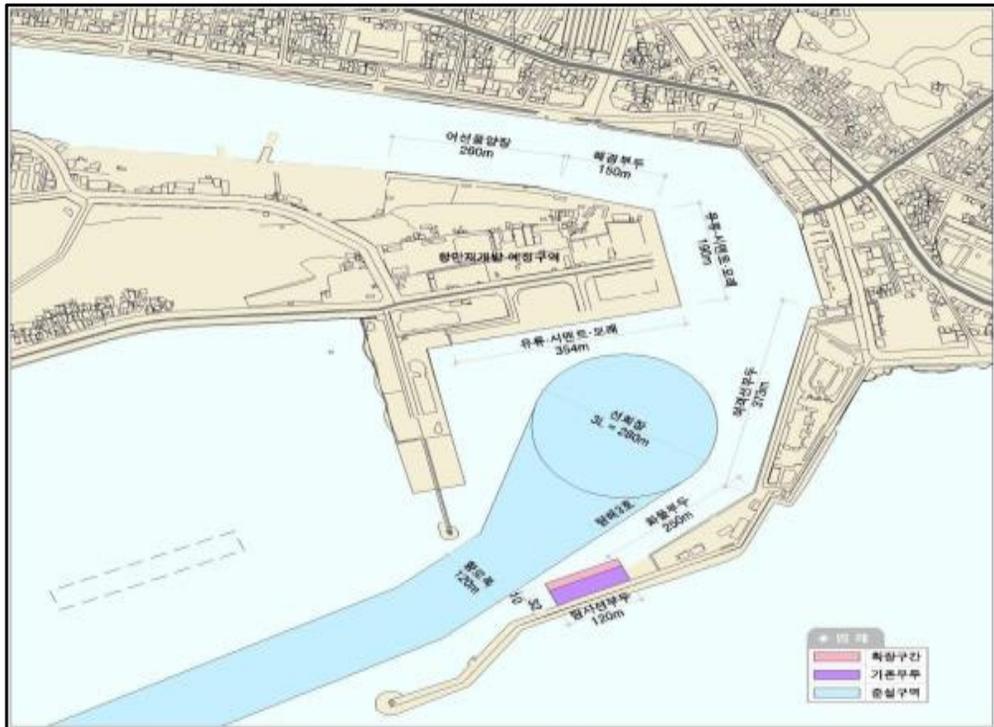
연 차 (분기)	기존계획		변경계획	
	계 획	예산	계 획	예산
2021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2,274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2,274
1분기	- 맞춤형 서비스 신청 및 실시(시작)	-	맞춤형 서비스 신청	-
2분기	- 용역발주 및 계약	-	- 맞춤형 서비스 실시(시작)	-
3분기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작)	-	용역발주 및 계약	-
4분기	- 기본 및 실시설계	2,27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작)	1,131
2022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완료), 시공(시작)	5,763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완료), 시공(시작)	6,907 (1,144)
1분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	-
2분기	- 허가 및 공사발주	76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완료)	500
3분기	-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시작)	-	허가 및 공사발주	300
4분기	-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5,000	-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시작)	6,107
2023년	◦시공	7,746	◦시공	7,746
1분기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
2분기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2,746	준설공사, 접안시설 공사	-
3분기	준설/접안시설 공사, 상부 시설공사	-	준설/접안시설 공사, 상부 시설공사	2,746
4분기	- 준설/접안시설 공사, 상부 시설공사	5,000	- 준설/접안시설 공사, 상부 시설공사	5,000
2024년	◦시공(완료), 준공('23.3월)	2,017	◦시공(완료), 준공('23.5월)	2,017
1분기	접안시설 공사, 상부시설공사(완료)	2,017	접안시설 공사, 상부시설공사	-
2분기			접안시설 공사, 상부시설공사(완료)	2,017

주. ( ) 안은 이월금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의 이월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관계자 간 협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수립 등 시급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동 사업의 경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는 포항 구항에서 선박의 계류장을 확장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동 사업의 위치가 포항 구항을 이용하는 선박(여객선, 화물선, 해경함정 등 기타선박)의 선회장 및 선박 입·출구에 해당하여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간) 도로 건설공사가 있어 2025년까지 송도↔청사(사업위치 수역) 간 해상교량 공사에 따른 해상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탐사선 계류장 사업 추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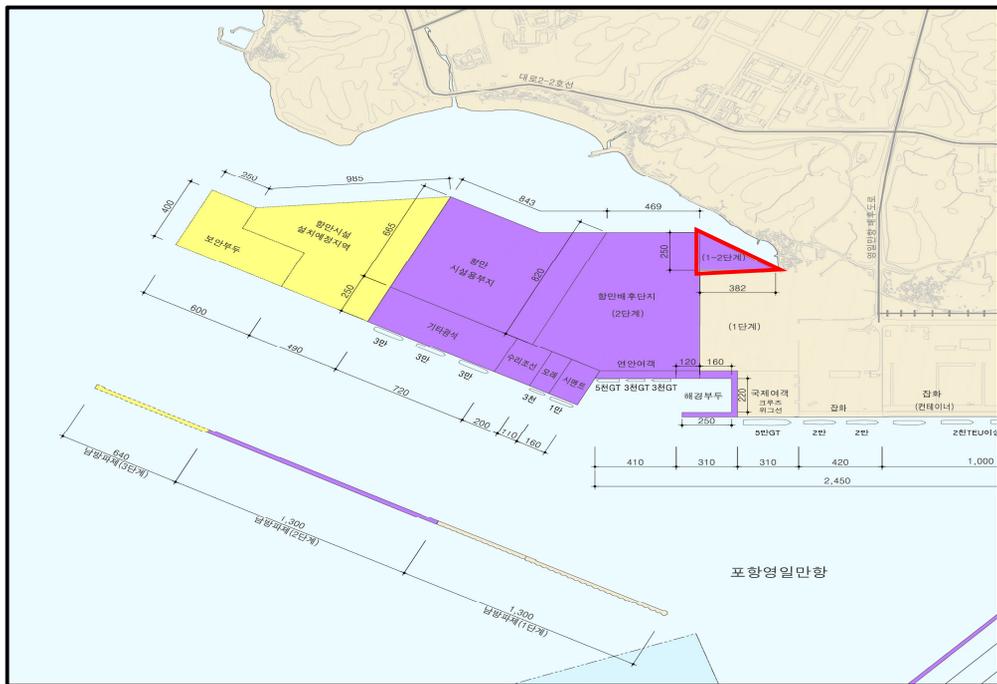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사업 계획 당시 계류장 확장 및 준설 과정에서 약 15만톤 가량의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준설토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준설토의 처리에 대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구두로 협의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설하고 있는 영일만 신항에 준설토를 전량 투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일만의 투기장 규모가 예정보다 축소되면서<sup>5)</sup>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5만톤 규모의 준설토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sup>6)</sup>, 이에 동 사업에서의 준설토의 투기 계획에서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일만 신항 준설토 투기장 위치도]



자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5)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남측호안(1-2단계) 축조공사를 수행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설되는 준설토 투기장 규모는 약 189,000㎡(단면적(32,699㎡) × 매립가능 높이(5.788m) ≒ 189,000㎡)이다.
- 6) 5만톤의 준설토 수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포항지방해양수산청 간 공문으로 처리된 내용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2년 4월 7일 준설토 15만톤의 수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22일 5만톤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답신을 하였던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먼저 계류장 위치에 대해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시하는 교통 혼잡 등의 사유에 관해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래 위치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준설토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없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본래 153,000m<sup>3</sup>로 예상하던 준설량을 101,000m<sup>3</sup>로 축소하고, 이 중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인하는 50,000m<sup>3</sup> 규모는 영일만 신항에, 나머지 51,000m<sup>3</sup> 규모는 외해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다.

다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려하는 교통 혼잡, 타 선박의 입출구 확보, 대체선석의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준설량 축소의 경우도 항로의 폭과 깊이가 줄어들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더라도 올해 3분기에는 허가 및 공사발주, 4분기에는 준설공사 및 접안시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계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계류장에 출입하는 다른 선박과의 교통 문제 및 안전 확보 이슈는 사전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출연금을 교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 수행 시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류장 확장 및 준설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타 선박의 입출입 및 준설토 투기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의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sup>1)</sup>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관운영비 및 주요사업비 등 연구운영비를 지원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39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39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변동은 없으며, 예산현액 중 기관운영비는 407억 8,400만원, 시설사업비는 106억 8,600만원, 주요사업비는 524억 7,3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103,943	103,943	-	-	103,943	103,914	-	2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은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등에서 수집한 연구자료(시추코어, 암석시료, 지질표본과 기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41-402

록물)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 공유·활용을 위한 물리적 데이터 리포지토리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중 시설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원, 사업기간은 4년(2020~2024년)이며 향후 30년간 연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연면적 4,8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 나. 분석의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사전 대비하는데 부족하여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시설 사업의 추진 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은 2020년 6억원, 2021년 20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 중 2억 4,600만원만 집행하여 18억 1,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실집행률은 11.9%이다.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재원	2020년			2021년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	출연금	600	540	90.0	2,060	246	11.9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①설계 전 및 설계 후에 신설된 절차를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점, ②공사 발주 용역에 2차례 유찰되어 추가 지연이 발생한 점의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설계 전 신설된 절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설된 절차를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2)</sup>, 이

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2019년 12월 17일 제19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여기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1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5천만원이므로 대상사업에 해당하였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 방안, 건축물 등의 배치와 공간활용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향후시설 운영 및 활용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및 환경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sup>3)</sup>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총 3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sup>4)</sup>.

다음으로 '설계 후 신설된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의 신설에 따른 절차를 의미한다<sup>5)</sup>. 동조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sup>6)</sup>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상사업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sup>7)</sup>.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당초 계획대로라면 설계용역착수는 2020년 3월에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6월로 미루어졌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67억원이며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등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다<sup>8)</sup>. 여기서 다시 3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sup>9)10)</sup>.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 계획 변경 현황]

연 차	기존계획	연 차	변경계획
2020년	◦설계 및 인허가	2020년	◦설계 및 인허가
1월	- 사전검토	1월	- 사전검토
2월	- 설계용역발주, 기본설계(시작)	6월	- 설계용역발주, 기본설계(시작)
9월	- 기본설계(완료)	12월	- 기본설계(완료)
10월	- 실시설계(시작)	-	
2021년	◦설계 및 인허가(완료), 시공(시작)	2021년	◦설계 및 인허가(완료), 시공(시작)
3월	- 실시설계(완료), 허가신청	1월	- 실시설계(시작)
5월	- 허가(완료), 공사발주	8월	허가(완료), 공사발주
9월	- 공사착공, 골조/부대공사(시작)	9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12월	골조/부대 일부 공사(완료)	10월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완료 및 발주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8)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심의자료를 제출한 일자는 2020년 6월 19일이고, 심의는 6월 26일 완료되었다.

9) 당초 공사 착공은 2021년 9월에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2022년 3월로 미루어졌다.

10)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총 6개월의 사업 순연에 대하여 향후 마감 및 설비공사를 동시진행하고 인력 및 장비투입을 증가시켜 공기를 단축하여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기 단축시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 증가에 따른 현장 안전은 안전관리인력(신호수, 감시자 등)의 추가투입 및 순회점검,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하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 차	기존계획		연 차	변경계획
2022년	◦시공		2022년	◦시공
8월	골조공사(완료)	마감/설비공사(시작)	3월	공사착공, 골조/부대공사(시작)
12월	마감/설비 일부공사		7월	골조 일부 공사(완료)
			10월	마감/설비공사(시작)
			11월	골조공사(완료)
			12월	마감/설비 일부공사(완료)
2023년	◦시공(완료), 준공('23.7월)		2023년	◦시공(완료), 준공('23.10월)
7월	설비/마감 공사(완료)		10월	마감/설비공사(완료)
	부대공사(완료), 준공			부대공사(완료), 준공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런데 먼저 2020년에 발생한 사업 지연의 원인을 살펴보면, ‘설계 전 신설된 절차’에서 근거가 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는 2018년 12월 18일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문의 위임을 받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2019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21년에 발생한 사업 지연을 살펴보면, ‘설계 후 신설된 절차’의 근거가 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동조 제3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시행령 규정(영 제59조의2)는 2019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 2019년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는 ‘설계 후 신설된 절차’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1)12)</sup>.

11) 기술자문심의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제출한 일자는 2021년 10월 6일이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는 10월 8일 완료되었다.

12) 한편 동 사업의 추가적인 순연 사유로 상주감리 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문제로 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사업체 선정이 지연된 점이 제시되고 있다. 1차 및 2차 유찰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상주감리 금액으로 8억 9,300만원을 산정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회의 유찰 이후 타 사업의 사례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 진행 연혁]

일정	현황	세부내용	비고
2018.12.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신설	공공건축 사업에서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설(공공건축 기획 심의 의무화)	공공건축 심의
2018.12.3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신설	기술자문 심의
2019.4.5. ~2019.5.1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3항 입법예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	기술자문 심의
2019.6.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제3항 신설	상동(시행일: 2019.7.1.)	기술자문 심의
2019.9.26. ~2019.1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입법예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으로 명시	공공건축 심의
2019.12.1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신설	상동(시행일: 2019.12.19.)	공공건축 심의
2020.6.2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공공건축 심의
2021.9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술자문 심의
2021.10.8.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완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완료	기술자문 심의
2021.11.25. ~2021.12.7.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유찰	상주감리금액(8억 9,345만원)	1차 유찰
2021.12.17. ~2022.1.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유찰	상주감리금액(8억 9,345만원)	2차 유찰
2022.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입찰)	상주감리금액(11억 2,166만원)	입찰
2022.3월	착공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자료 및 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작성

를 참조하여 상주감리금액을 11억 2,166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계약은 2022년 2월 체결되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타 공공기관의 유사 시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공공건축심의 및 기술자문심의 대상인 사업을 실시하였던 기관으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 기획 심의 및 기술자문 심의 대상 사업]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발주	기술자문심의	21년도 실적행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센터 건설사업	16,700	'20~'24	'20.6.	'20.6.	'21.10	11.9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 제조장비 실증 실험동 건설사업	18,800	'21~'24	'21.5	'21.9	'22.7 (예정)	100
한국전기연구원	e·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9,000	'21~'23	'21.2	'21.2	'21.12	91.1

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추가되므로 해당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

따라서 향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대규모 시설 사업의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절차의 수행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sup>1)</sup>에 따라 연구개발특구<sup>2)</sup>에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4년 12월 정부는 대덕 특구 육성방침을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하고, 2005년 11월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4월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sup>3)</sup>은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282억 8,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5,000만원을 포함해 예산 현액은 299억 3,600만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86억 1,600만원(출연), 전북·대전 등 지자체에 103억 2,000만원<sup>4)</sup>이 교부되었다. 동 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원이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 2)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3)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632-402
- 4) 특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 주로 자본보조(330-03)로 교부되었다.

[2021 회계연도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연구개발 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28,286	28,286	1,650	-	29,936	28,936	1,000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분석의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사업수행 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 시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을 개선하여 공공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국세이며, 근거 법률은 「인지세법」이다.

공공기관 역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를 지며, 특히 민간 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5)에 따라 민간 주체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5)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 납부의무가 연대채무라는 사실에서 곧바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간 인지세 부담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제2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sup>6)</sup>.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 총 504건에서 2,160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504건의 계약은 모두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던 사례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모두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업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업무요령」을 시행하고 있으

6)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공공기관이 인지세를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던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20.10.27.)

7) 이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공공계약제도 등에 따라 종전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인지세를 기관에서도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 중이라는 입장이다.

나, 해당 지침에서는 인지세 또는 수입인지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인지세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비율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계약상대방	
2017	74	2,550	0	2,550	0%
2018	89	3,700	0	3,700	0%
2019	94	5,290	0	5,290	0%
2020	117	5,340	0	5,340	0%
2021	130	4,720	0	4,720	0%
합계	504	21,600	0	21,600	0%

주. 표의 현황은 공공기관이 계약에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계약(자체계약,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이용 등)을 의미하고,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향후 계약체결 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인지세를 적정 수준에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지세 부담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 가. 현 황

공무원연금공단<sup>1)</sup>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등을 징수하고, 퇴직급여나 재해보상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등의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공기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상퇴직금의 1/2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사업<sup>2)</sup>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특례대출로 나뉘는데, 일반대출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나 단기재직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대출하는 주택자금대출과 질병휴직, 육아휴직, 신혼부부, 다자녀, 공무상 요양 등을 하는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사회적채적대출로 구분된다. 공무원연금대부(융자)사업의 대출 종류와 한도, 자격 및 이율, 상환기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2-322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대부 제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내용				
대출종류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및 단기재직 공무원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사회정책적대출	미취학자녀를 둔 공무원, 질병휴직,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다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하는 공무원			
대출한도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 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7,000	3,000
665~804	1,000	1,000	5,000	2,000	
515~664	500	500	3,000	1,000	
0~514	대출불가				
대출자격	일반대출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15.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2020.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대출이율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기준이자율)			
	사회정책적대출	연금대출 기준이자율에서 1%p 인하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단위: 만원)				
	대출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고	
	500초과 2,000이하	12개월	72개월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2,000초과 5,000이하	24개월	120개월		
5,000 초과	144개월				
상환방법	매월 보수지급일에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출금 이체				
연체이자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자료: 2021년 공무원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의 2021년도 계획액은 9,500억원으로, 이 중 9,484억 3,000만원을 공무원연금대출 실행으로 집행하였고 15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러한 대출금액은 전년 대출금액인 9,000억원 대비 5.4% 증가한 규모이며, 대출금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 역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조 9,346억원에 달한다. 2021년의 공무원연금대부 대출건수는 3만 8,38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1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대부(용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대부(용자)	950,000	950,000	-	950,000	948,430	-	1,57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8~2021년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대출건수	37,419	39,754	38,761	38,385
대출금액	7,954	7,999	9,000	9,484
회수금액	7,192	7,045	8,332	6,808
대출잔액	15,047	15,794	16,480	19,346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에 따라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인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로, 그 이자는 기타민간이자수입으로 귀속된다.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는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대출에 대한 원금회수와 대여학자금 원금회수로 구분되는데, 이 중 2021년 공무원연금대부금에 대한 원금회수의 경우 6,990억 6,5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6,807억 7,600만원만이 수납되었고

182억 8,9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공무원연금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1년에 519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될 예정이었으나, 수납액은 485억 8,800만원으로 33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273,465	1,273,465	-	1,273,465	1,306,363	1,287,805	18,558
공무원연금대부금	699,266	699,065	-	699,266	699,065	680,776	18,289
대여학자금	574,199	574,199	-	574,199	607,298	607,029	269
기타민간이자수입	51,458	51,458	-	51,458	51,972	48,588	3,384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대부의 장기연체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고, 장기연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중 공무원연금대부금 원금회수와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원리금을 연체하고 수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2021년 기준으로 총 216억 7,300만원의 원리금이 공무원연금대부의 연체로 인하여 미수납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대부 연체자 중 3년 이상의 장기연체자 비율은 약 25.1%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의 연체금액은 135억 4,800만원이며 이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미납이자 27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3,259	46.7	94	977
6개월 ~ 1년	526	7.5	74	618
1년 ~ 2년	731	10.5	180	1,244
2년 ~ 3년	710	10.2	267	1,902
3년 이상	1,749	25.1	2,769	13,548
계	6,975	100	3,384	18,28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연금대부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예상 퇴직금의 1/2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여의 경우, 3년 이상 장기연체자 비율은 4.9%에 불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대부의 장기연체자 비율은 높은 측면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대여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재직자		퇴직자		계	
	인원	미납이자	인원	미납이자	인원(비율)	미납이자
6개월 미만	596	33	1	0.022	597(78.7)	33.022
6개월 ~ 1년	29	10	1	0.004	30(4)	10.004
1년 ~ 2년	72	52	6	3	78(10.3)	55
2년 ~ 3년	16	12	1	0.14	17(2.2)	12.14
3년 이상	33	90	4	13.5	37(4.9)	103.5
계	746	197	13	16.41	759(100)	213.4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공무원연금대부의 장기연체자 비율은 기존에 비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연체자 비율은 각각

22.5%, 22.9%로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각각 27.8%, 25.1%로 나타나 20% 중후반대로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18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3,336	51.1	132	904
6개월 ~ 1년	528	8.1	114	618
1년 ~ 2년	730	11.2	306	1,576
2년 ~ 3년	460	7.1	329	1,654
3년 이상	1,469	22.5	4,916	13,641
계	6,523	100	5,797	18,39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3,293	47.9	118	913
6개월 ~ 1년	607	8.8	113	698
1년 ~ 2년	839	12.2	309	1,964
2년 ~ 3년	566	8.2	388	2,853
3년 이상	1,574	22.9	5,227	14,366
계	6,879	100	6,155	20,79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20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2,356	38.6	79	653
6개월 ~ 1년	504	8.3	82	536
1년 ~ 2년	870	14.3	265	1,603
2년 ~ 3년	674	11.1	359	2,027
3년 이상	1,694	27.8	5,360	14,091
계	6,098	100	6,145	18,91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은 3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연체자에 대한 연체안내,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미납자에 대한 급여 원천공제 등 철저하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장기연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고객지원사업<sup>1)</sup>은 공무원의 퇴직 후 노후생활 설계를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은퇴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6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지원사업의 2021년도 당초 계획액은 152억 5,3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75억 5,4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7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고객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객지원사업	15,253	7,554	-	7,554	7,070	-	484
- 은퇴지원교육	7,686	739	-	739	672	-	67
- 연금담당자교육	606	345	-	345	335	-	1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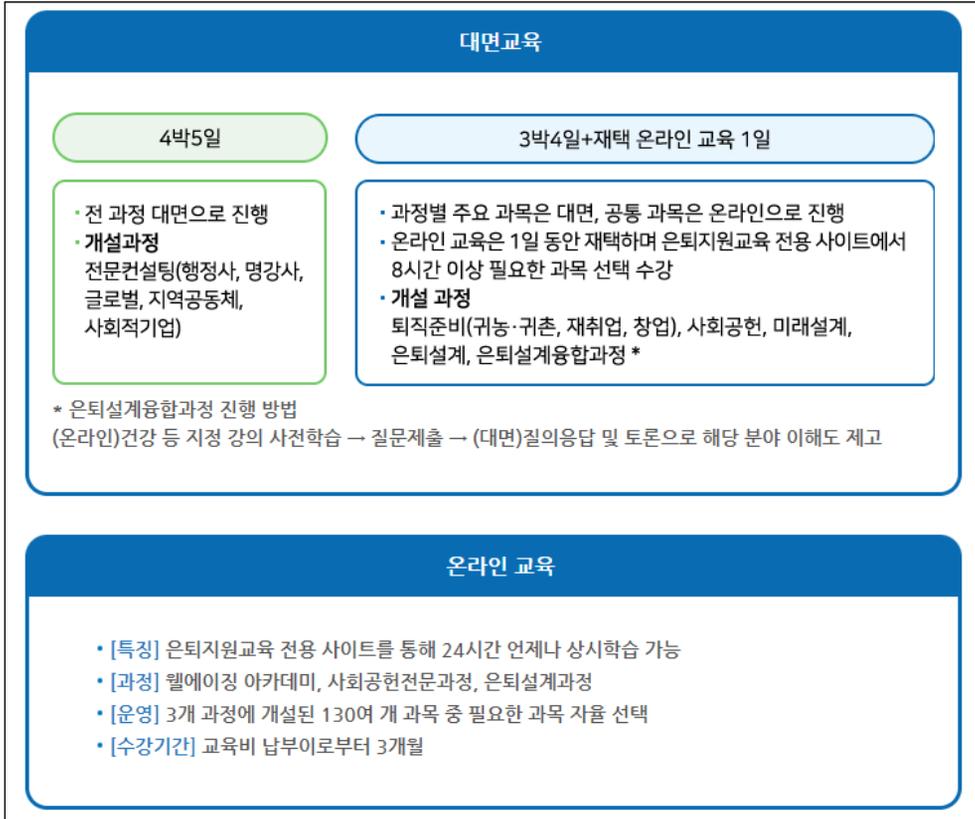
고객지원사업의 세사업인 은퇴지원교육 사업은 공무원이 퇴직 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도록 교육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퇴지원교육 사업의 2021년도 계획액은 76억 8,6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해 7억 3,900만원으로 계획액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은퇴지원교육 사업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문컨설팅, 퇴직 준비, 은퇴설계 등의 내용으로,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262-302

[은퇴지원교육 사업의 교육 내용]



주: 2021년 말 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세사업인 연금담당자교육 사업은 연금취급기관의 연금담당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나 퇴직급여업무 등 실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금서비스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수혜상실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도 당초 계획액은 6억 6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3억 4,5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중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연금담당자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징수나 급여업무 및 재해보상, 용자, 임대주택 등 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는 한편, 연금담당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고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객지원사업의 세사업인 은퇴지원교육 및 연금담당자교육의 경우 2년 연속 당초 계획액 대비 대규모의 계획액 감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계획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획액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퇴지원교육 사업과 연금담당자 교육 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당초 각각 76억 8,600만원 및 6억 600만원이었으나, 4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각각 7억 3,900만원 및 3억 4,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021회계연도 은퇴지원교육 및 연금담당자교육 계획액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당초(A)	수정(B)	차이 (B-A)	변경 비율 (B-A)/A	집행액	불용액
은퇴지원교육	7,686	739	△6,947	△90.4	672	67
연금담당자교육	606	345	△261	△43.1	335	1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1회계연도 은퇴지원교육 및 연금담당자교육 계획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변경일자	내역사업명	당초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	변경사유
2021.7.26	은퇴지원교육	7,686	△276	7,41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교육 축소 및 중단, 온라인 교육 전환
	연금담당자교육	606	△200	406	
2021.9.30	은퇴지원교육	7,410	△4,724	2,686	
2021.11.16	은퇴지원교육	2,686	△1,000	1,686	
2021.12.9	은퇴지원교육	1,686	△947	739	
	연금담당자교육	406	△61	34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은퇴지원교육의 경우 당초 계획액의 90%를 상회하는 금액이 감액변경된 것이며, 연금담당자교육 역시 당초 계획액의 43%가 감액변경된 것이다. 동 사업들은 이러한 계획액의 대규모 감액 변경에도 각각 6,700만원과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러한 계획 변경 사유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대면 집합 교육이나 대면 봉사활동이 축소되어 대규모 감액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업집행방식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는 한편,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특히 동 사업들의 이러한 대규모 감액 변경은 사업 시작년도인 2020년도부터 2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은퇴지원교육은 당초 계획액의 78.4%인 65억 7,800만원이 감액변경되었으며, 연금담당자교육은 당초 계획액의 70%에 달하는 6억 9,800만원이 감액변경되었음에도 두 사업 모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20회계연도은퇴지원교육 및 연금담당자교육 계획액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당초(A)	수정(B)	차이(B-A)	변경 비율(B-A)/A	집행액	불용액
은퇴지원교육	8,387	1,809	△6,578	△78.4	1,776	33
연금담당자교육	1,000	302	△698	△69.8	281	2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2년 연속으로 계획액이 대규모로 감액 변경되고, 그럼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의 계획액이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되었고, 코로나19의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집행계획이 철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와 같은 계획액의 대규모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계획액의 취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은퇴지원교육 사업의 경우 2021년 계획액 편성 당시 퇴직을 앞둔 공무원

이 교육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계획액 전체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은퇴지원교육 사업의 2021년 계획액 산출 근거]

구 분	인원(명)	단가(천원)	금 액(백만원)
4박 5일 교육	17,338	402	6,962
3박 4일 교육	1,926	349	673
찾아가는 미래설계교육	10개 권역 × 4회		51
합계	19,264	-	7,686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러나 2021년 집행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전체 교육인원 중 9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온라인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대면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액을 편성, 확정하였던 취지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은퇴지원교육사업의 2021년 교육 계획 및 실적]

(단위: 명, %)

구분	대면교육(A)	온라인교육	전체(B)	대면교육 비중(A/B)
계획액 편성 및 확정 기준	19,264	0	19,264	100
실제 실적	1,028	22,806	23,834	4.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동 사업들의 계획액 편성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하여 국회에서 확정된 계획액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은퇴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퇴지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예정공무원 대면교육은 은퇴설계과정과 사회공헌 과정, 퇴직준비과정, 미래설계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지원교육 사업 대면교육 내용]

과정명	교육 내용
은퇴설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설계 사례 공유</li> <li>- 은퇴의 의미와 은퇴설계 필요성 이해</li> <li>- 은퇴 후 여가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li> <li>- 선배공무원의 은퇴생활 사례 공유</li> <li>- 노년기 건강관리 및 노화기에 따른 질병 예방 등</li> </ul>
사회공헌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설계 사례 공유</li> <li>-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 교육</li> <li>-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및 지원 정책</li> <li>- 노년기 건강관리 및 노화기에 따른 질병 예방</li> <li>- 은퇴후 사회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사례 소개 등</li> </ul>
퇴직준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성공적 귀농귀촌 전략, 정부지원정책 등</li> <li>- 재취업: 잡서칭 활용기법, 재취업 성공사례 등</li> <li>- 창업: 창업시장 트렌드, 성공적 창업전략 및 정부지원정책</li> </ul>
미래설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설계 사례 공유</li> <li>- 자아찾기 및 노후 행복을 위한 버킷리스트 작성 등</li> <li>- 은퇴 후 세금 절세방안 및 상속세 등 관련 법령 교육 등</li> </ul>
전문건설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 행정사 양성, 자격증 활용 및 필요역량 등</li> <li>- 명강사: 강사활동 및 강의활동처 연계를 통한 재능기부 실현 등</li> <li>- 글로벌: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KOICA 월드프렌즈 견학 등</li> </ul>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동 사업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내용 중 다수가 은퇴설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거나 은퇴의 의미 및 은퇴설계 필요성 이해, 은퇴 후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노년기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은퇴생활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퇴직공무원의 은퇴설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교육대상을 퇴직이 1~8년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은퇴설계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 또는 필요성 중심의 교육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 원하는 직무나 직업에 대한 재교육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10개 지부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g-시니어 포털을 통하여 은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지원교육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선호 직업 중심의 재교육이나 은퇴 이후에도 공직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수정, 편성하는 등 교육 내용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온라인몰 추가 입점 업체 선정 방식 개선 필요

### 가. 현황

국내관광 역량강화<sup>1)</sup> 사업은 국민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관광소재 및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통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2021년 계획액은 417억 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7억 9,900만원, 불용액은 8,5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내관광 역량강화	41,784	41,784	100	-	41,884	41,799	-	8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국민관광 지원’, ‘관광통계 개선’ 사업이 있으며, 이 중 ‘국민관광지원’ 내역사업은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지원 및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제고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휴가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휴가지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1년 예산은 110억원으로, 한국관광공사에 교부되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2021회계연도 국민관광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관광지원	23,646	23,646	-	-	23,646	23,646	-	-
청소년, 청년, 시니어 관광 활성화	1,400	1,400	-	-	1,400	1,400	-	-
열린관광 환경조성	7,426	7,426	-	-	7,426	7,426	-	-
근로자 휴가지원	11,000	11,000	-	-	11,000	11,000	-	-
지역관광 추진조직	3,820	3,820	-	-	3,820	3,820	-	-

주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주2. 소관 부처의 교부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분석의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폐쇄물의 형태인 온라인몰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한국관광공사는 복지몰 입점 업체의 추가 선정 시 공모 방식을 실시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참여 신청을 하면, 참여하는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40만원의 여행경비 중 20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입금하고, 10만원은 기업이, 나머지 10만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10억원 중 36억 1,9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73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 2월까지 이월 예산 4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다<sup>2)</sup>.

2)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휴가샵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며(사업기간: 21.5.12~22.2.28, 제한운영기간: 21.7.1~10.31), 적립금 정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휴가샵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숙박, 패키지여행 등의 상품은 판매를 21.6.14~10.31까지 중단하고 비대면 여행상품 수요에 맞추어 캠핑·레저용품, 원데이클래스, 공연·전시, 외식상품권 등을 판매하였다.

1인당 40만원으로 조성된 여행경비 적립금은 동 사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포인트 적립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sup>3)</sup>. 즉 근로자는 온라인몰에서 40만 포인트를 이용하여 숙박, 교통, 레저 등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 여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에의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의 근로자로, 대표나 임원의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전문직의 경우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자격]

구분	2018-2019	2020	2021	2022
참여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좌동
참여 제한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 (법인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능 (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만 참여불가 (비법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참여 불가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능 (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의료법인) 대표만 참여불가(비법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참여불가	좌동

자료: 한국관광공사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되어 수혜 근로자 수는 2018년 2만명에서 2021년 86,360명까지 증가하였고, 참여 기업 수도 2018년 2,441개에서 2021년 8,906개로 증가하였다. 2021년 수혜 근로자 유형을 살펴보면, 중기업 근로자(40,20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기업(22,936명), 소상공인(10,13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경비 적립금 총액은 2021년 기준 345억 4,400만원에 달한다<sup>4)</sup>.

3) 만약 적립된 포인트가 기간(휴가지원사업의 운영기간 종료일) 내 미사용되는 경우, 정부지원금(25%)을 제외한 나머지(근로자부담금(50%) + 기업지원금(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계좌로 환불되고 기업 담당자는 참여근로자별 환불금액(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후 각각의 참여근로자 개인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명, 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혜근로자 수(합계)	20,000	80,000	96,086	86,360
소상공인	5,318	12,525	16,104	10,133
소기업	7,766	26,665	26,465	22,936
중기업	6,916	40,810	43,586	40,204
중견기업	-	-	3,701	6,286
비영리민간단체	-	-	562	1,238
사회복지법인·시설	-	-	5,668	4,931
의료법인	-	-	-	632
참여 기업 수(합계)	2,441	7,518	11,931	8,906
소상공인	1,475	3,176	5,708	3,482
소기업	685	2,648	3,235	2,595
중기업	281	1,694	2,052	1,853
중견기업	-	-	70	126
비영리민간단체	-	-	144	130
사회복지법인·시설	-	-	722	704
의료법인	-	-	-	16
적립금 총액	8,000,000,000	32,000,000,000	38,434,400,000	34,544,000,000
적립금 사용총액	6,782,235,824	26,220,974,264	29,080,617,140	28,373,002,839
정부 부담분	1,695,560,519	6,544,160,844	7,199,897,264	7,093,257,559
기업 부담분	1,695,560,519	6,544,160,844	7,199,897,264	7,093,257,559
근로자 부담분	3,391,114,786	13,110,470,716	14,680,822,612	14,186,487,721

자료: 한국관광공사

4) 적립금은 하나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는 2021년 휴가비 적립 관련 은행 수수료로 하나은행에 5,721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에서 수혜 근로자가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하게 되는 창구인 온라인몰 '휴가샵'의 경우<sup>5)</sup>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몰로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폐쇄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경우 휴가샵에 입점하거나 이미 휴가샵에 입점하여 있는 기존 업체에 상품을 등록하여야 동 사업에 참여하는 8만 6천여 명(2021년 기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여행업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공공성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가샵은 SK m&Service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몰(베네피아)중 일부 국내 여행상품만을 선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다<sup>6)</sup>.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사이트인 '베네피아'에 입점한 여행사들은 휴가샵을 위하여 판매 상품을 국내/해외로 분리한 후 휴가샵에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만을 판매 중이다.

따라서 현재 휴가샵에 입점한 업체는 최초 휴가샵 오픈 시 당시 기존 '베네피아'에 제휴되어 있는 국내여행 관련 입점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후 추가로 입점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한 지방출발 관광상품이거나, 공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해당 지역 여행사 등 소비자들의 수요와 공사의 정책적 요청에 의해 SK m&Service에서 해당 제휴사에 입점을 제안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2021년 기준 휴가샵에 입점한 업체는 55개이며, 숙박 또는 여행상품 분야가 가장 많다.

---

5) 휴가샵, <https://vacation.benepia.co.kr/>

6) 동 사업에서는 운영비로 2020년 약 16억원, 2021년 5.9억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운영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참여 근로자들의 적립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모션 및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프로모션 및 홍보 추진 시 SK m&Service를 통해 각각의 입점업체에 후불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억 8,800만원, 2021년에는 4,493만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휴가삼 연도별 입점 업체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19	2020	2021
입점 업체 수(합계)		53	48	55
	숙박	21	13	15
	여행상품	16	18	19
	레저입장권	10	7	7
	교통편의	6	6	8
	레저용품	-	1	1
	공연전시	-	2	2
	외식상품권	-	1	3
입점 상품 수(합계)		94,034	197,010	295,547
	숙박	36,253	83,352	102,275
	여행상품	3,126	15,882	15,794
	레저입장권	2,452	20,371	20,283
	교통편의	52,203	26,690	56,960
	레저용품	-	49,477	95,970
	공연전시	-	610	719
	외식상품권	-	628	3,546
구매액(합계)		26,221	29,081	28,373
	숙박	20,709	13,708	11,687
	여행상품	1,635	487	190
	레저입장권	1,544	378	1,050
	교통편의	1,360	1,754	1,438
	레저용품	-	5,860	9,139
	공연전시	-	283	723
	외식상품권	-	1,394	3,272
	기타(사용내역 확인 불가 포함)	973	5,217	874

자료: 한국관광공사

[휴가샵 상품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상품 내용	휴가샵 입점 제휴사
국내여행 상품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인터파크(투어),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 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웰촌, 여행노트앤투어, 제주도닷컴, 롯데관광, 흥익여행사, 코레일관광개발, 여행공방, 삼성여행사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 시설	익스피디아,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호텔패스, 편앤비즈, 베니키아, 타이드스퀘어,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야놀자, 스테이폴리오, 여기어때, 뛰놀자
체험/레저 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쿠폰트리(제주), 플러스엔, 브이패스, 라이프스타일 힐팩, 웰촌, 에이페이,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리립
교통	렌터카	제주실시간렌터카, 투어디지털, 짐카, 롯데렌터카
	기차	웹투어(KTX), 흥익여행사(SRT)
	항공(국내)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전시/공연 관람권	전시회, 공연 등	티켓수다, 걸쳐큐브, Yes24
캠핑/레저용품, 외식	등산·캠핑·자전거·스포츠용품, 외식 등	AK몰, 테이블엔조이

자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021.12., 55면에서 재인용

휴가샵의 입점업체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직접 SK m&Service에 입점 요청을 하면, SK m&Service가 업체의 소개서 또는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차별성, 선호도, 신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SK m&Service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직접 입점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검토 절차는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및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의 선정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경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를 폭넓게 선발할 수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선정 탈락 시에도 기 제출

서류 및 면접 내용 등을 근거로 적정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동 사업의 경우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SK m&Service의 복지몰 운영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지만, 2018년 2만명이던 혜택 근로자가 2021년 기준 8만 6천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휴가샵에서 추가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보다 많은 공급업체가 입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외부위원의 참여 및 공고에 따라 명시된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추가 입점 업체 선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내관광 역량강화<sup>1)</sup> 사업은 국민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관광소재 및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통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2021년 계획액은 417억 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7억 9,900만원, 불용액은 8,5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내관광 역량강화	41,784	41,784	100	-	41,884	41,799	-	8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국민관광 지원’, ‘관광통계 개선’ 사업이 있으며, 이 중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은 국내관광 수요의 균형적 분산과 국내 여행 총량의 확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가는 달’ 및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112억 1,700만원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고, 한국관광공사는 이 중 107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 7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억 3,700만원은 이월하였다(실집행률 71.8%)<sup>2)</sup>.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4억 3,100만원을 집행,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실집행률 95.7%).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2) 한국관광공사는 이월액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여행가는 달 캠페인(21.11.8.~11.30.) 종료 후, 여행가는 달 실태조사(만족도·관광소비·이동량) 분석용역 진행 및 교통할인 지원비용 정산이 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국내관광 캠페인 및 여행가는 달 SNS의 연중 운영(~3월까지)으로 대행사 용역비 정산을 위하여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021회계연도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내관광 캠페인	11,217	11,217	-	-	11,217	8,161	3,037	1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에서 ‘여행가는 달’ 또는 여행주간 등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캠페인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박하여 발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광고 등 홍보 전략을 사업 수행기간 이전에 선제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는 ‘여행가는 달’ 사업으로, 국내여행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와 협업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다양한 할인혜택 및 국내관광 상품,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 수요자는 KTX, 철도, 고속버스와 같은 교통이나 숙박시설 할인에서부터 놀이공원 할인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sup>.

[2021회계연도 ‘여행가는 달’ 주요 혜택 현황]

구분	주요 혜택 상세
교통 혜택	[KTX 관광상품 최대 40% 할인] - 혜택내용: KTX 관광상품(KTX 왕복탑승권+관광지 입장권/체험권/숙박권 등) 최대 40% 할인 - 판매가격: 상품별 상이 - 판매기간: 11.8.(월)~11.30.(화) - 제약사항: 최저 운임 이하 할인 불가

3)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에서 일부 교통플랫폼, 숙박업체 등의 경우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코레일(7억원)이나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9,400만원), 야놀자(3억 5,300만원), 여기어때(2억 9,900만원), G마켓(1억 3,100만원), 네이버(1억원)의 할인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구분	주요 혜택 상세
	<p>[철도: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코레일 관광열차 4종(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백두대간협곡) 최대 50% 할인</li> <li>- 판매가격: 상품별 상이</li> <li>- 판매기간: 11.11.(목)~11.30.(화)</li> <li>- 제약사항: 최저 운임 이하 할인 불가</li> </ul> <p>[고속버스: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사용기간내 고속버스 노선 무제한 이용(3.5만원 할인혜택)</li> <li>- 판매가격: ₩45,000/3일권(주말포함), ₩40,000/4일권(주말제외), ₩75,000/5일권(주말포함), ₩95,000/7일권(주말포함)</li> <li>- 판매기간: 11.8.(월)~11.30.(화)</li> <li>- 제약사항: 홈페이지/앱을 통해 좌석 사전지정 필수 타인에게 양도 불가, 동일 노선은 1왕복까지 사용 가능</li> </ul>
숙박 혜택	<p>[대한민국 숙박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온라인을 통해 쿠폰 다운로드 후, 지정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7만원 이하 2만원, 7만원 초과 3만원 할인)</li> <li>- 발급기간: 11.9.(화)~12.23.(목)</li> </ul> <p>[한국관광품질인증 프로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프로모션(예약 건당 50% 할인/5만원 한도)</li> <li>- 예약기간: 11.10.(수)~11.26.(금)</li> <li>- 투숙기간: 11.10.(수)~11.30.(화)</li> </ul>
여행 상품 혜택	<p>[놀이공원 할인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온라인을 통해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3만원 이하 1만원, 3만원 초과 1.5만원 할인)</li> <li>- 발급기간: 11.15.(월)~12.31.(금)</li> </ul> <p>[만만한 캠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통해 '등록 야영장' 예약 후, 기간 내 퇴실 까지 이용 완료한 고객 대상 네이버 포인트로 1만원 환급(선착순 1만명)</li> <li>- 예약기간: 11.1.(월)~11.28.(일)</li> <li>- 이용기간: 11.8.(월)~11.30.(화)</li> </ul> <p>[근로자 휴가지원 프로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휴가샵 내 숙박, 레저, 체험, 교통 등 여행관련 상품 할인(최대 50%/ 5만원 한도)</li> <li>- 할인기간: 11.8.(월)~11.30.(화)</li> </ul>

구분	주요 혜택 상세
	<p>[토닥토닥 힐링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 대상 국내여행 40% 할인(최대 16만원)</li> <li>- 장애인·국가유공자 100% 할인 지원(40% 할인 금액으로 결제 후, 추후 전액 환급)</li> <li>- 할인기간: 11.9.(화)~12.19.(일)</li> </ul>
지역 여행 프로그램	<p>[여행가는 달 지역여행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3개 프로그램 운영(16개 지역)</li> <li>- 테마별 운영: 지역체류형(6개), 랜선(1개), 야외관광지 안심관광(16개)</li> <li>- 모객방법: 공사홈페이지, OTA(티몬·쿠팡 등) 및 국내여행사 활용 모객</li> <li>- 추진실적: 총 14,720명 모객</li> </ul>
여행 업계 특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내용: 교통, 숙박, 관광/체험, 입장/이용 4가지 테마에 해당하는 여행업계 할인 및 혜택 상품 제공</li> <li>- 혜택상세: 숙박 객실료 할인, 여행상품 할인, 전망대/케이블카/크루즈 상품 할인, 렌터카 할인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유관기관 및 공사 협업 부서에서 제공하는 각종 여행정보 및 이벤트 등</li> </ul>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및 2022년도 ‘여행가는 달’을 지정하면서 실제 해당 사업수행기간 실시가 임박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2021년 ‘여행가는 달’의 경우 11월 8일~11월 30일까지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는 11월 8일에 발표되었고<sup>4)</sup>, 2022년의 경우 수행기간이 6월 2일~6월 30일이었으나 보도자료는 5월 24일에 발표되었다<sup>5)</sup>.

#### ['여행가는 달' 관련 공표 시점과 사업수행기간]

구분	2021년	2022년
사업수행기간	11.8.~11.30.	6.2.~6.30.
보도자료	11.8.	5.24.

최근 5년간 동 사업에서 여행 행사 주간(달)을 운영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9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 여행가는 달,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 회복하세요”, 2021.11.8.

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2022.5.24.

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기간과 공표일, 광고일정 사이의 간격이 1개월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 촉진 사업 관련 사업수행기간과 공표 및 홍보 일정 비교]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A)	공표일	광고일정(B)	B-A	광고비 집행액
2017	겨울 여행주간	1.14~1.30.	16.12.26	16.12.28.~1.30.	17일	879,560
	봄 여행주간	4.29.~5.14.	4.17.	4.3.~5.14.	26일	1,550,229
	여름 여행주간	6.29.~8.20.	6.29.	6.29.~8.20.	0일	624,230
	한가위 여행주간	9.30.~10.9.	9.18.	9.18.~10.10.	12일	138,800
	가을 여행주간	10.21.~11.5.	10.11.	10.12.~11.5.	9일	1,800,100
2018	평창 여행의 달	2.9.~3.18.	1.24.	1.25.~3.18.	15일	1,202,682
	봄 여행주간	4.28.~5.13.	4.17.	4.18.~5.17.	10일	1,677,764
	여름철 국내여행 활성화 캠페인	7.1.~8.31.	6.27.	6.27.~8.26.	4일	1,219,356
	한가위 문화 여행주간	9.10.~9.26.	9.10.	9.10.~9.26.	0일	203,220
	가을 여행주간	10.20.~11.4.	10.1.	10.1.~11.4.	19일	2,105,334
2019	봄 여행주간	4.27.~5.12.	3.27.	4.2.~5.12.	25일	1,831,607
	가을 여행주간	9.12.~9.29.	8.13.	8.5.~9.28.	38일	4,009,966
2020	특별 여행주간	7.1.~7.19.	6.24.	6.24.~7.19.	7일	1,700,953
	안전여행캠페인	11.2.~12.4.	10.21.	10.28.~12.4.	4일	3,269,136
2021	여행 가는 달	11.8.~11.30.	11.8.	11.8.~11.30.	0일	2,517,479
2022	여행 가는 달	6.2.~6.30.	5.24.	5.24.~6.30.	9일	1,996,000

주1. 공표(공개)일은 최초로 해당 사업 일정을 공표한 날짜를 의미함

주2. 홍보(광고)일정은 방송광고, 인쇄광고, 옥외광고 등 행사와 관련된 광고 중 가장 먼저 광고가 송출된 날짜를 시작일로, 광고가 종료된 날짜를 종료일로 기산

자료: 한국관광공사

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었던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역시 '여행가는 달'의 일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실제 2021년도 '여행가는 달' 일정이 6월에서 7월로, 7월에서 9월,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다가 11월에 최종 결정되어 일정상 예측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2017~2018년 및 2022년 광고일정이 사업기간과 거의 겹쳤던 점, 여행 촉진을 위한 캠페인 사업에서 수요자가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여행 계획 또는 휴가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여행 가는 달’ 등 캠페인의 경우 관련 혜택이 매우 다양하고 많아,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기간 전부터 광고 및 홍보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주간’을 ‘여행 가는 달’로 변경하여 연 1회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여행가는 달’로의 캠페인 변경에 대한 인지율은 11.9%로 응답자의 88.1%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사업 변경에 대한 인지율이 낮고 연 2~3회 실시하던 주간 캠페인을 통합하여 연 1회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 1회 실시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경우 사업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연초부터 홍보 및 광고 일정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행주간, 여행 가는 달, 특별여행주간 등의 캠페인 인지도에 대한 조사(표본 5천명) 결과, 관련 캠페인의 인지도는 30% 후반에서 2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행 가는 달 실태조사 결과 분석]

구 분	2018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2021년
	4.28~5.13. (16일)	10.20~11.4. (16일)	4.27~5.12. (16일)	9.12~9.29. (18일)	7.1.~7.19. (19일)	11.8.~11.30. (23일)
여행경험률	60.1%	58.0%	56.8%	77.5%	32.6%	45.0%
여행주간 인지도	38.6%	36.1%	36.7%	38.1%	38.5%	25.7%
여행주간 만족도	3.4점	4.0점	3.6점	4.0점	3.95점	4.12점

주1. 봄/가을 여행주간(‘18~’19년), 특별여행주간(‘20년), 여행가는 달(‘21년)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표본(5천명)의 응답값을 모집단(전체 국민)으로 환산하여 추정하고, ‘21년 사업기간(23일)에 맞춰 기간 환산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한 것임

주2. 인지도 항목은 응답자 중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행주간(여행가는 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6) 한국관광공사, “2021년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국민참여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22.2., 88면.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 가는 달’ 및 여행주간 등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캠페인 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 수행 기간의 공표 이전에 선제적으로 광고 및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sup>1)</sup>은 문화산업 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378억 3,100만원이고 전액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민간보조의 형태로 교부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 콘텐츠 진흥원 지원	37,831	37,831	-	-	37,831	37,831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분석의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수행 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 시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을 개선하여 공공 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국세이며, 근거 법률은 「인지세법」이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232-304

공공기관 역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며, 특히 민간 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2)에 따라 민간 주체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 납부의무가 연대채무라는 사실에서 곧바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간 인지세 부담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제2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sup>3)</sup>.

2)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 총 1,828건에서 1억 7,512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였다<sup>4)</sup>.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모두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계약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서는 인지세의 부담 및 수입인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2017~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인지세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비율
			한국콘텐츠 진흥원	계약상대방	
2017	401	35,590	0	35,590	0
2018	382	35,310	0	35,310	0
2019	386	36,750	0	36,750	0
2020	311	29,760	0	29,760	0
2021	348	37,710	0	37,710	0
합계	1,828	175,120	0	175,120	0

주. 표의 현황은 공공기관이 계약에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계약(자체계약,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이용 등)을 의미하고,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계약체결 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인지세를 적정 수준에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지세 부담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공공기관이 인지세를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던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20.10.27.)

4) 1,828건 모두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가.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 스포츠경기 수준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해당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sup>1)</sup>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사업<sup>2)</sup>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지원, 서울올림픽 기념물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65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65,034	65,034	0	65,034	65,034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나. 분석의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급계약 등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전액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부담 비율을 개선하여 공공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3)에 의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1)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2)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4-302

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공공기관 또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며, 특히 민간 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sup>4)</sup>에 따라 민간 주체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7~2021년의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계약당사자로서 총 4,92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서 1억 8,428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인지세의 전액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3)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7~2021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인지세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비율
			국민체육 진흥공단	계약상대방	
2017	1,206	42,920	0	42,920	0.0
2018	1,091	41,170	0	41,170	0.0
2019	999	35,790	0	35,790	0.0
2020	806	31,580	0	31,580	0.0
2021	821	32,820	0	32,820	0.0
합계	4,923	184,280	0	184,280	0.0

주. 표의 현황은 공공기관이 계약에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계약(자체계약,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이용 등)을 의미하고,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지세의 연대납부 의무가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간 인지세 부담비율이 반드시 1: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5)에서는 공공기관은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제2항6)에서도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 계약체결 시 인지세의 대부분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7).

5)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외부위탁 및 계약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고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공공기관이 인지세를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던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20.10.27.)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준정부기관의 사규 조사 결과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sup>8)</sup>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급계약 등 계약체결 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의 인지세의 부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전수 점검 실시”, 2021.2.11.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체계 개선 필요

### 가. 현 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sup>1)</sup>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의 억제,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sup>2)</sup>은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126억 3,400만원이고 전액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교부되었다<sup>3)</sup>.

[2021회계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게임물 관리 위원회 지원	12,634	12,634	-	-	12,634	12,634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사업은 불법 게임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34억 2,000만원이다.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사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코드: 일반회계 1232-307

3)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에 해당한다.

업은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31억 1,000만원)과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및 국제협력’(3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는 거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니터링단에서 운용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sup>4)</sup>.

## 나. 분석의견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사업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단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을 유통시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임물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게임물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위원회의 기준 또는 위원회의 협약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sup>5)</sup>. 동 제도는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한정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4) 청년·장애인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12억 9,000만원(360만원×30명×12개월)과 경력단절여성 중심 재택모니터링단 18억 2,000만원(76만원×200명×12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 외에도 PC 또는 콘솔 게임물로 확대되었다. 22년 5월 기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총 10개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현황]

연번	사업자명	플랫폼	지정일자
1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콘솔	'18.06.29. / '21.06.01.(재지정)
2	윈스토어	모바일	'18.12.20. / '21.11.25.(재지정)
3	오쿨러스브이알코리아	모바일, PC, 콘솔	'18.12.20. / '21.12.01.(재지정)
4	Google LLC	모바일	'18.12.20. / '21.12.01.(재지정)
5	삼성전자	모바일	'18.12.26. / '21.11.25.(재지정)
6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PC	'18.12.26. / '21.11.25.(재지정)
7	애플코리아	모바일, PC	'18.12.26. / '21.12.01.(재지정)
8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PC, 콘솔	'19.12.02.
9	에픽게임즈코리아	PC	'20.12.28.
10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콘솔	'21.03.03.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도 하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자체등급분류사업의 민간 주도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체등급분류가 부적정하는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직권등급재분류)하거나 등급을 조정(등급조정조치)<sup>6)</sup>하고 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은 ‘재택형’과 ‘상주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일 3시간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재택형의 경우 200명, 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일 8시간을 상시 근무하는 상주형의 경우 30명으로 구성되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어 있다. 두 유형 모두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공통적으로 수행하나, 상주형의 경우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외에도 온라인 PC 게임물, 콘솔 게임물 등도 점검하며 사행성 규제도 함께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보다 넓은 측면이 있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구분	재택형	상주형
구성원	부산, 서울지역경력단절여성·장애인	부산지역 청년·청년장애인 중심
운영기간	2015년~현재	2019년~현재
인원	200명/위탁사업	30명/위원회 계약직 채용
업무형태	재택근무(3시간/1일)	위원회 상주근무(8시간/1일)
모니터링대상	· 자체등급분류 모바일 게임물(구글, 애플 등)	· 자체등급분류 PC온라인, 콘솔 게임물 · 자체등급분류 모바일 중 복잡·방대한 게임물 · 온라인·모바일 게임 내 사행화 기능 · 불법 온라인 게임물·프로그램
업무범위	· 등급부적정 게임물 적발 및 기획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게임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택근무요원 산출물 검수 및 관리 · 등급부적정 게임물의 행정조치 및 관리 · 불법 게임물·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수사지원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단의 업무절차는 자체등급분류된 게임을 점검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경우 채증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내용에 따라 위원회는 채증자료를 검수하여 등급조정 또는 직권재분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2021년 16만 8,940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중 5만 7,385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중 자체등급분류 등급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총 9만 3,654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중 1만 290건의 행정조치를 수행하였다.

[연도별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실적]

(단위: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자체등급분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	등급적정성	4,498	8,237	11,051	39,596	12,353	51,836	18,139	122,268
	표시의무위반	-	34,344	-	29,742	-	13,402	-	57
	등급구분위반	8	9	-	-	-	-	-	1
계		4,506	42,590	11,051	69,338	12,353	65,238	18,139	122,326
온라인게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사설서버	3,868	6,884	3,464	5,844	6,317	9,141	5,343	10,301
	환전행위	10	20	133	266	793	1,074	14,678	16,764
	핵/오토	728	1,120	868	1,631	1,210	2,335	3,881	7,327
	대리게임	-	5	-	24	-	4	2,162	3,721
	등급미필제공	516	609	394	490	48	140	1,538	2,313
	웹보드시행령	22	36	2	20	7	24	1	1,213
	내용수정신고	21	806	13	22	2	6	12	163
	광고·선전	-	3	-	3	41	57	21	118
	표시의무위반	5	33	-	2	-	1	6	428
	등급적정성	3	527	14	239	1	460	-	199
	사행행위방조	-	3	-	2	-	2	-	5
	등급내용위반	40	62	3	4	-	-	-	-
	사행성조장	6	8	4	7	-	1	11	16
	등급구분위반	59	71	11	17	-	2	26	28
	기타	13	306	1	891	8	1,464	6	2,807
합계		5,291	10,493	4,907	9,462	8,427	14,711	27,685	45,403
총합계		<b>9,797</b>	<b>53,083</b>	<b>15,958</b>	<b>78,800</b>	<b>20,780</b>	<b>79,949</b>	<b>45,824</b>	<b>167,729</b>
구 분		2020년		2021년		계('16~'21)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자체등급분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	등급적정성	14,270	100,785	10,290	93,654	70,601	416,376		
	표시의무위반	-	5	3,537	10,371	3,537	87,921		
	등급구분위반	1	2	-	-	9	12		
계		14,271	100,792	13,827	104,025	74,147	504,309		
온라인게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사설서버	23,721	30,325	29,684	41,116	72,397	103,611		
	환전행위	9,525	12,304	6,083	6,880	31,222	37,308		
	핵/오토	9,442	15,258	6,680	11,209	22,809	38,880		
	대리게임	1,509	1,888	680	1,375	4,351	7,017		
	등급미필제공	761	1,252	238	366	3,495	5,170		

구 분		2020년		2021년		계('16~'21)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행정조치	모니터링
	웹보드시행령	34	884	11	451	77	2,628
	내용수정신고	32	2,116	11	33	91	3,146
	광고·선전	32	1,378	34	589	128	2,148
	표시의무위반	15	26	-	4	26	494
	등급적정성	-	129	1	19	19	1,573
	사행행위방조	-	-	7	166	7	178
	등급내용위반	11	28	35	45	89	139
	사행성조장	-	10	2	17	23	59
	등급구분위반	-	2	1	2	97	122
	기타	582	4,216	91	2,643	701	12,327
합계		45,664	69,816	43,558	64,915	135,532	214,800
총합계		<b>59,935</b>	<b>170,608</b>	<b>57,385</b>	<b>168,940</b>	<b>209,679</b>	<b>719,109</b>

주. 자체등급분류 등급적정성 실적은 2016년 이후부터 발생하였고 2015년 이전에는 실적이 없음. 2016년 5월 29일 법률이 개정되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런데 2021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의 수는 95만 2,185건에 달하고, 이는 자체등급분류에 따라 분류된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에 대하여 모니터링단이 사후 점검하는 게임물의 비율이 전체 대상 게임물의 약 9.8%(=93,654/952,185\*10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건의 게임물이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되면 그 중 1건 정도만 위원회의 모니터링단에 의하여 등급 적정성이 관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점검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물 등의 광고·선전 행위, 사행성 및 사행행위, 사설서버 운영 및 자동프로그램 등의 점검 등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 게임물 현황]

(단위: 건)

구분	등급주체	플랫폼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구글(Google), 애플(Apple)	모바일	895,862
	기타(MS, 오컬러스 등)	비디오·콘솔, PC온라인 등	56,323
합계			952,185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단의 업무는 등급을 최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급분류된 게임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등급분류된 게임 전부를 사후에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후관리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10%가 채 되지 않는 현행 모니터링 실적은 낮은 측면이 있다는 점<sup>7)</sup>, 등급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하락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수준에서보다 모니터링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sup>8)</sup>. 특히, 구글, 애플 등 대형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대거 지정된 후인 2019년부터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만여 건이 넘는 행정조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의 합계를 보면, 총 31만 6,707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4만 2,699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3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수는 273만 750개로, 약 11.6%의 게임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7)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의 작동을 위해서는 최소 과반에 가까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효용가치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기준은 40%로 제시되었던 바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의 사회적 영향분석 및 모니터링단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용역 결과보고서, 2020.10., 143면.)

8)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을 선정할 때 최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우선하고, 청소년 보호 목적의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등급 부적정 우려가 높은 장르(액션, 슈팅 등)를 최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유통 마켓 내 필터링 된 인기게임물 및 매출 순위 게임물을 차순위로 선정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올바른 연령등급 선도 목적의 모니터링 대상 선정 시 각 사업자별로 균등한 비율로 랜덤 표본 추출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실적 중 행정조치 건수 비율]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행정조치(a)	18,139	14,270	10,290	42,699
등급적정성 모니터링(b)	122,268	100,785	93,654	316,707
(a/b)	14.8%	14.2%	10.1%	13.5%
자체등급분류 현황(c)	795,268	983,297	952,185	2,730,750
(b/c)	15.3%	10.3%	9.8%	11.6%

- 주1. 자체등급분류 현황은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수로 등급분류게임물과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을 각각 합산한 것임
- 주2. 2016년 5월 게임법이 개정되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2018년부터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게임물과 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을 각각 수평하였으므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황을 기재함
-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인원은 230명이다. 이 중 200명은 상시 근무 인력이 아닌 일 3시간의 재택 근무 인력이다. 2021년 모니터링단 1인당 처리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재택형 모니터링단의 경우 1인당 484건을, 상주형 모니터링단의 경우 1인당 2,866건을 처리하였다.

[2021년도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 1인당 실적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재택형 모니터링단	상주형 모니터링단
21년 모니터링건수	96,791	85,976
인원수	200	30
연간 1인당 처리실적	484	2,866
1일 평균 처리실적	3	13.98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채용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택형의 경우 연간 약 150~160일, 상주형은 약 205일 가량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주형의 경우 1일 평균 13.98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9)</sup>. 「2021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 실무」에 따르면 모

9) 재택형 모니터링단의 경우 1일 업무량(모니터링 건수)가 3건으로 고정되어 있어, 별도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표에도 1일 평균 처리실적을 3건으로 제시하였다.

니터링단이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는 폭력성/선정성/사행성/공포/언어/약물/범죄 항목 등으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 사회상규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거나 풍자, 비판 등의 별도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일부 사행성이 있는 콘텐츠가 게임물의 주 요소인지 여부, 선정성·폭력성이 희화화되어 표현되었는지 여부 등 게임물의 세부적인 영역까지 판단하고, 체크리스트상 부적정한 요소가 있는 경우 채증자료를 수집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의 등장과 종전 정부기관 주도적인 게임물 규제 체계의 민간 이양 등을 위하여 2011년 모바일게임의 제한적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체계적인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업무 효율화 등 사업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저조한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모니터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 가. 현황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1)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sup>2)</sup>. 동조 제6항은 한국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두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근거 법령에 따라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문화재 관련 교육·출판·학술조사·연구,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문화재 보호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지원’ 사업<sup>3)</sup>은 한국문화재단의 경상운영비, 사업비, 위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3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한국문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교부<sup>4)</sup>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문화재 재단 지원	11,331	11,331	-	-	11,331	11,331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81)

1)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한국문화재단의 전신은 1980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한국문화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3431-306

4) 민간경상보조(320-01)는 경상운영비, 정보화사업비, 유네스코 무형유산자문기구 활동비 등이 해당되고,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전수교육관·한국문화의 집의 공연사업비 및 관리위탁비 등이 포함된다.

##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재단은 위촉(전문)직 선발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지침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므로 향후 위촉(전문)직 심사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위촉(전문)직이란 한국문화재단이 재단 목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적, 경험적, 학문적 성과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sup>5)</sup>. 이에 한국문화재단은 「위촉(전문)직 운영에 관한 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두어 위촉(전문)직을 선발·활용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운영세칙의 경우 2017년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에 따라 위촉(전문)직의 모집 방법과 심사 절차에 다소 변경이 있었다. 특히 2020년 8월 개정으로 위촉(전문)직의 선발 절차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전환된 것은 선발의 투명성에 비추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어졌으며, 외부위원도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던 요건이 없어지고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두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일부 요건은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이후 2021년 지침이 다시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의 경우 심사위원을 3명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5) 「위촉(전문)직 운영에 관한 세칙」 제2조

[한국문화재단 위촉(전문)직 관련 운영세칙 변경 내역]

구분	2017년 11월 개정 지침	2020년 8월 개정 지침	2021년 3월 개정 지침
시행일	2017.11.28.	2020.8.1.	2021.3.1.
선발 원칙	원칙상 공모 외 임용,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원칙상 공개모집, 필요한 경우 비공모	원칙상 공개모집, 필요한 경우 비공모
심사 절차	서류+면접 심사위원회 심사	(공모)서류+면접 (비공모)추천서+심사위원회 심사	(공모)서류+면접 (비공모)추천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위원회	5명 이상의 위원,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	1명 이상 외부위원	3명 이상의 위원, 1명 이상 외부위원
비고		예외적으로 3개월 이하 활용 시 부서장이 위촉 가능	예외적으로 3개월 이하 활용 시 별도 위촉절차 없이 부서장이 위촉 가능

자료: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리하면, 2020년 8월 이후 위촉(전문)직 선발 시에는 원칙상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①모집분야의 전문가가 한정적인 경우, ②공개모집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성과가 우수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④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외에 추천을 통한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선발하더라도 추천서를 제출하고,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sup>6)</sup>.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문화재단의 위촉(전문)직 선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침 미준수사항이 발견되었다.

**①공개모집 절차에서 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거나 서류전형을 누락한 사례**

한국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위촉(전문)직은 총 10명이다. 2020년 8월 이후 운영세칙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지만, 2020년 위촉인원은 45명, 2021년은 57명으로 재단에서 선발하는 위촉(전문)직은 대부분 현재까지 비공모 방식으로 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2021년 3월 개정 이후에는 3명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한국문화재단재단 위촉(전문)직 공모 및 비공모 선발 현황]

연도	공모 인원	비공모 인원	비공모 인원에 대한 비공모 사유
2019	1명	37명	3개월 미만 위촉 13명, 모집분야 전문가 한정적, 재위촉(전문성, 성과 우수) 등 24명
2020	3명	45명	3개월 미만 위촉 11명, 모집분야 전문가 한정적, 재위촉(전문성, 성과 우수) 등 34명
2021	6명	57명	3개월 미만 위촉 25명, 모집분야 전문가 한정적, 재위촉(전문성, 성과 우수) 등 32명
계	10명	139명	

자료: 한국문화재단재단

한국문화재단재단은 2020년 2월 24일 위촉(전문)직 공개모집을 위하여 공고하고 선발 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운영세칙에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였다(아래 연번2 참조). 1차 및 2차 전형에서는 모두 3명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외부위원은 1명이었다.

[2019~2021년 한국문화재단재단 위촉(전문)직 공개모집 현황]

연번	공고일	최종 선발	심사위원 수		최종 선발일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위촉료 (천원)
			1차 서류	2차 면접				
1	2019.3.13	1명	5명(3명)	5명(4명)	2019.3.29.	2019.4.3.	8개월	27,522
2	2020.2.24	1명	3명(1명)	3명(1명) *중복 3명	2020.3.2.	2020.3.3.	9개월	23,640
3	2020.7.7	1명	5명(3명)	5명(3명)	2020.7.24.	2020.7.24.	4개월	15,000
4	2020.7.7	1명	5명(3명)	5명(3명)	2020.7.24.	2020.7.24.	4개월	15,000
5	2020.12.15	1명	4명(1명)	4명(1명)	2021.1.12.	2021.1.13.	11개월	25,548
6	2021.1.7	1명	-	3명(1명)	2021.1.29.	2021.2.1.	3개월	6,600
7	2021.2.5.	1명	2명(1명)	3명(1명)	2021.2.23.	2021.3.2.	9개월	25,000
8	2021.3.11	1명	3명(1명)	3명(1명)	2021.3.26.	2021.4.1.	11개월	33,600

연번	공고일	최종 선발	심사위원 수		최종 선발일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위촉료 (천원)
			1차 서류	2차 면접				
9	2021.11.1	1명	7명 (5명 포함)	7명(5명) *중복3명 (내부2명, 외부1명)	2021.11.23.	2021.12.1.	10개월	55,000
10	2021.11.22	1명	3명(2명)	3명(1명) *중복2명 (내부1명, 외부1명)	2021.12.8.	2021.12.13.	10개월	30,000

주1. ( )안의 숫자는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의 숫자를 의미함

주2. '중복'은 1차 전형과 동일인이 2차 전형에 참여한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문화재단

또한, 한국문화재단은 2021년 1월 위촉(전문)직을 선발하면서 발표한 공고문에서는 1차 서류심사(2021.1.18.), 2차 면접심사(2021.1.20.)를 거쳐 선발한다고 공지하였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서류 검토 후 2차 전형으로 넘어갔다(연번 6번).

공개모집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기관의 지침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촉(전문)직 선발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sup>7)</sup>.

## ②비공모 선발 절차에서 추천서 작성을 누락한 사례

2020년 8월 개정된 운영세칙에 따르면,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위촉(전문)직을 선발하는 경우, 활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서에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추천서에는 추천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를 작성하고 이력서와 참고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세칙에서는 [별표2]로 따로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한국문화재단은 해당 건의 경우, 1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1인이 응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류 적격심사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서 양식]

<b>추천서</b>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위 사람은 위촉(전문)직 운영에 관한 세칙 제4조제1항, 제4항에 따라 _____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할 것을 추천합니다.
첨부1. 이력서 1부. 2. 참고서류 1부.	20 . . . . . 추천자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자료: 「위촉(전문)직 운영에 관한 세칙」

한국문화재단이 공모절차 외에 선발한 인원으로서 3개월이 넘는 기간을 활용하고, 또한 2020년 8월 1일 이후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위촉(전문)직은 2020~2021년 총 37명이다. 그런데 한국문화재단은 이 중 24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추천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선발하였다.

추천서에는 단순히 추천대상자의 정보 뿐 아니라 실제 추천을 한 자의 소속과 직위가 포함되어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재단 운영세칙에 의해서도 추천서의 작성과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③비공모 선발 절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선발한 사례**

2020.8.27. 이후 개정된 한국문화재단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비공모 절차에 의하여 위촉(전문)직을 선발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위촉(전문)직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재단은 2021년 11월 교과서 집필과 관련하여 위촉(전문)직 7명(집필위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선정하였다. 해당 위촉(전문)직의 경우, 계약서상 9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 작성 후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운영세칙상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sup>8)</sup>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심사위원회의 구성 없이 선발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위촉(전문)직의 경우 기관 외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단기에 활용하여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문화재단은 위촉(전문)직의 운영에서 공개모집 절차와 비공모 절차에서 모두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투명한 위촉(전문)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

8) 2021.3.4. 개정된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촉(전문)직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 ②1회성 심사 또는 강의, ③배우, 연주자의 출연 또는 문화행사 보조스텝 등의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부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가. 현황

한국마사회<sup>1)</sup>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말 산업 육성 및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공기업으로, 자체예산을 통하여 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2021년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의 정부지원수입은 경마 사업으로 획득한 수입 1조 495억 7,300만원을 포함한 1조 584억 6,600만원이었으며 부대 수입은 868억 8,300만원이었다. 지출 규모는 인건비 1,176억 4,100만원, 경상운영비 332억 3,000만원, 사업비 1조 2,524억 8,600만원 등을 합한 1조 1,453억 4,800만원이었다.

[한국마사회 2020년 및 2021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수입	정부 지원 수입	직접지원(보조금)	7,289	8,893
		간접지원(독점수입)	1,090,524	1,049,573
		소계	1,097,813	1,058,466
	부대수입	45,541	86,883	
수입 합계		1,143,354	1,145,348	
지출	인건비	135,586	117,641	
	경상운영비	42,305	33,230	
	사업비	1,305,815	1,252,486	
	기타	△340,352	△258,009	
	지출 합계	1,143,354	1,145,348	

주1. 독점수입이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 사업으로 획득한 수입

주2. 결산잉여금을 집계하지 않는 기관에 해당함

자료: 한국마사회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계약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다.

한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sup>3)</sup>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도급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대상 및 그 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또한, 「인지세법」 제1조제2항<sup>4)</sup>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제5조(계약의 원칙)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 「인지세법」

#### 제1조(납세의무)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인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방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계약건수 180건에 따른 인지세 부과 금액이 894만원임에도, 한국마사회는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방이 이를 전액 부담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지세 부담 전가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2019년의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한 인지세 총액은 3,162만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103만원의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체결 계약의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부담주체별 총 납부금액	
			한국마사회	계약상대방
2017	426	330	0	330
2018	424	5,930	0	5,930
2019	561	31,620	0	31,620
2020	433	24,210	0	24,210
2021	180	8,940	0	8,940
합계	2,024	71,030	0	71,030

자료: 한국마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이 인지세 부담을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2020년부터 에너지 분야(2020.6), 교통분야(2020.9), 도시개발 분야(2020.10), 관광·레저 분야(2020.11)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286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부담과 관련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인지세를 2019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6월 인지세 지급 업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분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기관도 2021년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연대하여 납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전액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방식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인지세 부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마사회는 서울(과천), 부산, 제주에서 실제 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장(본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경마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한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는 서울 9개소, 경기 8개소 등 수도권 21개소와 지방 6개소로 총 27개소이며, 이 중 15개소가 한국마사회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이며 12개소가 임차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수도권(21개소)			지방(6개소)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충남	경남	
소유	4	5	3	1	-	1	1	-	15
임차	5	3	1	-	2	-	-	1	12
합계	9	8	4	1	2	1	1	1	27

자료: 한국마사회

##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과다하여 사행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0년에 수립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sup>1)</sup>에서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역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 p. 13~14, 2020

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주거권, 학습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여 평가하는 사전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몰입 완화 시설과 상담시설을 증설하고, 베티ng시설물을 은폐하며,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경마 투표권을 구입함에 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도박 활동을 야기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본장의 경우 경마 투표권 발매 외에도 다수의 공원시설이나 관람시설,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레저 및 오락의 용도로 함께 활용이 가능하나, 장외발매소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시설이나 관람시설, 체험시설 등이 적어 본장에 비해 레저나 오락 기능이 부족하며, 도심이나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실제 연도별 1인당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경마본장의 1인당 매출액은 70만 6,000원인 반면,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은 84만 8,000원으로,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이 경마본장에 비해 20%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주당 1인 10만원 이내의 마권구매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장외발매소가 본장에 비해 1인당 마권구매 횟수가 더 많거나 베티ng금액이 더 크다는 것으로, 장외발매소의 사행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마사회 경마본장과 장외발매소 1인당 매출액 현황]

연도	매출액(백만원)		입장인원(명)		1인당 매출액(천원)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2017	2,301,411	5,500,042	4,961,419	7,968,177	464	690
2018	2,229,373	5,308,255	4,641,776	8,038,702	480	660
2019	2,186,688	5,170,547	4,644,505	8,068,468	471	641
2020	317,174	771,873	577,723	1,150,393	549	671
2021	271,662	775,935	384,841	914,813	706	848

자료: 한국마사회

특히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높은 1인당 매출액은 최근 5년간 매년 지속된 현상으로, 2017년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이 경마본장에 비해 약 4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사행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의 추가 신설을 지양하고, 2013년 수준으로 영업장 수를 유지<sup>2)</sup>하는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장외발매소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의 경우 경마본장에 비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연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으며, 2021년의 경우 기존에 비해 더 그 비율이 더 높아진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은 매년 70%대로 높은 수치를 지속하였다. 특히, 2021년의 경우 경마본장의 매출액은 약 2,720억원인데 비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약 7,760억원으로 그 비중이 74%였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제일 높은 수치이다.

2) 본장 27개소, 장외발매소 73개소가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단위: 십억원, %)

연도	경마본장(A)	장외발매소(B)	합계(C=A+B)	장외발매소 비중(B/C)
2012	2,179	5,660	7,840	72.2
2013	2,109	5,545	7,655	72.4
2014	2,158	5,488	7,646	71.8
2015	2,425	5,307	7,732	68.6
2016	2,395	5,350	7,746	69.1
2017	2,301	5,500	7,801	70.5
2018	2,229	5,308	7,537	70.4
2019	2,187	5,170	7,357	70.3
2020	317	772	1,089	70.9
2021	272	776	1,048	74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장외발매소의 높은 사행성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기존에 비해 더욱 높아진 바, 한국마사회는 전체 매출액 중 본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마사회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2월까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2021년 5월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21년 5월 28일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였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20년 2월까지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입장인원은 1,125명으로, 마권발매액은 144억원이며, 최근 5년간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입장인원은 총 2만 8,991명, 마권발매액은 총 4,67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 장외발매소 이용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2	계
연간입장인원	3,229	8,376	8,366	7,895	1,125	28,991
마권발매액	589	1,599	1,115	1,226	144	4,673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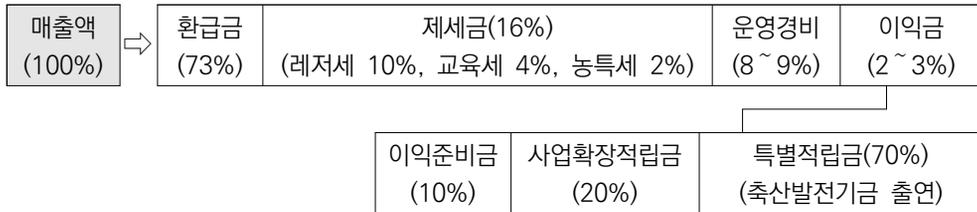
### 나. 분석의견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환급률이 한국마사회 전체 환급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일반 발매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향후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재개장하는 경우 과다한 환급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마 환급금이란 마권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한 경우 마권구매자가 구매한 마권의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경마 매출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레

저세와 교육세, 농특세 등 매출액의 16%를 제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금은 총 매출액 중 제세금과 운영경비, 이익금을 제외한 73%를 적중 단위 마권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마 수익금 처리 구조]



자료: 한국마사회

한편, 한국마사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마권발매액은 144억원인 반면, 환급액은 154억원으로 환급률이 106.8%에 달한다. 이러한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높은 환급률은 최근 5년간 지속되었는데, 2016년의 경우 마권발매액은 589억원인 반면 환급액은 684억원으로 환급률이 116.1%에 달하였다.

특히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높은 환급률은 한국마사회 전체 환급률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의 경우 한국마사회 전체 환급률은 70.2%로,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급률은 이에 비해 36.6%p나 높은 상황이며, 2016년의 경우 그 차이가 45.5%p까지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급률 현황]

(단위: 명, 억원, %)

연도	외국인 장외발매소				마사회 전체 환급률
	연간입장인원	마권발매액	환급액	환급률	
2016	3,229	589	684	116.1	70.6
2017	8,376	1,599	1,712	107.1	70.2
2018	8,366	1,115	1,169	104.8	70.1
2019	7,895	1,226	1,328	108.3	70.1
2020	1,125	144	154	106.8	70.2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5년간 외국인 장외발매소는 환급률이 100%보다 높아 마권발매액보다 환급액이 많았다. 즉,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경우 일반 장외발매소나 경마본장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장외발매소나 경마본장에서의 영업수익으로 외국인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충당하는 구조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과도하게 높은 환급률은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마사회의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이용약관」<sup>1)</sup>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매소에서 「승마투표약관」에 따라 경주당 1인 10만원 이내의 마권구매 한도를 적용한 것과 달리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는 이러한 마권구매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마본장이나 일반 장외발매소와 달리 외국인 장외발매소는 소규모로 이용가능한 회원실 6개와 일반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실별로 3~4명의 전담 발매직원을 계속 배치하고 있어 마권 발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장외발매소에서는 구매한도의 제한 없이 마권구매가 가능하며 비교적 대기 시간 없이 보다 손쉽게 마권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경마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발매 창구나 무인 발매기에서 순서에 따라 대기하여 경주당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추가로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순서를 기다려 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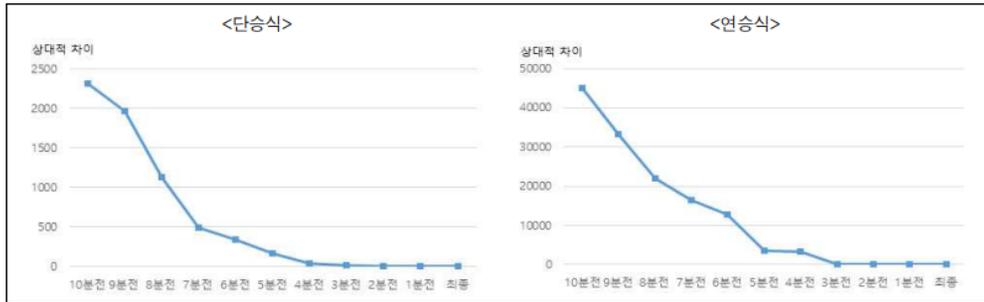
그러나 경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시간 배당률과 최종배당률의 차이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구매 마권에 따른 환급액을 계산한 후 가능한 구매시점을 늦춰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실시간 배당률과 최종배당률은 단승식, 연승식 모두 구매 마감 5분을 기준으로 상대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이용약관」

제6조(마권구매) 마권구매는 한국마사회법령과 경마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마권구매 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배당률과 최종배당률의 상대적 차이]



자료: 감사원

실제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체 마권발매액의 89.2%가, 내국인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체 마권발매액의 74.5%가 발매 마감 전 5분 이내에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마 마권 발매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발매소의 유형에 따라 구매한도 및 구매대기시간 등 외국인과 내국인의 배팅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높은 환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경우 마권구매한도의 제한이 없어 한 번에 높은 금액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경마분장이나 일반적 장외발매소에 비해 비교적 대기 시간 없이 마권 구매가 가능함에 따라 구매 마감 직전에 보다 높은 금액의 마권 구매가 손쉽게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경마 환급금을 결정짓는 배당률은 승마투표자 상호 간 경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환급률이 높은 것은 내국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장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장외발매소를 2021년 5월 폐장하였으나,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이용약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향후 외국인 장외발매소를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이용약관」에 대한 개정 및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향후 외국인 장외발매소를 재개장하는 경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농어촌공사<sup>1)</sup>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21년 수입은 보조금 1,518억원, 이전수입 2조 3,489억원, 위탁수입 1조 6,125억원 등 4조 3,903억원의 정부지원수입과 200억원의 정부출자금 등을 포함한 4조 4,518억원이었으며, 2021년 지출은 사업비 3조 7,586억원 등을 포함한 4조 4,518억원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수입	정부 지원 수입	직접지원	보조금	151,800	이전수입	2,348,900
		간접지원	사업수입	277,100	위탁수입	1,612,500
		소계	4,390,300			
	부대수입		41,500			
	정부출자금		20,000			
	수입 합계		4,451,800			
	지출	인건비		430,800		
경상운영비		164,600				
사업비		3,758,600				
기타		97,800				
지출 합계		4,451,8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계약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부당한 특약등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다.

한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sup>3)</sup>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도급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대상 및 그 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또한, 「인지세법」 제1조제2항<sup>4)</sup>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도급계약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지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방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계약건수 1,435건에 따른 인지세 부과금액이 1억 3,078만원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방이 이를 전액 부담하였다. 특히 이러한 인지세 부담 전가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최근 5년간 총 6억 520만원의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체결 계약의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부담주체별 총 납부금액	
			한국농어촌공사	계약상대방
2017	1,659	139,510	0	139,510
2018	1,601	131,250	0	131,250
2019	1,062	88,100	0	88,100
2020	1,368	115,560	0	115,560
2021	1,435	130,780	0	130,780
합계	7,125	605,200	0	605,2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이 인지세 부담을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2020년부터 에너지 분야(2020.6), 교통분야(2020.9), 도시개발 분야(2020.10), 관광·레저 분야(2020.11)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286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부담과 관련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4)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인지세를 2019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6월 인지세 지급 업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분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역시 2021년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연대하여 납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전액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방식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인지세 부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가. 현황

농촌용수관리 사업<sup>1)</sup>은 농촌용수의 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자동화하고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 및 개선 등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총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이러한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농업용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조사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수시설에 대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거나 침강지 설치 등을 통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35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실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촌용수관리	94,799	94,799	3,401	98,200	96,803	-	1,397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35,380	35,380	-	35,380	35,38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수질개선공사를 시행한 시설 중 수질개선성도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므로 해당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 수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8-310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매년 975 개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수질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5년 평균의 농업용수 수질이 V등급(나쁨) 이상(TOC 6mg/L 초과)인 시설에 대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sup>2)</sup>은 생활환경 수질기준을 총유기탄소량(TOC) 등을 기준으로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경우 통상 IV등급(약간 나쁨, TOC 6mg/L 이하)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생활환경 수질기준 현황(TOC 기준)]

(단위: mg/L)

구분	Ia등급 (매우 좋음)	Ib등급 (좋음)	II등급 (약간 좋음)	III등급 (보통)	IV등급 (약간 나쁨)	V등급 (나쁨)	VI등급 (매우 나쁨)
총유기 탄소량	2 이하	3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8 이하	8 초과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농업용수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의 경우 총 27개소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08억 8,000 만원을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6곳에 대하여 시공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규로 착공한 저수지 4곳, 계속 시공 중인 저수지 12곳, 2021년에 준공 완료된 저수지 5곳을 포함하여 총 21개소에 대하여 시공을 진행하였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집행액	개소									
총계	16,934	21	25,200	25	26,731	26	28,735	25	30,880	27	
기본조사	680	4	1,190	7	1,424	8	680	4	1,474	6	
시 공	계	16,114	17	23,840	18	25,097	18	27,825	21	28,746	21
	신규	265	3	400	4	600	6	940	7	400	4
	계속	12,349	11	14,582	7	19,809	8	23,581	10	20,132	12
	준공	3,500	3	8,858	7	4,688	4	3,304	4	8,214	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동 사업은 식물이나 토양,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인공습지 중심의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질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공습지의 식생 및 토양 미생물 등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준공 5년 이후를 수질개선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준공이 완료되어 2021년이 목표 연도로 설정되어 있는 시설은 총 22개이며, 해당 시설들의 수질개선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669억 6,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목표연도가 도달한 수질개선시설의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시설명	위치	총사업비	연번	시설명	위치	총사업비
1	홍동	충남 홍성	3,810	12	상성	충남 아산	1,929
2	개천	경북 의성	2,469	13	도덕	전남 고흥	1,435
3	가산	경남 밀양	2,955	14	동방	경기 화성	4,366
4	궁산	전북 고창	3,694	15	도고	충남 아산	5,983
5	월천	전남 함평	2,124	16	양전	충남 천안	2,355
6	설성	경기 이천	2,454	17	만수	경기 안성	2,740
7	성암	충남 서산	6,268	18	왕송	경기 의왕	3,609

연번	시설명	위치	총사업비	연번	시설명	위치	총사업비
8	둔전	전남 진도	2,515	19	석남	전북 고창	1,562
9	대승	경북 영천	2,643	20	연봉	전남 고흥	1,511
10	신휴	충남 아산	2,494	21	홍양	충남 홍성	4,285
11	승언2	충남 태안	2,016	22	하빈	경북 칠곡	3,74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그러나 이러한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준공된 시설들 중 여전히 수질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시설들이 존재한다.

[2021년 기준 목표연도가 도달한 수질개선시설의 최근 5년간 수질 현황]

연번	시설명	착공	준공	연도별 수질(TOC, mg/L)				
				2017	2018	2019	2020	2021
1	홍동	'07	'09	4.6	3.8	3.9	5.2	5.8
2	개천	'07	'09	8.6	9.8	9.5	11.4	10.0
3	가산	'08	'10	3.5	3.8	4.1	3.8	4.2
4	공산	'09	'11	4.6	4.4	4.5	4.3	4.8
5	월천	'09	'11	4.7	5.5	5.7	5.4	6.2
6	설성	'10	'12	6.7	7.4	7.6	7.8	7.4
7	성암	'09	'12	4.8	4.1	4.4	5.4	5.2
8	둔전	'10	'12	5.9	5.6	5.4	5.7	5.5
9	대승	'10	'12	5.6	5.7	7.3	7.4	6.8
10	신휴	'11	'13	(8.8)	6.6	5.2	7.2	5.3
11	승언2	'11	'13	(5.5)	4.0	4.8	5.9	4.9
12	상성	'11	'13	(6.3)	5.1	5.7	4.4	4.9
13	도덕	'11	'13	(5.2)	5.9	5.1	4.6	5.8
14	동방	'11	'14	(6.2)	(6.9)	6.1	6.0	5.8
15	도고	'10	'14	(6.3)	(5.1)	4.1	4.8	5.3

연번	시설명	착공	준공	연도별 수질(TOC, mg/L)				
				2017	2018	2019	2020	2021
16	양전	'12	'14	(8.4)	(7.1)	5.2	5.5	5.4
17	만수	'12	'15	(9.5)	(8.9)	(10.1)	8.7	8.9
18	왕송	'12	'15	(5.3)	(5.8)	(5.3)	5.5	5.4
19	석남	'13	'15	(5.6)	(5.9)	(4.9)	5.8	5.6
20	연봉	'13	'15	(4.7)	(5.2)	(3.8)	4.2	4.8
21	홍양	'13	'16	(6.0)	(5.6)	(4.9)	(5.6)	5.9
22	하빈	'12	'16	(7.2)	(8.2)	(7.3)	(7.2)	5.9

주: 괄호 안은 목표연도 도달 전 수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수질을 기준으로 22개의 시설 중 수질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수 목표 기준인 IV등급(약간 나쁨, TOC 6mg/L 이하)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은 총 5곳(개천, 월천, 설성, 대승, 만수)으로, 수질개선공사에도 불구하고 약 23%에 해당하는 시설이 2021년에 목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추가로 5곳(홍동, 도덕, 동방, 홍양, 하빈)의 시설이 2021년 수질이 각각 5.8이나 5.9로 해당 기준을 가까스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특히 목표 연도가 2019년 이전인 16개의 시설 중 3년 이상 매년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시설은 총 10곳(홍동, 가산, 궁산, 성암, 둔전, 승언2, 상성, 도덕, 도고, 양전)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63%만이 목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수질 개선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6곳(개천, 월천, 설성, 대승, 승언2, 도고)의 경우 수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수질개선사업 효과의 지속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 왕송, 석남, 연봉, 홍양의 5개 시설의 경우에는 목표 연도에 전년 대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등 유의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시설 중 상당 시설의 경우 저수지 상류

3) 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시설들의 경우 당초 사업 설계 시 목표가 TOC 6mg/L로 사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 등 오염유발 시설을 신규로 허가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월천 시설의 경우 2017년부터 수질이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2017년에 시설 상류 부근에 9개의 양만장이 신규로 허가되고 해당 시설들에서 TOC 4.7~23.8mg/L의 방류수가 배출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시설 등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저수지 주변 및 상류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및 단속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점 및 수질개선사업과 오염원 감축·억제가 병행되지 못한 점도 수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사업의 사업수행주체로서 수질개선 실적이 미흡한 시설들에 대하여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화시설 보수나 추가적인 개선 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수질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공법 도입 등 사업설계 및 공사 진행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오염원 시설의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수지 수질 오염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 및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단가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등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sup>1)</sup>은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이농 농업인 및 비농업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영농규모나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농지가격이나 임차료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인 농지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및 유희농지 자원조사,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의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7,717억 8,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771,785	771,785	-	771,785	771,785	-	-
공공임대용	694,400	694,400	-	694,400	694,400	-	-
농지매매용	53,359	53,359	-	53,359	53,359	-	-
임차임대용	22,413	22,413	-	22,413	22,413	-	-
교환분합용	172	172	-	172	172	-	-
유희농지 자원조사	1,000	1,000	-	1,000	1,000	-	-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441	441	-	441	441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지관리기금 1160-350

한편 동 사업에서 임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용자함에 따라 용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수입과 용자에 대한 이자수입은 각각 농지관리기금의 ‘기타민간용자 원금회수’와 ‘기타민간이자수입’ 항목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1년의 경우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에 대한 용자원금 회수는 징수결정된 1,826억 6,800만원 중 1,825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고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1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 수입의 경우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내역사업에 대한 이자 수입은 징수결정된 111억 4,500만원 중 107억 300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 4,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의 경우 징수결정된 80억 5,900만원 중 79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고 9,6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 용자 원금 및 이자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477,760	477,760	-	477,760	534,778	534,706	72
맞춤형농지지원	183,730	183,730	-	183,730	182,668	182,596	72
기타민간이자수입	61,697	61,697	-	61,697	91,882	47,175	44,707
맞춤형농지지원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11,729	11,729	-	11,729	11,145	10,703	442
맞춤형농지지원 (공공임대용) 임대료	19,815	19,815	-	19,815	8,059	7,963	9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6-1. 공공임대용 내역사업 및 교환분합 내역사업의 목표 달성을 저조 개선 필요

### 가. 현황

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 농업인, 이농·전업 농업인으로 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이나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5~10년에 걸쳐 이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농이나 일반농업인 등 지원농가에게 이를 임대하며, 이들에게 임대료 수입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기타민간이자수입' 항목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지 임대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용 사업의 임대료는 해당 지역별 임대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지원농가와 협의의 통해 결정된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6,944억원으로 전액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집행되었으나, 2021년 연말까지 실집행액은 6,239억 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9.8%이다.

[2021회계연도 공공임대용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771,785	771,785	-	771,785	771,785	675,090	96,695	87.5
공공임대용	694,400	694,400	-	694,400	694,400	623,901	70,499	89.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동 내역사업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수입액의 경우 2021년 81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80억원을 회수하여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8%였다. 또한 동 수입액은 최근 5년간 임대료 수입계획 380억원 중 374억원을 회수·수납함에 따라 수납률은 98.3%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회수계획(A)	7,800	7,200	7,500	7,300	8,100	37,900
회수실적(B)	7,700	7,100	7,300	7,200	8,000	37,300
수납률(B/A)	98.7	98.7	97.5	98.5	98.0	98.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공공임대용 사업을 통해 매입한 농지의 임대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1만 280ha에 대하여 임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9,770ha에 대하여 실제 임대를 시행함에 따라 실적률은 95%에 달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임대실적은 3만 5,666ha로 계획 대비 실적률이 9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현황]

(단위: ha,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임대계획(A)	5,084	5,996	7,152	8,719	10,280	37,231
임대실적(B)	4,968	5,744	6,839	8,345	9,770	35,666
실적률(B/A)	97.7	95.8	95.6	95.7	95.0	95.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교환분합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거나 농민 상호 간에 토지 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 1%의 금리로 10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1억 7,200만원으로 전액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집행되었으나, 실집행액은 6,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36.6%이다.

[2021회계연도 교환분합용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771,785	771,785	-	771,785	771,785	675,090	87.5
교환분합용	172	172	-	172	172	63	36.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나. 분석의견

공공임대용 내역사업 및 교환분합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은 계획액 산출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사업 목표 및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획액 편성에 있어 사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용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임대용 사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3만ha를 비축하여 청년농 등에게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용 사업은 2021년 계획액 편성 당시 2,800ha에 대하여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집행 실적은 1,567ha에 불과하여 달성률이 60% 미만인 상황이다.

[공공임대용 사업의 2021년 계획액 편성 기준 및 실제 집행 현황]

구분	사업목표(ha)	단가(백만원)	계획액(백만원)
계획액 편성 기준	2,800	248	694,400
실제 집행 현황	1,567	398	623,901
목표 달성률(%)	56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공공임대용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89.8%의 실집행률을 보이는 등 계획액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양호함에도 사업의 농지매입면적 목표달성률이 저조하다. 이처럼 사업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액 편성 기준이 되는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계획액 편성 기준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사업의 단가를 ha 당 2억 4,8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 단가는 이보다 60% 이상 높은 3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단가의 과도한 차이는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문제로,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계획액 편성 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 간 오차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2021년 공공임대용 사업의 단가 차이]

(단위: 백만원/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편성 기준(A)	180	180	200	210	224	248
실제 집행 단가(B)	256	256	284	321	362	398
오차 비율(B/A)	142	142	142	153	162	16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처럼 단가의 괴리가 지속되고 사업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2030년까지 3만ha를 비축하여 임대하겠다는 동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계획액 편성 당시 사업목표와 실제 집행 실적을 비교할 경우 실제 집행 실적이 2016년부터 매년 계획한 사업목표에 미달한 상황이고, 2018년 이후부터는 사업 목표 달성률이 50~60%대에 머무는 등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6~2021년 공공임대용 사업의 목표 및 실적 차이]

(단위: 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편성 사업목표(A)	770	1,000	1,570	1,720	2,500	2,800
실제 집행 실적(B)	580	703	917	1,165	1,574	1,567
목표 달성률(B/A)	75.3	70.3	58.4	67.7	63	5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공공임대 사업의 경우 계획액 편성 시 실제 최근 5년간 집행실적 및 집행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환분합 내역사업 역시 계획액 산출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목표를 최근 결산치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교환분합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이나 농민 간 토지교환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액을 융자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환분합용 사업은 2021년 계획액 편성 당시 1.65ha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사업 집행 실적은 0.18ha에 불과하여 그 목표 달성률이 10.9%로 저조하다.

[교환분합용 사업의 2021년 계획액 편성 기준 및 실제 집행 현황]

구분	사업목표(ha)	단가(백만원)	계획액(백만원)
계획액 편성 기준	1.65	104.2	172
실제 집행 현황	0.18	352	63
목표 달성률(%)	10.9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환분합용 사업은 2021년의 단가를 1억 42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집행 단가는 이보다 3배 이상인 3억 5,2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임대용 내역사업과 같이 단가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가 차이 역시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오차 비율이 최소 188%부터 최대 338%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그 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1년 교환분합용 사업의 단가 차이]

(단위: 백만원/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편성 기준(A)	100	100	100	123	104.2	104.2
실제 집행 단가(B)	239	188	210	234	226	352
오차 비율(B/A)	239	188	210	190	217	33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교환분합용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업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목표 달성률을 저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교환분합용 사업의 2018년과 2019년 실제 집행 실적은 각각 1ha, 2020년 집행 실적은 0.3ha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실적이 0.77ha에 불과함에도 2021년 사업 목표는 1.65ha로 설정되어 그 오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 목표의 과다한 설정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2018년의 경우 사업목표 달성률이 13%에 불과하는 등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사업목표 달성률이 연례적으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8~2021년 교환분합용 사업의 목표 달성률 현황]

(단위: ha, %)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편성 기준(A)	7.7	2	1.65	1.65
실제 집행 실적(B)	1	1	0.3	0.2
목표 달성률(B/A)	13	50	18.2	12.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교환분합용 사업은 계획액 편성 시 사업 목표와 단가의 괴리가 연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문제 또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집행실적 및 집행 단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목표의 경우 실제 수요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6-2. 임차임대용 사업 실적 부진 및 높은 중도해지 비율 개선 필요

### 가. 현황

임차임대용 내역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5년~10년)를 선지급하고, 지원농가가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사후정산을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가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를 신청할 경우 5~10년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임차임대용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이나 일반농업인 등 지원 농가에게 임대하며 임차 기간동안 임차료를 수납받아 농지관리기금의 '기타민간이자수입' 항목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동 사업의 농지에 대한 임차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지역별 농지 임차료 조사 결과에 따라 상한을 정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도 계획액은 224억 1,300만원이며 전액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집행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05억 4,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7.1%이다.

[2021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771,785	771,785	-	771,785	771,785	675,090	87.5
임차임대용	22,413	22,413	-	22,413	22,413	10,547	47.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동 내역사업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수입의 경우 2021년 251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49억원을 회수하여 수납되어 수납률은 99.2%이고, 최근 5년간 임대료 수입계획 1,896억원 중 1,870억원을 회수·수납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수납률은 98.6%이다.

[최근 5년간 임차임대용 임대료 회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회수계획(A)	469	450	387	339	251	1,896
회수실적(B)	463	444	379	335	249	1,870
수납률(B/A)	98.7	98.7	97.9	98.8	99.2	98.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임차임대용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차임대용 내역사업의 경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계획액을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임차임대용 사업은 농지소유자에게 공사에서 임대기간동안의 임차료 총액을 선 지급하며, 지원농가에게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지원농가는 5년~10년의 임대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차임대용 사업은 2021년 계획액인 224억 1,3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05억 4,7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약 47.1%로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동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임차임대 사업 목표를 723ha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집행 실적은 306ha에 불과하여 그 달성률이 42.3%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임차임대용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단위: ha,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 목표(A)	2,137	1,492	940	885	723
집행 실적(B)	1,489	958	723	681	306
달성률(B/A)	69.7	64.2	76.9	76.9	42.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러한 목표 달성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5년간 목표 달성률이 60~70%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2021년의 경우 40%대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전년 목표 달성률 대비 약 55%에 불과한 수치로 목표 달성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 사업의 이러한 실적 부진 및 목표 달성률 저조 사유에 대하여 쌀값 상승과 공익직불금 제도 등 지원 확대에 인하여 농지소유자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고, 2021년 계획안 편성 당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쌀값의 지속적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동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2020년에 비해 쌀값이 하락했음에도 목표 달성률과 집행 실적은 부진하였다.

[2016~2021년 쌀값 상승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산지 쌀값(원/20kg)	32,200	39,031	48,293	47,578	54,455	51,254

자료: 통계청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공익직불금 제도<sup>2)</sup> 역시 2021년 계획액 편성 이후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1년 계획액 편성 당시 동 제도로 인하여 임차임대용 사업의 수요가 감소할 것은 일정 부분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임대용 사업의 실적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액 편성 당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목표 및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의 계획액을 편성하는 경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계획액을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목표를

2)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임대용 내역사업은 농업인의 직접 농업경영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 비율도 높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차임대용 내역사업은 동 사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원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중도해지 비율 또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하여 그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임차임대용 사업 중 직접 농업경영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비율]

연도	2018	2019	2020	2021
비율	19%	21%	23%	2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에 연 11%를 가산한 가산료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동 계약에 기반하여 경작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귀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기간이 5~10년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당 사업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의 중도해지 비율이 높을 경우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주 비용이나 앞으로의 경작 계획 등이 피해를 보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임대용 내역사업 중 농업인의 자경으로 인한 중도해지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연속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임차인들과 인근의 다른 경작가능한 농지와 매칭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등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sup>1)</sup>에 따라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동 기금은 농산물 수입이익금이나 비축농산물·종자 판매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농산물의 가격조절이나 수출 촉진, 도매시장·공판장 등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주요 재원 및 용도]

주요 재원	주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부담금(수입권 공매를 통한 농산물 수입 이익금)</li> <li>- 재고자산매각대(비축농산물·종자 판매 수입)</li> <li>- 융자금회수</li> <li>- 이자수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li> <li>- 농산물의 수출 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li> <li>-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운영 및 시설 설치 등</li> </ul>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sup>2)</sup>은 동 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sup>3)</sup>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맡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위탁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내 다수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21년 계획액은 당초 2조 6,051억 1,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1,800억원 증액된 2조 7,851억 1,8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중 2조 2,228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8%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2022 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계	2,338,959	2,274,335	2,605,118	2,785,118	2,222,826	79.8	2,584,159
농업신산업육성	22,500	22,500	26,000	24,000	23,721	98.8	26,000
식품외산업육성	574,196	656,616	662,102	684,691	651,411	95.1	674,549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1,435,332	1,365,888	1,453,069	1,456,747	1,399,047	96.0	1,611,690
종자관리	67,835	71,233	59,789	71,640	71,638	100	61,247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51,971	53,794	54,395	55,855	55,803	99.9	55,959
기금간거래	-	-	-	-	-	-	4,680
여유자금운용	187,125	104,304	349,763	492,185	21,206	4.3	150,0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21년 말 기준 현재 금융성 자산은 2,238억원으로, 총 자산인 3조 8,204억원의 5.9%에 해당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금융성 자산 중 장·단기 투자증권은 2,100억원으로 금융성 자산의 93.8%를 차지한다.

[2021년 말 기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금융성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장단기 금융상품	장단기 투자증권	정부내 장단기예탁금	소계	총자산	총자산 대비 비중
금액	138	2,100	-	2,238	38,204	5.9
비중	6.2	93.8	-	1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7-1. 수입의 감소 및 지출의 확대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 개선 필요

### 가. 현황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총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월액의 규모는 총 398억 2,500만원이다.

[2021년 농안기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용자)	372,882	372,882	-	372,882	365,697	7,185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0,903	88,492	-	88,492	75,446	13,046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34,508	34,063	-	34,063	14,469	19,594	-
합계(이월액)						39,825	-

주: 세부사업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21년 여유자금 잔액은 21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0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동 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여유자금 잔액은 2017년(약 3,032억원)의 약 7% 수준으로 그 잔액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년~2021년 농안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유자금 잔액	4,829	3,032	2,910	1,871	1,043	21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지출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5개의 세부사업에서 약 525억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1년 결산 기준 지출인 2조 2,228억 2,600만원의 2.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2021년의 경우 동 기금은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연말인 12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800억원의 예수금을 예탁받아 일부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이처럼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월액은 기금의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에 편성되었던 계획액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 집행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월은 결산상 잉여금이 없음에도 세출예산의 재원이 이월되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로서, 「국가재정법」<sup>4)</sup>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기금 수입이 부족할 경우 이월이 지속되거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최근 5년간 매년 자체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자체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최소 1,857억 4,000만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그 차이가 5,010억 7,900만원까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500억 7,300만원 감소한 1조 9,385억 2,200만원이었으나 지출의 총 규모는 2조 2,228억 2,600만원으로 그 차액인 2,843억 4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800억원을 예탁받았으며, 여유자금 1,043억 400만원을 회수하였다.

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체수입(a)	1,810,181	2,082,064	2,047,969	2,088,595	1,938,522
지출(b)	2,311,260	2,385,223	2,338,959	2,274,335	2,222,826
차이(a-b)	△501,079	△303,159	△290,990	△185,740	△284,3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동 기금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순자산은 3조 5,982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5억 6,600만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금 감소로 인하여 유동자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800억원을 예수받음에 따라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7년~2021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2017(c)	2018	2019	2020	2021(d)	증감(d-c)
자산 합계(a)	4,016,069	3,970,940	3,868,951	3,700,608	3,820,414	△195,655
I. 유동자산	1,844,656	1,746,497	1,711,860	1,466,806	1,379,592	△465,064
II. 투자자산	1,854,866	1,914,005	1,888,513	1,969,133	2,095,861	240,995
III. 일반유형자산	316,545	310,437	268,576	264,667	344,960	28,415
부채합계(b)	41,726	42,463	28,384	15,817	222,190	180,464
I. 유동부채	41,726	42,463	28,384	15,817	42,190	464
II. 장기차입부채	-	-	-	-	180,000	180,000
순자산(a-b)	3,974,343	3,928,477	3,840,568	3,684,790	3,598,224	△376,11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동 기금은 프로그램순원가가 높은 편이며, 특히 2021년의 경우 정부비축사업 및 종자사업의 원가와 용자사업의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반면, 비배분수익의 경우 2021년 기금 여유자금의 감소로 인하여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의 3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가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하였다. 이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2,447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축수입권 구매 증가로 인한 부담금 수익 증가로 비교환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2021년 재정운영결과 는 1,218억 5,8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2017년~2021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I. 프로그램순원가	105,161	123,014	108,807	211,512	242,147
II. 관리운영비	5,494	4,404	1,766	1,792	3,498
III. 비배분비용	6,607	7,075	1,384	-	238
IV. 비배분수익	46,796	42,414	7,218	3,049	1,145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70,465	92,079	104,739	210,255	244,738
VI. 비교환수익 등	55,337	59,585	48,651	54,730	122,880
VII. 재정운영결과(V-VI)	15,129	32,494	56,088	155,525	121,85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매년 자체수입보다 큰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재정운영순원가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손실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즉, 이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그 사유를 기금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 발효로 인하여 기금의 수입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국내에서 수매한 농산물이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을 매각하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데, 한-중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되면서 2016년부터 중국산 참깨, 콩, 팥 등 농산물의 판매수입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원이 축소되었다.

실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중국산 참깨, 콩, 팥의 판매수입은 약 960억원이며, 한-중 FTA 발효로 인하여 이관된 중국산 참깨, 콩, 팥의 판매수입은 총 4,252억원이다. 이는 한-중 FTA 발효 전에 비하여 해당 규모만큼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원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2021년 중국산 참깨, 콩, 팥 판매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참깨	422	396	508	619	661	848	3,454
대두	93	62	72	69	65	64	425
팥	54	65	57	66	82	48	372
합계	569	524	637	754	808	960	4,25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16년 재정운영표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에 대한 부담금 수익인 비교환수익이 전년 대비 480억 7,600만원 감소한 649억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57.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2015년~201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a)	2016(b)	증감(b-a)	비고
I. 프로그램순원가	178,118	90,110	△88,008	비축농산물 원가 증가 등
II. 관리운영비	3,746	4,612	866	
III. 비배분비용	7,463	13,688	6,225	비축농산물 감량에 따른 평가손실 등
IV. 비배분수익	36,976	191,233	154,257	비축기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증가 등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52,352	△82,822	△235,174	
VI. 비교환수익 등	113,058	64,982	△48,076	부담금수익 감소 등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9,294	△147,804	△187,09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지출사업이 타회계로부터 이관되어 증액되는 등 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5년 이전의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타 회계로부터 3개의 보조사업이 이관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수출물류비’의 두 개 사업이 동 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이 동 기금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3개 사업의 경우 2021년의 지출 예산이 약 953억원이며, 최근 5년간 지출 합계는 4,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지출 수요의 증가는 최근 5년간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953억원으로 2017년의 725억원 대비 31%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2017년~2021년 농안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11년부터 이관)	62	109	83	74	104	432
수출물류비 (2011년부터 이관)	380	380	465	548	548	2,321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2014년부터 이관)	283	302	310	279	301	1,475
합계	725	791	858	901	953	4,22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경상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이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실질과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원 축소 및 지출사업의 증가는 기금의 재정 운영순원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사업 중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인삼특용작물계열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주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 기금 내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상 동 기금에 편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사업은 타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5)</sup>

5)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타 회계나 기금으로의 이관을 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7-2. 재고자산 매각대 수입의 연례적 과다 계상 시정 필요

### 가. 현황

재고자산매각대란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중도매인 등에게 공급하고 징수한 판매대금과 식량종자 보급용 판매 수입을 말한다.

재고자산 매각대의 2021년 계획액은 7,978억 1,600만원이었으나 5,828억 1,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재고자산매각대	797,816	797,816	-	797,816	582,816	582,816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나. 분석의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고자산매각대는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등 수입의 과다 계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매각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과 종자를 판매하는 수입으로, 동 수입은 자체수입 중 융자원금회수를 제외한 부분의 73.3%<sup>6)</sup>를 차지하는 수입이다.

그러나 재고자산매각대는 2021년의 경우 재고자산매각대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계획액인 7,978억 1,600만원보다 2,150억원 감액된 5,828억 1,600만원이었으며 수납률은 73.1%에 불과한 상황이다.

6) 2021년 수정 계획액 기준

이러한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 수납은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2019년의 경우 계획액에 비해 3,037억 9,000만원이 과소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62.2%에 불과하였다. 최근 5년간 재고자산매각대는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이 과소수납되고 있으며 수납률도 70%대를 하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및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차이 (B-A)	수납률 (B/A)
	당초	수정(A)						
2017	859,865	859,865	-	859,865	637,308	637,308	△222,557	74.1
2018	743,045	743,045	-	743,045	543,712	543,712	△199,333	73.2
2019	803,214	803,214	-	803,214	499,424	499,424	△303,790	62.2
2020	810,471	810,471	-	810,471	578,894	578,894	△231,577	71.4
2021	797,816	797,816	-	797,816	582,816	582,816	△215,000	7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은 과소수납은 주로 농산물판매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실적률은 63%에 불과하며 수입한 농산물의 판매실적률은 72%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농산물 판매수입 중에서도 수입 농산물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21년의 경우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계획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농산물은 그 판매실적이 최근 5년간 매년 실적률이 금액 기준으로 70%대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

[2017년~2021년 수매·수입한 농산물의 판매실적 현황]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계획		실적		실적률	
		물량(A)	금액(B)	물량(C)	금액(D)	물량(C/A)	금액(D/B)
2017	수매	52,668	136,379	63,247	139,670	120	102
	수입	375,710	648,011	288,026	466,838	77	72
2018	수매	56,005	77,488	28,518	69,040	51	89
	수입	327,849	586,720	267,531	411,142	82	70
2019	수매	65,536	161,741	10,522	14,731	16	9
	수입	384,802	568,571	264,911	424,129	69	75
2020	수매	60,127	106,591	34,649	95,927	58	90
	수입	396,839	626,423	256,781	425,353	65	68
2021	수매	60,127	106,591	24,783	66,647	41	63
	수입	396,839	626,423	265,684	450,934	67	7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재고자산매각대의 연례적인 과다 계상은 과다한 지출 예산의 편성으로 이어진다. 실제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 수납은 여유자금의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 수납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4,137억원의 여유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기타 경상이전수입이나 용자원금회수 초과분이 과소 수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017년~2021년 재고자산매각대 과소수납분 총당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여유자금 감소분	1,798	122	1,039	828	350	4,137
기타경상이전수입 <sup>1)</sup> 초과분	428	1,324	1,396	-	-	3,148
용자원금회수 초과분 <sup>2)</sup>	-	501	260	1,488	-	2,249
공자기금 예수분	-	-	-	-	1,800	1,800
기타	-	46	343	-	-	389
합계(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	2,226	1,993	3,038	2,316	2,150	11,723

주1: 비축사업비(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주2: 2020년도 초과분에는 재원확보를 위한 조기회수 독려분(978억원) 포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연례적인 재고자산매각대의 과소수납은 기금 자체수입의 수납률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출 예산의 편성 및 여유자금 감소,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향후 계획액 편성에 있어서 수입을 적정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과다 계상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7)

7)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고자산매각대의 수입편성 부처안은 평년 수준의 적정 수입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지출사업 규모에 맞추어 수지를 맞추는 관행에 따라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0		
	부처안(a)	정부안(b)	증감(b-a)	부처안(a)	정부안(b)	증감(b-a)
재고자산매각대	4,210	7,978	3,768	6,204	8,105	1,9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7-3.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

#### 가. 현황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였으며, 그 상세 변경내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변경차수	날짜	주요 변경 내역	변경 규모
제1차	2021.2.8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액	△1,460
		기타경비 증액	1,460
제2차	2021.4.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등 증액	20,1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액 등	△20,100
제3차	2021.4.2 9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증액	387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액	△387
제4차	2021.9.2 8	식품외식종합자금 증액	10,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액	△10,000
제5차	2021.9.2 9	전통발효식품육성 증액	800
		전통발효식품육성 감액	△800
제6차	2021.10. 1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증액	7,58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액 등	△7,589
제7차	2021.12. 6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및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증액	202,814
		기금예수금, 농산물마케팅 지원 감액 등	△202,814
제8차	2021.12. 21	종자수매·공급 증액	11,933
		비축지원 감액	△11,93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가재정법」 제70조<sup>8)</sup>는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자체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sup>9)</sup>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의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합리적인 계획에 기반한 사업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지양하고 기금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10)</sup>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코로나 대응 및 불용 예상액 조정 등을 사유로 21개 사업(세부사업 기준)의 계획액을 8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액을 증액한 후 재차 감액하는 등 불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였다.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사업의 경우 코로나 대응 등을 사유로 40억원

### 8) 「국가재정법」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10)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24

이 증액되었으나 연말에 증액규모보다 큰 6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매유통활성화(용자) 사업 역시 코로나 대응 등을 사유로 7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연말에 이보다 큰 규모인 139억 300만원이 감액되었다.

[농안기금 계획변경 사업 중 2021년 계획액이 증액된 후 감액된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증액 규모	증액 일자	감액 규모	감액 일자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용자)	4,000	2021.4.7	△6,000	2021.12.6
도매유통활성화(용자)	7,000	2021.4.7	△13,903	2021.12.6
농산물마케팅지원	4,000	2021.4.7	△1,070	2021.12.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들 가운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된 규모보다 이월액의 규모가 더 크거나 증액된 규모의 상당 부분이 이월된 사업도 존재한다.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의 내역사업인 두류맥류계약재배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보다 큰 규모인 24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또한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의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30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분의 41.5%에 달하는 126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고,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우수기업육성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7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분의 80%인 60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다.

[계획액 증액 사업 중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증액 시점
	당초	수정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69,166	71,115	71,115	65,245	2,429	3,441	21.12.6
두류맥류계약재배	14,766	16,766	16,766	14,337	2,429	-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79,800	195,800	195,800	183,153	12,647	-	21.12.6
식품가공원료매입	124,000	154,445	154,445	141,798	12,647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9,603	87,192	87,192	74,666	12,526	-	21.10.14
농식품우수기업육성	67,973	75,562	75,562	69,499	6,063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특히 이들 사업들은 모두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이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된 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신속적 운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저해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에 기반하고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들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sup>11)</sup>

11)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으로 어려워진 농민과 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양상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불용 및 이월은 기금재원의 부족, 연말 재정보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하였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수출인프라강화 사업<sup>1)</sup>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해외정보조사,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정보조사, 외식산업수출지원, 우수농식품판로개척 등 총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2021년 예산은 473억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실적행의 경우 2021년 예산 473억 600만원 중 427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5억 1,4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실적행률은 90.5%로 나타난다.

수출인프라강화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은 외식기업들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예산은 8억 6,200만원으로, 이 중 6억 9,600만원이 실적행됨에 따라 실적행률은 80.7%로 나타난다.

[2021 회계연도 수출인프라강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출인프라강화	47,306	47,306	-	47,306	47,306	-	-
외식산업수출지원	862	862	-	862	862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2021회계연도 수출인프라강화 결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수출인프라강화	47,306	-	47,306	42,792	-	4,514	90.5
외식산업수출지원	862	-	862	696	-	166	80.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분석의견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의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수출지원 사업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은 국내·외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중 국내 중소·중견 외식기업에 실질적인 취업 의사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동향 파악 등 해외진출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중견 외식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은 2021년의 경우 교육생 26명에 대하여 8주에 걸쳐 해외진출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내용
1주차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및 교육생 조 편성(5명*6팀))
	식품·외식산업 분야 ESG 특강(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강의 등) 외식기업 현황 및 직무 소개
2주차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조직운영과 특성 등 포함)
	글로벌 외식기업 성공전략 및 사례
	해외 프랜차이즈 개설 프로세스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3주차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런칭까지 전 과정(해외 물류, 전략 포함)
	해외진출 시 다뤄야 할 일반법규
	(직무멘토링) 외식기업 재직중인 선배 수료생과의 대화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4주차	외식 프랜차이즈 글로벌 마케팅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외식브랜드 홍보사례, 다양한 마케팅, SNS 활용 방법 등)
	해외 실무를 위한 서류작성 실습
	(B/L 및 송장 확인방법, 외국어 이메일 작성요령 등)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5주차	외식업계 비대면 서비스의 이해 I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직무, 국내외 사례 등)
	외식업계 비대면 서비스의 이해 II
	(실무를 위한 키오스크·로봇 활용법 등)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메타버스 특강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6주차	외식기업 현장 세미나 (외식관련 직무, 현장 실습 등)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7주차	외식업 현장 근무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 (팀별 영어회화 실습 등)
	(직무멘토링) 실무자로서 위기상황 및 대응방법
	팀프로젝트 과제 수행 멘토링
8주차	수료식 & 팀프로젝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외식기업 채용설명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은 사업이 실시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취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2021년의 경우 수료인원 26명 중 국내 중소·중견 외식기업과 매칭되어 취업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며, 취업률은 19.2%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시작년도인 2015년을 제외하고는 사업 실시 이후로 취업률이 40% 이상인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데, 동 사업의 목표가 예비취업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내 중소·중견 외식기업에의 취업을 통해 외식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처럼 저조한 취업 실적은 동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취업실적 현황]

(단위: 명, %)

연도	운영기관	수료인원 (A)	취업실적 (B)	취업률 (B/A)
2015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예비취업생 과정)	30	12	40
2016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중국시장),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40	11	27.5
2017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20	4	20
2018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	6	30
2019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16	6	37.5
2020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	6.7
202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6	5	19.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러한 취업실적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외식기업과 매칭이 성사된 인원을 단순 조사한 것인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취업이 되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직이나 퇴사 현황 등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대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외식기업들이 당초의 채용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취업 실적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 취업 실적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므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의 지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시작 이래로 동일한 운영기관이 선정된 경우가 많고, 운영기관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동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2년제 이상 대학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제안심사, 현장심사 등 총 3차례의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되며, 그 구체적인 심사방법이나 심사주체,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관 선정 대상 및 선정 절차]

공모대상	2년제 이상 대학교 중 이론 강의실 보유 및 충분한 교육생 모집이 가능한 기관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1차): 서면심사를 통한 부적격 여부 선별</li> <li>- 제안심사(2차): 운영기관 제안서(교육계획서) 발표 평가</li> <li>- 현장심사(3차): 2차 심사 70점 이상 고득점 순 교육환경 적격여부 심사</li> <li>- 최종선정: 고득점자 순 교육환경 적합 판단 시 최종 선정</li> </ul>
심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1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li> <li>- 제안심사(2차): 평가위원(외식실무·교육전문가 5인 이내)</li> <li>- 현장심사(3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인, 2차 평가위원 1인</li> </ul>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1차): 서류제출여부, 대상자 적격여부 등</li> <li>- 제안심사(2차): 적정성, 사업수행의지, 수행역량(교육생 확보력), 교육생 관리능력, 교육 커리큘럼 등 제안서(교육계획서) 평가</li> <li>- 현장심사(3차): 교육여건(장비 및 시설 등), 교육환경(청결도 등)</li> </ul>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시작된 2015년 이후로 7년간 실시되고 있

으나, 2019년 한 해를 빼고는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매년 선정되는 등 동일한 운영기관이 선정되고 있다.

동 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계속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동 사업의 정량적이고 일차적인 성과 지표인 외식기업 취업률이 매년 20~30%대로 저조하며, 2020년의 경우 수료인원 30명 중 취업실적은 2명에 불과하여 취업률이 6.7%로 사업 성과가 저조함에도 2021년에 동일 운영기관이 재선정되었다.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중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성과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수료인원(A)	30	40	20	20	30	26
취업인원(B)	12	11	4	6	2	5
취업률(B/A)	40	27.5	20	30	6.7	19.2

주: 2019년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처럼 사업 성과가 저조함에도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업 성과인 취업실적이나 취업률이 저조함에도 운영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계약 선정 및 체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규정하는 등 운영기관의 책임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동 사업의 운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신청 수요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운영기관 선정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동 과정의 운영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이 최대 3곳에 불과하며 2021년의 경우에는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유일한 신청자로 선정되는 등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운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신청 자체가 저조할 경우 운영기관 선정 심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에 따른 사업의 실질적 성과 역시 도출되기 힘들 것이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관 선정 경쟁률]

연도	신청 기관	경쟁률	선정 결과
2017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석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석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5:1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2020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기관 선정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함에도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항목 중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및 실적 관리 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청 수요를 늘리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의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가. 현황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sup>1)</sup>은 농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 업체들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등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된 160억원을 포함하여 총 1,958억원으로, 이 중 1,83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79,800	195,800	-	195,800	183,153	12,647	-
식품가공원료매입	124,000	154,445	-	154,445	141,798	12,647	-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4,108	-	4,108	4,108	-	-
외식업체육성	20,000	13,571	-	13,571	13,571	-	-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지원	23,800	22,686	-	22,686	22,686	-	-
식품원료계열화	2,000	990	-	990	990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51-345

## 나. 분석의견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과다하므로 내역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계획액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은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21년의 경우 4개의 내역사업의 불용예상액을 자체 감액하여 나머지 한 개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였다.

[2021 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식품가공원료매입	30,445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신규 수요가 있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일부 조정하여 집행률 제고
자체변경	농식품시설현대화	△5,892	
자체변경	외식업체육성	△6,429	
자체변경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	△1,114	
자체변경	식품원료계열화	△1,01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나 이러한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매년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내역사업 간 자체 조정하여 식품가공원료매입 예산을 증액하였다.

2018년의 경우 불용이 예상되는 3개의 내역사업에서 불용예상액을 자체 조정하여 식품가공원료매입 계획액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에도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불용예상액을 식품가공원료매입 계획액으로 자체 조정하였다. 2020년 역시 3개의 내역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식품가공원료매입으로 조정하였다.

[2018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식품가공원료매입	4,318	불용 예상 자금을 신규 수요가 있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일부 조정하여 집행률 제고
자체변경	농식품시설현대화	△1,652	
자체변경	외식업체육성	△468	
자체변경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지원	△2,19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식품가공원료매입	891	연말 예산 불용 예상되어 신규 수요가 있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일부 조정하여 집행률 제고
자체변경	농식품시설현대화	△89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회계연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식품가공원료매입	3,099	코로나19 대응 중소식품기업, 외식업체 지원규모 확대
자체변경	외식업체육성	△496	불용 예상 자금을 신규 수요가 있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으로 일부 조정하여 집행률 제고
자체변경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지원	△1,353	
자체변경	식품원료계열화	△1,25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역사업간 자체조정이나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자금의 신속적 운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속적으로 계획액이 면밀한 추계를 통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 사업과 같이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감액과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편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계획액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계획수정사유로 불용 예상 자금을 자체 조정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나, 사업목적에 따라 편성된 계획액을 사업 목적과 맞지 않게 오직 집행률 제고만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매년 자체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가 확정된 예산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의 계획액을 편성하는 경우 내역사업 별로 면밀한 사업집행계획을 통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질행이 저조하므로 농식품업체들의 투자 심리 분석, 유사 사업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수요에 맞게 계획액을 편성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품질향상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80%를 용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기계설비의 도입 또는 가공공장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의 80%를 용자하는 사업이다. 용자기간의 경우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용자금리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2%, 일반업체의 경우 3%로, 최대 50억원(소규모창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용자해주고 있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용자조건]

대상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 대표자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7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용자 대상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계기구(설비) 도입, 가공공장 매입 비용
용자 비율	80% (자부담 20%)
용자 금리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용자 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용자 한도	최대 50억원(소규모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의 2021년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었으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58억 9,200만원을 연말에 자체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액의 약 41%에 해당하는 41억 800만원으로 계획액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액은 27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수정액 대비 실집행률은 66.9%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당초 계획액에서 불용 예상액을 연말에 자체 감액한 것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27%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농식품시설현대화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계획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당초(A)	수정(B)						
농식품시설현대화	10,000	4,108	4,108	2,748	1,360	-	27.48	66.8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저조한 실집행 문제는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57.16%이고 그 외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60% 이상이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근 5년간 농식품시설현대화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당초(A)	수정(B)					
2017	10,000	10,000	-	10,000	3,247	32.47	32.47
2018	10,000	8,348	-	8,348	5,716	57.16	68.47
2019	10,000	9,109	-	9,109	4,159	41.59	45.66
2020	10,000	10,000	-	10,000	9,722	97.22	97.22
2021	10,000	4,108	-	4,108	2,748	27.48	66.8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동 사업의 용자 신청 업체 수와 신청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의 경우 용자 신청 업체 수는 11개소로 전년 수치인 23개소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신청 규모 역시 98억 5,600만원으로 전년 수치인 317억 8,200만원의 약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2021년의 경쟁률(업체 수 기준)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실상 신청한 업체가 모두 지원 대상이 되어 예산을 배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동 사업의 경쟁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경쟁률이 3.57:1이었으나, 2019년에는 1.86:1로 떨어져 2019년 이후로는 그 경쟁률이 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역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21년의 경우 1:1로 신청한 업체가 모두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 용자조건의 매력도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농식품시설현대화 신청규모 및 배정규모, 실제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신청규모		배정규모		경쟁률 (업체수 기준)	실제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개소	지원액
2017	19	24,387	9	12,157	2.1:1	4	3,247
2018	25	43,419	7	10,000	3.57:1	3	5,716
2019	26	33,232	14	17,109	1.86:1	6	4,159
2020	23	31,782	14	20,484	1.64:1	7	9,722
2021	11	9,856	11	9,778	1:1	4	2,74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21년 신청규모 및 경쟁률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고 건설 인력 부족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시설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2020년의 경우 배정규모 중 약 47.5%가 실제로 지원되었으나, 2021년의 경우 배정규모 97억 7,800만원 중 실제 지원된 금액은 27억 4,800만원으로 약 28.1%만이 실제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처럼 시설투자 심리의 위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2021년의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뿐만 아니라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용자조건의 매력성이 타 사업과 비교하여 좋지 않아 동 사업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동 사업과 동일한 세부사업 내 2021년 계획액이 증액된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의 경우 용자금리가 고정금리의 경우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였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여 2021년의 경우 금리가 각각 1.8%, 2.3%로 인하되었다. 반면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금리 인하 조치도 시행하지 않아 시설투자심리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신청규모의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나 농업농촌진흥기금 등에서 동 사업과 같이 농식품업체 등에게 시설현대화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 사업들의 융자 조건과 비교할 때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융자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어 동 사업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융자금리는 2021년의 경우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이며, 2022년 역시 이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업체 등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융자금리가 1%~2%이며, 2022년에는 이마저도 1%로 인하할 예정이다. 경기도나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자금을 0.5~1.5%의 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자체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비교]

구분	융자금리	융자한도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최대 50억원 (소규모업체는 10억원)
서울특별시	HACCP 적용업소: 1%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2%	최대 8억원
경기도	1%	최대 5억원
대전광역시	1%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부산광역시	1.5%	HACCP 지정업소: 최대 3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울산광역시	0.5%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1%	최대 1억원
강원도	1%	법인: 최대 10억원 개인: 최대 3억원
경상북도	1%	HACCP 지정업소: 최대 5억원 그 외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
경상남도	1%	최대 3억원
전라북도	1%	식품 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2천만원
전라남도	1%	최대 10억원

주: 2021년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동 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비해 용자 한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시설개선을 소규모 위주로 진행하게 되므로 동 사업보다는 지자체 사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투자심리 위축과 금리 인하 조치의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의 존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례적인 실집행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농식품업체들의 투자 심리 분석, 타 유사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게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하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의 용자조건 완화 필요 등

### 가. 현황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sup>1)</sup>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구매나 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농식품 원료구매와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사업의 2021년 계획액은 3,728억 8,200만원으로, 이 중 3,65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1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용자)	372,882	372,882	-	372,882	365,697	7,185	-
농식품원료구매	368,082	368,082	-	368,082	365,697	2,385	-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4,800	4,800	-	4,800	-	4,800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분석의견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사업은 2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계획의 차별화,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나 용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5-40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비용의 80%를 용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원료 및 부자재의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에 대해 80~90%를 용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신규로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의 80%를 용자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 용자조건]

대상 업체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 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수출계약서 입증 필요)이 150천\$ 이상인 업체 * 부지 미확보업체는 제외
용자 대상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용자 비율	80% (자부담 20%)
용자 금리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용자 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용자 한도	최대 30억원(단, 잔여예산 발생 시 초과배정 가능)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 48억원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음에도 2년 연속으로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며, 2019년 이전에도 지원받는 업체가 1~2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동 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신청 개소가 지원계획에 비해 저조하였고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5년 연속 계획액을 48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 것에 대하여 2020년의 경우 3개 업체에서 용자를 신청하였으나, 평가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배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의 경우 2개 업체가 신청하여 1개 업체가 배정되었으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되었다고 설명한다.

[최근 5년간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지원계획 및 실제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지원계획		신청 개소	실제지원	
	개소	계획액		개소	지원액
2017	6	4,800	2	1	1,400
2018	6	4,800	1	1	4,800
2019	6	4,800	6	2	3,045
2020	6	4,800	3	-	- (전액 불용)
2021	3	4,800	2	-	- (전액 이월)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1년과 같이 신청 수요가 있고, 자격에 적합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된 것은 자금 배분이나 사전 준비 등 사업 추진 계획이나 일정 자체가 미흡하였다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동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신청 수요 자체가 각각 3건과 2건으로, 계획안 편성 당시 지원 계획인 6건과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 계획에 비해 신청 건수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신청 수요에 비해 지원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 사업이 다른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해당 사업에 비하여 용자 조건의 매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과 유사하게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게 시설현대화 자금을 용자하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농식품 업체에게 시설현대화 자금을 용자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과 그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즉 농식품수출업체 중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도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에 비하여

용자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원 대상 업체의 요건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공인된 인증을 받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나 주원료의 국산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출실적이나 수출계획이 일정 금액 이상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 요건이 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용자 한도가 최대 50억원인 반면,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은 용자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용자 한도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sup>2)</sup>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용자조건 비교]

구분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농식품시설현대화
대상업체	농식품수출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요건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 이상이거나 수출계획(계약서 입증 필)이 150천\$ 이상	-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주원료의 국산 비율이 30% 이상
용자금리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농업경영체 2%, 일반업체 3%
상환기간	10년	10년
용자한도	최대 30억원	최대 50억원
2021년 실적	없음	총 27억 4,800만원 지원(4개 업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농식품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이고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보다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에 신청하여 용자받는 것이 용자조건이나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처럼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사업은 타 사업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음에도 용자조건은 그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 사업의 신청 저조 및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의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초과로 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동 사업은 향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 배분 계획 등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을 타 사업과 비교하여 용자조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의 차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의 차별화가 어려울 경우 지원 대상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며, 향후 계획안 편성 시 타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 제40조제1항<sup>1)</sup>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연도별 직위해제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4명 및 2020년에 1명으로, 2017년의 경우 전원 3개월 이상, 2020년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연도별 직위해제 처분 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합계
2017	-	4	4
2018	-	-	-
2019	-	-	-
2020	1	-	1
2021	-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 1) 「인사규정」

##### 제40조(직위해제)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4.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17.12.27)
  6.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 나. 분석의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보수의 감액 비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내부 규정인 「직원연봉규정」 제11조<sup>2)</sup>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월기본연봉의 80%를 지급하며, 징계의결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직위해제 사유가 원인무효로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sup>3)</sup>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 대해서는 3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나 해양환경공단의 경우에도 직무능력을 이유로 한 사유와 달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월액 대비 지급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보수 지급에 있어서 직위해제 기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 이전인 경우 연봉월액의 80%,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인 경우 연봉월액의

### 2) 「직원연봉규정」

제11조(징계처분자의 기본연봉)

①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기간 중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월기본연봉의 80%를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요구와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의결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월기본급에 징계이전 직무급을 더한 금액과 기지급금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3)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60%, 9개월 이후인 경우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도록 직위해제 기간에 따른 보수 감액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비교]

구분	규정	직무수행능력 부족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연봉월액의 70%	- 3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40% -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20%
한국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	연봉월액의 8할	- 3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8할 -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5할
한국농어촌공사	「연봉제규정」 제17조	연봉월액의 80%	- 6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80% - 6개월~9개월: 연봉월액의 60% - 9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50%
해양환경공단	「직원보수규정」 제11조	연봉월액의 8할	- 3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8할 - 3개월 이후: 연봉월액의 5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연봉규정」 제11조	연봉월액의 80%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와 같이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른 차등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수의 감액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타 공공기관의 급여규정 등을 감안하여 내부 임직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별로 보수의 감액비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보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 1

## 부산항만공사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률 관리강화 필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의 조성,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 수입과 정부 예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부지원 수입 5,617억 1,100만원, 차입금 7,200억원, 기타 1,213억 5,400만원 등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182억 5,800만원, 경상운영비 230억 4,900만원, 사업비 9,490억 2,700만원, 차입상환금 2,400억원, 기타 1,741억 6,500만원 등을 합한 1조 4,044억 9,900만원 규모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정부지원수입	338,119	328,615	342,808	400,217	561,711
	부대수입	637	1,317	1,406	1,296	1,434
	차입금	70,000	350,000	170,000	430,000	720,000
	기타	179,367	20,324	101,471	107,031	121,354
지출	인건비	13,376	17,453	17,227	18,116	18,258
	경상운영비	16,834	16,150	21,453	19,674	23,049
	사업비	353,140	316,722	315,487	541,287	949,027
	차입상환금	120,000	200,000	100,000	160,000	240,000
	기타	84,773	149,931	161,518	199,467	174,165
수입·지출합계		588,123	700,256	615,685	938,544	1,404,499

자료: 부산항만공사

## 가. 현 황

부산항만공사의 육상전력공급시설(AMP) 구축 시범사업은 항만 내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보조사업과 직접수행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부산·인천·광양항)의 AMP 구축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어 각 항만 공사는 사업비의 40%를 국고보조 받았다.

이 중 부산항만의 AMP 구축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5억 4,100만원으로, 이 중 국고지원은 78억 1,600만원, 부산항만공사 부담은 117억 2,5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항만 육상전원공급시설(AMP) 구축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사업기간	(조성) 2018.8~2021.4 (운영) 2020.7~
사업위치	부산항 신항 3, 4부두 및 북항 감만, 신선대부두
총사업비	19,541백만원(국비 7,816백만원, 부산항만공사 11,725백만원)
사업내용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사업(총 8선석 구축 완료) - (2018~2019) 신항 3, 4부두 AMP 4선석 구축 완료 - (2019~2021) 북항 감만, 신선대부두 AMP 4선석 구축 완료

자료: 부산항만공사

해운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sup>1)</sup>)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감축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온실가스 배출 초기전략이 채택되었다. 이 전략에 따라 2008년 대비 2030년 평균 탄소 배출량을 최소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해운 동향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sup>2)</sup>을 발표하면서, 7개 항만의 AMP 구축을

1) IMO는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뜻하며,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이다.

2) 해양수산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

2020년 43대, 2025년 174대, 2030년 248대까지 늘리는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부산항에는 2018~2020년까지 10선석, 2021~2030년까지 52선석을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단기계획 상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2022년 2월,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산항에는 AMP 8선석을 설치 완료(SPO<sup>3</sup>) 20대 설치)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의 육상전원공급시설 개발 및 투자계획]

(단위: 선석 수)

구분	단기계획				중기계획										합계	
	'18	'19	'20	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부산항	4	4	2	<b>10</b>	6	3	11	7	8	6	2	5	1	3	<b>52</b>	62
인천항	2	2	4	8		3	3	3			3	2	2	3	19	27
광양항	2	1	1	4		3	3		3	3		4	1	1	18	22
(생략)																
합계	8	20	15	43	13	28	37	20	33	16	15	18	16	9	205	248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 말 기준, 부산항만공사가 인식하고 있는 AMP 구축물 장부가액은 총 196억 8,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97억 400만원, 항만공사 자체 부담분이 99억 7,900만원 투입되었다. 한편 2022년 예산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관리 운영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며 AMP 추가 구축 계획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부산항만공사 육상전원공급시설(AMP) 구축물 가액(2021년 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예산	정부예산	합계
장부가액	9,979	9,704	19,684

자료: 부산항만공사

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한다.

3) SPO(Shore Power Outlet)는 선박에 육상전원을 공급 시 필요한 장치 중 하나로 수전설비를 육상전 기공급시설에 연결해 주는 콘센트 역할을 한다.

##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선박 분야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그 중 하나가 항만에 대형선박(컨테이너선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통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하역 작업은 24시간 가량이 소요되며, 동 시간 동안 배에 실린 냉동 컨테이너 온도 유지를 위해 전기가 필요하다. 이 때 선박이 엔진을 가동하면서 전기 생산 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기 때문에 엔진을 돌리는 대신 선박에 육상전기를 직접 공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이다.

[정부의 항만지역 관련 대기질 개선대책]

일자	상세내역
2018	‘항만·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9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2020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4) 및 시행
2020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관계부처 합동)
202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1~'25)

자료: 해양수산부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공급 계획]



자료: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7개 항만에 21선석<sup>4)</sup>의 AMP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구축 시범사업 이후 총 이용실적은 302항차<sup>5)</sup>이다.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및 이용현황(2022년 2월 기준)]

(단위: 선석, 항차)

항만	설치대수	위치	이용실적
부산항	8	신항 3,4부두, 감만, 신선대부두	22
인천항	3	신국제 여객부두	129
광양항	3	광양항 컨부두(2-2, 3-1, 3-2)	5
평택·당진항	2	동부두, 송악부두	124
포항항	2	신항5부두	-
목포항	1	국제여객부두	-
제주항	2	외항9, 10부두	22
합계	21		302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6월, 해양수산부, 3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광양), 5개 선사, 3개 운영사는 AMP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AMP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에서는 특정 선사가 선박에 수전설비<sup>6)</sup>를 설치하고, 2020~2021년 동안 AMP를 일정 항차만큼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다.

[AMP 시범사업 협약 개요]

구분	세부내역
협약기간	2019.6 ~ 2021.12
업무분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수산부: AMP 설치 예산지원,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등</li> <li>2. 항만공사: AMP 설치 및 유지보수 및 운영</li> <li>3. 선사: AMP의 선박 측 수전시설 설치</li> <li>4. 운영사: AMP 설치·운영을 위한 부지 및 시설물 사용 협조</li> </ol>

4) 선석은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뜻하며, 보통 표준선박 한 척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하나의 수역이다.

5) 항차는 부두에서 한 선박이 접안 착수선적 완료하여 출항한 횟수를 뜻한다.

6) 육상전력공급설비(AMP)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변압기, 케이블선 등의 설비이다.

구분	세부내역																																																														
인센티브 제공 (항만공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선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li> <li>- 육상전력설비 이용 시 전력요금 중 기본 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li> </ul>																																																														
선사의 최소이용기준 (연간 이용항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선사 구분</th> <th>부산항</th> <th>인천항</th> <th>광양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A</td> <td>2020년</td> <td>-</td> <td>104항차/년</td> <td>-</td> </tr> <tr> <td>2021년</td> <td>-</td> <td>104항차/년</td> <td>-</td> </tr> <tr> <td rowspan="2">B</td> <td>2020년</td> <td>38항차/년</td> <td>-</td> <td>12항차/년</td> </tr> <tr> <td>2021년</td> <td>64항차/년</td> <td>-</td> <td>12항차/년</td> </tr> <tr> <td rowspan="2">C</td> <td>2020년</td> <td>78항차/년</td> <td>-</td> <td>10항차/년</td> </tr> <tr> <td>2021년</td> <td>78항차/년</td> <td>-</td> <td>10항차/년</td> </tr> <tr> <td rowspan="2">D</td> <td>2020년</td> <td>-</td> <td>-</td> <td>10항차/년</td> </tr> <tr> <td>2021년</td> <td>-</td> <td>-</td> <td>10항차/년</td> </tr> <tr> <td rowspan="2">E</td> <td>2020년</td> <td>50항차/년</td> <td>-</td> <td>-</td> </tr> <tr> <td>2021년</td> <td>70항차/년</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합계</td> <td>2020년</td> <td>166항차/년</td> <td>104항차/년</td> <td>32항차/년</td> </tr> <tr> <td>2021년</td> <td>212항차/년</td> <td>104항차/년</td> <td>32항차/년</td> </tr> </tbody> </table>				선사 구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A	2020년	-	104항차/년	-	2021년	-	104항차/년	-	B	2020년	38항차/년	-	12항차/년	2021년	64항차/년	-	12항차/년	C	2020년	78항차/년	-	10항차/년	2021년	78항차/년	-	10항차/년	D	2020년	-	-	10항차/년	2021년	-	-	10항차/년	E	2020년	50항차/년	-	-	2021년	70항차/년	-	-	합계	2020년	166항차/년	104항차/년	32항차/년	2021년	212항차/년	104항차/년	32항차/년
	선사 구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A	2020년	-	104항차/년	-																																																										
		2021년	-	104항차/년	-																																																										
	B	2020년	38항차/년	-	12항차/년																																																										
		2021년	64항차/년	-	12항차/년																																																										
	C	2020년	78항차/년	-	10항차/년																																																										
		2021년	78항차/년	-	10항차/년																																																										
	D	2020년	-	-	10항차/년																																																										
		2021년	-	-	10항차/년																																																										
	E	2020년	50항차/년	-	-																																																										
		2021년	70항차/년	-	-																																																										
	합계	2020년	166항차/년	104항차/년	32항차/년																																																										
2021년		212항차/년	104항차/년	32항차/년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선사들의 세부적인 AMP 이용실적(2020~2021년)은 다음과 같다.

인천항에서 1년 간 104항차 이용 협약을 맺은 A 선사는 2020년 15항차, 2021년 93항차 AMP를 이용하였다. 이에 반해, 3개 선사와 2020~2021년 동안 총 378항차의 이용협약을 맺은 부산항에서는 동 2개년 간 총 20항차의 AMP 이용이 발생되었으며, 연간 3개 선사와 32항차 이용협약을 맺은 광양항에서는 2020~2021년 동안 4항차의 AMP 이용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19년 6월에 체결된 동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협약 선사의 AMP 이용실적]

(단위: 항차)

선사	2020년						2021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계획	이용	계획	이용	계획	이용	계획	이용	계획	이용	계획	이용
A	-	-	104	15	-	-	-	-	104	93	-	-
B	38	4	-	-	12	3	64	1	-	-	12	1
C	78	1	-	-	10	-	78	2	-	-	10	-
D	-	-	-	-	10	-	-	-	-	-	10	-
E	50	8	-	-	-	-	70	4	-	-	-	-
합계	166	13	104	15	32	3	212	7	104	93	32	1

주: 2020~2021년 동안 AMP가 선박에 공급한 총 전력량은 부산항 259,888kWh, 인천항 569,000kWh, 광양항 57,310kWh임

자료: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저조한 AMP 이용률의 사유는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선사의 계약부두 변경, AMP에 수전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로 선박을 정박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항만의 상황, 유가 하락으로 인해 육상전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이 선사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상황, 선사에서 지정한 자체 AMP 엔지니어가 코로나로 인해 입항하지 못한 상황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인천항만공사는 고정선석으로 입출항하는 선사 1곳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로 입출항한 선박에 비해 AMP 이용공간이 여유롭고 고정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AMP 이용실적이 협약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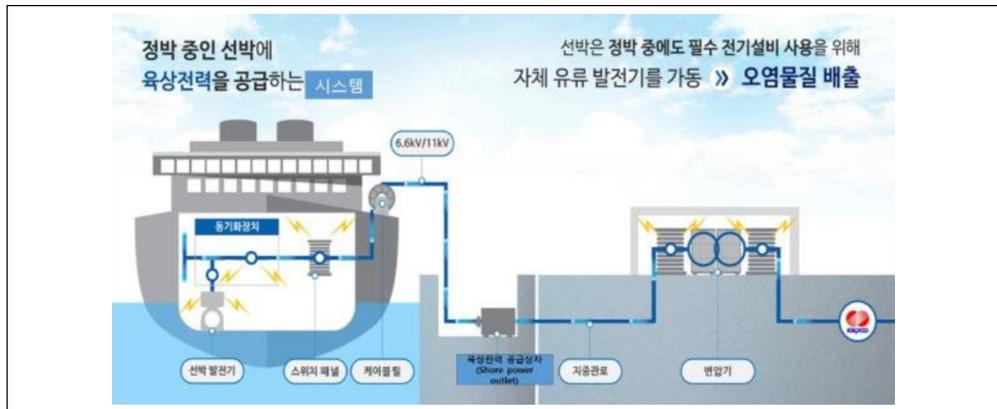
-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선사의 계약부두 변경
- 시간 관계 상 AMP에 수전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로 선박 위치 조정 어려움
- 유가 하락으로 AMP 이용(전기 사용)보다 엔진을 가동(병커C유 사용)시키는 것이 선사 비용 절감
- 선사에서 지정한 자체 AMP 엔지니어가 코로나로 인해 입항하지 못함

자료: 부산항만공사

AMP 이용률이 높지 않은 추가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 내 수전설비(AMP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변압기, 케이블선 등의 설비) 설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국적외항선<sup>7)</sup> 8,497척 중 대형선박에서 사용하는 고전압<sup>8)</sup> 선외수전설비가 설치된 선박은 33척(0.038%)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sup>9)</sup>에 따르면, 항만의 AMP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박 수전설비의 설치는 권고사항으로만 나타나 있다.

### [AMP 개요]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국내 선박의 수전설비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수전설비 설치비용(10억 7,800만원~11억 9,800만원)에 비해 선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비용 감면 등)이 적고, 육상전기를 공급받을 시 설비 연결에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 7) 근해 또는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을 뜻한다.
- 8) 고압AMP는 6,600V로 공급하는 AMP이며, 컨테이너 화물선, 대규모 상선, 정기선 등에 전력을 공급한다. 저압AMP는 440V 또는 220V로 공급하는 AMP를 뜻하며, 예선, 관공선, 해경선 등에 사용 가능하다.
- 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며 작업절차가 복잡하여 항만 내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선 1척당 AMP 수전장치 설치 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6,400TEU	6,800TEU	8,600TEU
수전설비	장치+설비	5.13	5.73	6.33
	commissioning	0.42	0.42	0.42
소켓박스(2set)		0.43	0.43	0.43
AMP 컨테이너(1대)		4.8	4.8	4.8
합계		10.78	11.38	11.98

자료: 해양수산부

[AMP 사용으로 인해 부산항 입출항 선사가 감면받은 혜택]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합계
전기요금 중 기본료	2.7	1.0	3.8
선박료,접안료 및 정박료 등 감면분	0	14.1	14.1
AMP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등	96.3	30.8	127.1
합계	99.0	46.0	145.0

자료: 부산항만공사

또한 선사들은 선령 30년 제한<sup>10)</sup>에 따라 선령이 30년된 노후선박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교체시기가 몇 년 남지 않은 노후 선박의 경우 신규 선박 건조시까지 수전설비 설치를 미루게 되는 것이 국내 선사의 실정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국내 선박 11척 중 2척은 AMP 수전설비를 장착한 상태이며, 1990년대에 건조된 선박 7척은 2025년부터 선박 교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 선사들은 신규 선박 건조 시 AMP 등의 수전설비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다.

10) '제26차 한·중 해운회담(2019.07.04.)'

[인천항 이용선박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현황]

(단위: 척)

건조연도	척 수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여부
1990년대	7	선령 30년 후 선박 교체 및 신규 선박에 저감장치 적용 예정
2010년대	3	AMP 설치(2척) 및 스크러버 <sup>11)</sup> 설치(1척)
2020년대	2	선박 수전시설 설치 협의 및 건조 중

자료: 인천항만공사

한편 미국, 중국 및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AMP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엔젤레스(LA)항과 롱비치(LB)항<sup>12)</sup>에서는 2020년까지 입항선박의 80% 이상이 AMP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화하고 접안한 선박의 보조엔진 사용 시간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신규부두계획, 설계 및 건설 시 AM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부두는 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 개조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0년 기준 중국 항만의 50%인 1,543개 선석에 AMP 설치를 완료하였다. 유럽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화 규정인 EU DIRECTIVE 2014/94/EU를 제정하였다.<sup>13)</sup>

11)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SOx)을 알칼리성인 해수를 이용해 씻어내는 저감장치이다.

12) <http://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2>

2022년 2월 기준 아시아-미국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중 1, 2위를 LA항 및 LB항이 차지하였으며, 아시아-미국항로 컨테이너 총 물동량 중 LA항이 23.6%, LB항이 19.6%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3879262880>

[해외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 현황 및 관련 정책]

구분	세부내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현황(LA/LB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AMP 설치율을 80%로 의무화</li> <li>- AMP 수전을 받지 못하면 20만 달러의 벌금 부과</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기준 중국 항만의 50%에 설치 완료함(1,543개 선석)</li> </ul> </li> <li>◦ 규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방지법’에서 신규부두계획, 설계 및 건설 시 AMP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이미 개발된 부두는 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 개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li> <li>- 입항한 선박에도 우선적으로 AMP를 사용하도록 규정함</li> </ul> </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의무화 규정인 ‘EU DIRECTIVE 2014/94/EU’를 제정, 2025년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AMP 설치 의무화함</li> <li>- 독일, 스웨덴은 AMP 장착 선박에 대한 전기세 감면 중임</li> <li>- 벨기에는 AMP 활성화, 네덜란드는 AMP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중</li> </ul> </li> </ul>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1.1)’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2017)’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1월부터 유럽에 입항하는 선박은 사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매 없이 EU 국가에 입항한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선주(수전설비 보유 가정) 입장에서는 ‘유류비와 탄소배출권 가격을 합한 비용’이 ‘AMP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AMP를 사용할 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선사, 운영사 등 각 이해관계자의 AMP 사용에 따른 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등 AMP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로 부산항만공사는 이동식 연결케이블을 사용하여 SPO에 수직 낙하해야 하는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개선방안 연구용역(‘22~’23)’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및 중기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IMO 규제 및 국제해운업계의 AMP 의무화 규제 강화 추이, 국내 항만의 AMP 이해관계자(선사 및 운영사)의 편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산 항만에 설치된 AMP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주요기능은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연안 생태계 회복,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통한 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 방류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통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수산자원 관리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 실현 등이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하는 정부 예산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사업에 편성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sup>1)</sup> 예산을 65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3억 7,5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661억 100만원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중 65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이 이월되고 4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자원조성 사업지원	65,726	65,726	375	-	66,101	65,067	98.4	543	49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 나. 분석의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수행 시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 시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을 개선하여 공공 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국세이며, 근거 법률은 「인지세법」이다.

공공기관 역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며, 특히 민간 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sup>2)</sup>에 따라 민간 주체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액]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 납부의무가 연대채무라는 사실에서 곧바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간 인지세 부담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2)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제2항은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3)

한국수산자원공단의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관은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 총 3,149건에서 약 2억 451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경우, 발생한 총 인지세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17~2021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	계약건수	인지세 총 납부금액	인지세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비율
			한국수산자원 공단	계약상대방	
2017	552	35,750	0	35,750	0.0
2018	587	37,120	0	37,120	0.0
2019	625	40,300	0	40,300	0.0
2020	702	46,710	0	46,710	0.0
2021	683	44,630	0	44,630	0.0
합계	3,149	204,510	0	204,510	0.0

주. 표의 현황은 공공기관이 계약에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계약(자체계약, 수의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이용 등)을 의미하고, 조달청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따라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계약체결 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적정 수준에서 나누어 분담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지세 부담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계약에서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0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로 공공기관이 인지세를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던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20.10.27.)





## 농촌진흥청



### 가. 현황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sup>1)</sup>은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 이를 농업경영체나 농·식품기업 등에 확산·전파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러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업체의 경우 5만톤 CO<sub>2</sub>-eq<sup>2)</sup>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만톤CO<sub>2</sub>-eq 이상)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감축수단을 발굴하거나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이 중 10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업체의 경우 연간 12.5만톤CO<sub>2</sub>-eq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간 2.5만톤CO<sub>2</sub>-eq 이상)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의 범위에서 기업별로 과부족 분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지는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농촌진흥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이산화탄소 환산량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 중 식품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과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원사업’이란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이나 감축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아닌 농가 등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하여 이를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은 이·전용 3억원을 포함한 26억 6,100만원이며, 이 중 26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온실가스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048	1,048	-	1,048	1,027	-	21
농식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361	2,361	300	2,661	2,637	-	24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나. 분석의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농식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sup>3)</sup>은 농업·축산·식품·임업 분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임업 분야의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sup>4)</sup> 역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및 감축량 인증의 업무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법」의 사업 범위만으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온실가스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따르면, 한국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식품·임업 분야

제74조(업무의 위탁)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와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축산·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증개와 알선, 조사·연구,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위탁 업무 역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역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 법률상의 사업 범위만으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 사업범위 비교]

「농촌진흥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증개와 알선</li> <li>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li> <li>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li> <li>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li> <li>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li> <li>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li> <li>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li> <li>8. <u>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li> <li>9. 그 밖에 <u>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li> <li>2. 삭제</li> <li>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li> <li>3의2. 품질인증</li> <li>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li> <li>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li> <li>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li> <li>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li> <li>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u>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u></li> <li>7.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li> <li>8. <u>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li> </ol>

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그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sup>5)</sup>에 따른 산림분야의 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범위에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이 사업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온실가스 관련 위탁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수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적합성 평가 등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 수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관련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온실가스 및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촌진흥법」 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사업에도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현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sup>1)</sup>이란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관련 기업 및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사업이다.

데모온실 조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이 현지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시범모델인 ‘데모온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데모온실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인 31억 4,000만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되었다.

[2021회계연도 데모온실 조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4,732	4,732	-	4,732	4,732	-	-
데모온실 조성	3,140	3,140	-	3,140	3,140	-	-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88

## 나. 분석의견

**데모온실 조성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데모온실 조성 사업은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을 해외에 조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팜 정착을 촉진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우수성을 전파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팜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운송비 등 2개년에 걸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2개국에 대하여 데모온실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며, 각 사업의 총사업비는 각각 24억원(국고보조금 16억 8,000만원, 컨소시엄 자부담 7억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인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기존 계획에 따라 2020년 2월 컨소시엄 모집공고를 통해 2020년 4월에 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되고 5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0년 9월말 당시 시설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 자재수급 및 물류이송 지연 등으로 현지 협력기관과 사업부지, 협상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작업을 화상회의와 서면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9월 당시 컨소시엄 모집공고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컨소시엄 선정이나 협약, 시설설계 및 준공 등 후속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2020년 9월말 기준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추진 현황 및 계획(2020년 9월말 기준)	
	카자흐스탄	베트남
컨소시엄 모집공고	2020.2.26.~2020.4.8.	미정
컨소시엄 선정	2020.4.24.	미정
컨소시엄 협약	2020.5.21.	2020.11.20.(예정)
시설설계	추진중 (2020.12. 완료 예정)	추진 예정 (1개월 이내에 완료)
준공 및 사업종료	2021.12.31.(예정)	2021.12.31.(예정)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베트남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 등의 사업 지연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베트남 컨소시엄 협약을 2020년 11월에 체결하고, 시설설계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준공 및 사업종료 기간을 기존 계획과 같이 2021년 12월 말에 완료할 것을 기준으로 2021년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데모온실 사업과 베트남 데모온실 사업의 총사업비가 각각 24억원으로 동일한 등 사업 규모가 비슷한 점 및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된 카자흐스탄의 시설설계가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설계를 짧은 시간 내에 단축하여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 데모온실 사업의 시설설계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집행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실제 2021년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베트남의 컨소시엄 협약은 예정보다 더욱 늦어진 2020년 12월에 비로소 체결되었으며, 이후 시설설계까지 4개월 가량 소요되어 베트남 시설 설계는 2021년 3월 31일에 완료되었다. 또한, 착공 예정일 역시 2021년 6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착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재수급 및 물류이송 지연 등 기존의 사업 지연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이보다 약 5개월 가량 지연된 2021년 11월에야 착공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당초의 사업기간 역시 2021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유사 모델인 카자흐스탄 시설설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설계 기간을 단축하여 계획하였다는 입장이다.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3억 1,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2021년 12월말 기준 베트남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구분	베트남 데모온실 조성 사업	
	2020.9월 당시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컨소시엄 모집공고	미정	2020.10.19.~2020.11.13.
컨소시엄 선정	미정	2020.11.23.
컨소시엄 협약	2020.11.20.(예정)	2020.12.4.
시설설계	~2020.12. 완료 (1개월 이내에 완료)	~2021.3.31. 완료
착공	2021.6.	2021.11.
준공 및 사업종료	2021.12.31.(예정)	2022.6.30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회계연도 데모온실 조성 사업의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실집행 현황				
	예산(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데모온실 구축	3,140	2,817	323	0	89.7
- 카자흐스탄	1,570	1,563	7	0	99.6
- 베트남	1,570	1,254	316	0	79.9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촉박하게 사업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베트남 데모온실 구축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 없이 변경된 계획과 같이 2022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보조금 교부 부적정

### 가. 현황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sup>1)</sup>은 비대면(온라인)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에 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3개 분야를 나누어 분야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에 따라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13개 분야 중 하나인 ‘온라인 농·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대면(온라인) 농·식품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온라인 농·식품 분야)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협약에 따라 2021년도 예산으로 46억 6,4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 중 27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8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온라인 농·식품 분야)	4,664	4,664	-	4,664	2,791	1,873	-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5132-302)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온라인 농·식품 분야)은 사업추진계획상 사업기간이 2개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2021년도 예산으로 전액 교부하여 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농·식품 분야의 예비 창업기업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자금의 70%(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기술성 및 시장성 분석을 제공하며, 창업기업 간담회나 판로지원,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유형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기술·시장검증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창업기업 대상 보유기술의 기술·시장성 가치평가를 통하여 투자·용자 등 기술금융 창출
네트워킹	창업기업 간담회	참가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간담회 진행으로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간의 정보 공유의 장 마련
기술지원	온라인 기술이전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국유특허 등 기술 추천 및 기술이전 지원 서비스
판로지원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진출지원	농진원에서 보유한 네트워크 및 판로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연계지원
투자유치	대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비대면 푸드테크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1:1 멘토링·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및 후속투자유치 연계
기타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기술보호 울타리 전문가 상담, 기술자료 입차지원, 동반성장물 입점지원 등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동 사업의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이며,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일정표]

구분	'21년											'22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재단(주관기관) 협약															
창업기업 모집 공고/선정															
창업진흥원-재단-창업기업 협약체결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중간점검															
사업비 정산,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															

주: 온라인 농·식품 분야의 경우 재단(주관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러나 동 사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인 46억 6,400만원을 2021년 예산으로 교부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59.8%에 불과하며 18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21회계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온라인 농·식품 분야)	4,664	4,664	-	4,664	2,791	1,873	59.8
- 창업사업화 지원금	4,088	4,088	-	4,088	2,480	1,608	60.7
- 프로그램 운영비	328	328	-	328	208	120	63.4
- 전담조직 운영비	248	248	-	248	103	145	41.5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처럼 사업이 2회계연도에 걸쳐서 추진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전액 2021년도에 교부한 것은 「국가재정법」<sup>2)</sup>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창업진흥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협약 완료 시점인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는 2021년도 예산인 46억 6,400만원 중 42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다.

---

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산림청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지침을 위반한 성과급 지급 시정 필요

### 가. 현 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sup>1)</sup>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수목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수목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산림청 소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sup>2)</sup>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sup>3)</sup>과 내부평가에 따른 내부 평가급을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총 469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29억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연도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임직원	성과급
2019	237	1,756
2020	449	2,414
2021	469	2,930

자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지은 예산분석관(jieun3137@assembly.go.kr, 6788-3745)

1) 산림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영평가실적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A등급을, 2020년도에는 D등급에 해당한다.

## 나. 분석의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직원 대상으로 내부평가 성과급의 지급률 차등 지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급하는 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으로 구분되며, 2021년 기준으로 임직원 469명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총 7,400만원과 내부성과급 총 28억 5,6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연도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임직원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성과급	합계
2019	237	221	1,535	1,756
2020	449	397	2,017	2,414
2021	469	74	2,856	2,930

자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sup>4)</sup>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

4)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p. 10~11

-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sup>5)</sup>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도 지침을 준수하여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고와 차하위 등급의 차등 비율이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침을 위반하여 내부평가성과급의 차등 등급을 6개 등급 이상이 아닌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최고등급인 A등급의 차등율이 110%, 최저등급인 C등급의 차등율이 90%로,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등 비율이 1.2배에 불과하여 내부평가급의 차등 지급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내부성과급 지급기준]

구분	A	B	C
차등율	110%	100%	90%
인원비율	25%	50%	25%

자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3]

따라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상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성과급의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성과급 지급기준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최고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차등 지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p. 11

-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며, 202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가. 현 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내부규정인 「인사규정」 제35조에 따르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등은 이사장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의무휴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직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거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가휴직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경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임직원 중 의무휴직 11명, 허가휴직 28명의 총 39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연도별 휴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의무휴직 (「인사규정」 제35조제1항)	허가휴직 (「인사규정」 제35조제2항)	합계
2019	4	5	9
2020	6	9	15
2021	11	28	39

자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나. 분석의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고용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4항<sup>1)</sup>은 공공기관의 휴직 사유 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까지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직원의 휴직 기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4호<sup>2)</sup>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등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을 채용 기간으로 규정하면서,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우 「인사규정」 제36조제4호<sup>3)</sup>는 고용휴직 기간을 채용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법」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고용휴직기간은 산림청 소관의 다른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고용휴직기간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고용기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게 길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3) 「인사규정」

제3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산림청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고용휴직 기간 비교]

구분	휴직 사유	휴직 기간
국가공무원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 기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채용 기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국임업진흥원	국가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 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료: 「국가공무원법」 및 각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재작성

따라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고용휴직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결산분석시리즈 III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74-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1668-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